

2021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 해설집



2021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 해설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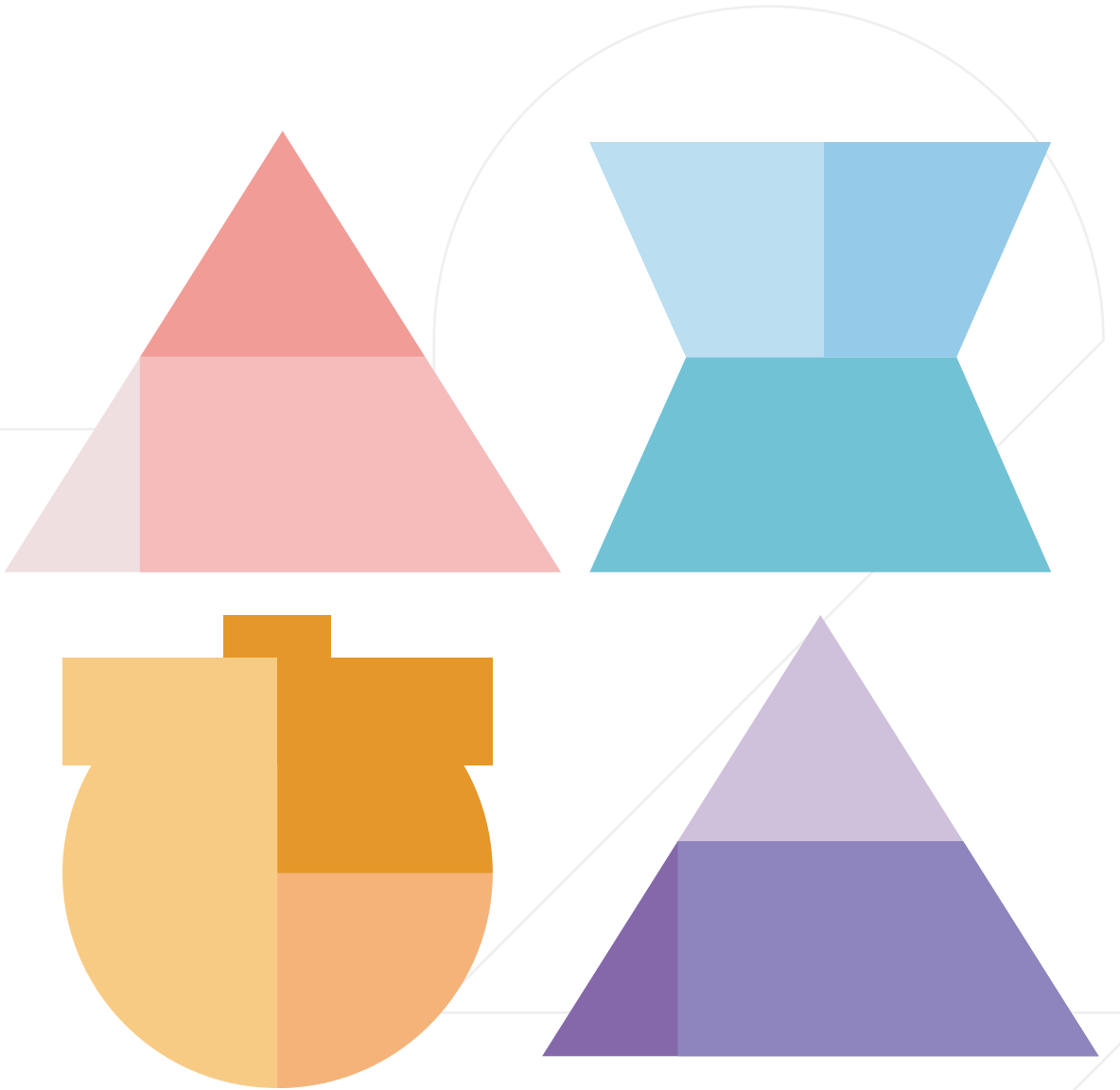


2021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 해설집

중소벤처기업부 KBIZ 중소기업중앙회

2021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 해설집



중소벤처기업부

KBIZ 중소기업중앙회

Contents



제1장 가업승계란 무엇인가? 14

- 1. 가업승계의 개념 16
- 2. 가업승계의 중요성 16
- 3. 우리나라 가업승계의 장애요인 18
- 4. 우리나라 가업승계 지원제도 22
- 5. 중소기업 가업승계 전략(Tax Plan)의 기본구조 23
- 6.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무전략(Tax Plan) 23

제2장 「민법」상 상속제도의 이해 26

- 1. 상속의 효과 28
 - (1) 상속 28
 - (2) 상속의 효과 28
- 2. 유증과 사인증여 29
 - (1) 유증 30
 - (2) 사인증여 31
- 3. 상속개시의 원인과 시기 31
 - (1) 자연사망 31
 - (2) 인정사망 32
 - (3) 실종선고 및 부재선고 32
 - (4) 동시사망 33
 - (5) 상속개시의 시기 33

4. 상속분과 재산분할 34

- (1) 지정상속분 34
- (2) 법정상속분 및 상속의 순위 34
- (3) 기여상속인의 상속분 37
- (4) 대습상속분 37
- (5) 협의에 따른 분할 37
- (6) 유류분 제도 37

5. 상속의 승인 및 포기 38

- (1) 단순승인 38
- (2) 한정승인 39
- (3) 상속의 포기 39
- (4) 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금지 40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세 40

- (1) 상속세의 의미 40
- (2) 상속세의 특성 40
- (3)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체계 41
- (4) 상속세의 과세대상과 납부의무자 41
- (5) 상속세의 과세관할(납세지) 47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계산 48

1. 상속세의 계산 50

1-1.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51

1-1-1. 총상속재산가액 52

- (1) 상속재산의 범위 52
- (2) 상속의 의제 52
- (3) 상속의 추정 53

1-1-2. 상속세의 비과세 55

- (1)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55
- (2)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56

1-1-3.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56

- (1)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56
- (2)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58

1-1-4. 공과금·장례비용 및 채무 58

- (1) 공과금 58
- (2) 장례비용 58
- (3) 채무 59

1-1-5. 증여재산 가산액 59

1-2.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62

1-2-1. 인적공제 63

- (1) 기초공제 63
- (2) 배우자상속공제 63

- (3) 그 밖의 인적공제 66
- (4) 일괄공제 67

1-2-2. 물적공제 67

- (1) 기업상속공제 67
- (2) 영농상속공제 67
- (3) 금융재산상속공제 68
- (4) 재해손실공제 69
- (5) 동거주택상속공제 69

1-2-3.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71

1-2-4. 감정평가수수료 71

1-3. 상속세액의 계산 72

1-3-1. 상속세 산출세액 72

- (1) 상속세 세율 72
- (2)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72

1-3-2.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징수유예 73

1-3-3. 세액공제 73

- (1) 증여세액공제 74
- (2) 외국납부세액공제 76
- (3)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76
- (4) 신고세액공제 77

1-3-4. 가산세 77

- (1) 무신고가산세 77



(2) 과소신고가산세	78
(3) 납부지연가산세	79
1-4. 상속세의 납세절차	80
1-4-1.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80
(1) 상속세의 과세표준신고	80
(2) 상속세의 자진납부	80
(3) 상속세 신고시 작성·제출해야 하는 서류	81
(4) 상속·증여세의 경정청구 특례	81
1-4-2. 연부연납	83
1-4-3. 물납	84
(1) 물납의 요건	84
(2) 물납의 신청	85
(3) 물납의 허가	85
(4) 물납 재산의 수납	87
(5)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	87
(6) 물납 재산의 변경	87
(7) 물납세액의 범위	88
(8) 물납에 총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90
(9)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90
(10) 물납신청의 철회 및 재평가신청 의무의 부여	92
(11) 물납재산의 환급	93
2. 증여세의 계산	93
(1) 증여세 납세의무자	93

(2) 증여세 계산구조	94
(3) 증여세 신고·납부	97
(4) 증여세 신고시 작성·제출하는 서류	98
(5) 증여세의 신고·납부 관할세무서	98
(6) 유의사항	99

제4장 기업승계와 관련된 세제 지원제도 100

1. 기업상속공제	102
1-1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	103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103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104
1-2. 기업상속공제액	111
(1) 공제금액의 계산 및 공제한도적용	111
(2) 공제의 배제-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113
1-3. 기업상속공제 사전요건	115
(1) 기업규모 및 업종 요건	115
(2) 기업경영기간 요건	126
(3) 최대주주지분 요건	129
(4) 피상속인 요건	133
(5) 상속인 요건	139
1-4. 기업상속공제 사후요건	149
(1) 기업종사요건	150



(2) 기업용자산 유지요건	157
(3) 지분유지 요건	164
(4) 근로자 수(고용인원) 유지 요건과 총급여액 유지 요건의 선택 적용	172
(5) 사후요건 위반과 상속세 과세 및 이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	184
(6) 이자상당액 가산	186
1-5. 탈세 및 회계부정 기업인의 기업상속 혜택 배제	187
1-6. 기업상속공제재산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87
(1) 기업상속공제 적용 재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제도	188
(2) 사후관리 기간 안에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가 추징되었을 때	190
1-7. 기업상속공제의 신청	193
2.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94
2-1. 증여세 과세특례의 내용	196
(1)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196
(2)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내용	196
2-2.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전요건	202
(1) 기업규모 및 업종요건	202
(2) 기업경영기간 요건	205
(3) 최대주주지분 요건	206
(4) 종전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기업일 것	211
(5) 증여자 요건	212
(6) 수증자 요건	213

2-3.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요건	217
(1) 기업의 승계 및 대표이사 취임요건	217
(2) 기업총사 요건	219
(3) 지분유지요건	220
(4) 사후요건 위반과 증여세 과세	223
(5) 사후관리를 위반했을 때 신고·납부의무	224
2-4.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225
2-5.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의 유의사항	225
(1)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	225
(2)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증여세액공제	225
(3) 신고세액공제의 배제	225
(4) 기업승계 주식가액 외의 일반 증여재산가액과의 합산과세 배제	226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적용 불가	226
(6)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이 상장 등 증여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226
(7)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기업상속공제 가능	226
3. 기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233
(1) 연부연납의 요건	233
(2) 연부연납의 허가	235
(3) 연부연납의 기간	235
(4) 연부연납에 의해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	238
(5) 연부연납의 취소와 변경	240
(6) 연부연납 가산금	241



제5장 기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244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46

1-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 247

- (1) 증여자와 수증자 247
- (2) 창업자금 247
- (3) 창업자금의 범위 및 창업자금의 사용기한 250
- (4) 특례신청 253

1-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257

- (1) 창업자금 사용명세 제출 257
- (2) 창업 및 창업자금 사용 등에 대한 사후관리 257

1-3.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의 유의사항 263

- (1) 창업자금의 증여한도 263
- (2) 과세표준 및 세율 263
- (3) 증여자가 사망할 때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
(창업자금에 대한 상속세 정산) 263
- (4)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증여세액공제 263
- (5) 신고세액공제의 배제 263
- (6) 창업자금 외의 일반 증여재산가액과의 합산과세 배제 264
- (7)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적용 불가 264

2.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 확인제도 267

- (1) 실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절차 267
- (2)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268

- (3) 실소유자 확인절차 270
- (4) 실소유자 여부 처리 결과의 통지 271

명의신탁증여의제의 내용과 명의신탁한 주식의 처리 276

3.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 278

보론 : 특수관계인의 범위 280

제6장 재산의 평가 284

1. 평가기준일 286

2. 평가의 원칙 286

- (1) 평가의 방법 286
- (2) 시가평가 287

3. 보충적 평가 289

- (1) 부동산 289
-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90
- (3) 특정시설물 이용권 291
- (4) 지상권 291
- (5) 그 밖의 시설물 및 구축물 291
-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292
- (7)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 293
- (8) 상품·제품·서화·골동품, 소유권대상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293
- (9) 주식 및 출자지분 294
- (10) 국공채 및 사채 295



(11) 예금, 저금, 적금 등의 평가	296
(12)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297
(13)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297
(14) 대출금 등 채권가액의 평가	297
(15) 영업권의 평가	298
(16)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99
(17)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300
(18) 가상자산의 평가	301

제7장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사례 302

1.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304
1-1. 평가의 개요	304
1-2. 평가의 방법	305
1-2-1.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305
(1) 원칙	305
(2)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평가방법	306
(3)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306
1-2-2.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307
(1) 과거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307
(2)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계산하는 방법	312
1-2-3. 순자산가치 평가방법	314
(1) 자산총액의 계산	314

(2) 부채총액의 계산	316
(3)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 영업권	318
(4)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을 위한 발행주식총수	319

1-2-4.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할증평가 320

2. 비상장주식의 평가사례 322

2-1. 주식 1주당평가액 322

(1) 평가대상회사의 일반현황	322
(2) 최근 3년간의 세무조정 자료	322
(3) 평가기준일 현재의 요약재무상태표	326

2-2. 평가내용 327

(1) 평가결과의 요약	327
(2) 평가방법 요약	327

2-3. 순손익가치의 계산 328

2-4. 순자산가치의 계산 331

3.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유의사항 342

Appendix 344

기업승계와 관련된 세법 및 관련법령	346
---------------------	-----

1장 가업승계란 무엇인가?



제1장 기업승계란 무엇인가?

1. 기업승계의 개념

기업승계 또는 경영승계란 기업의 경영상태가 지속되도록 소유권 및 경영권을 차세대경영자에게 물려주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미하며 크게 소유권 승계(ownership succession)와 경영권 승계(management succession)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소유권과 경영권이 동시에 승계되는 것이므로 기업승계란 소유권승계와 경영권승계라는 두 가지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승계는 승계대상에 따라 가족 간 승계, 전문경영자 승계, M&A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승계는 소유권이 자녀 및 친인척 등 가족 간에 승계되는 것으로 소유경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며, 전문경영자 승계는 전문경영자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이며 전문경영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경영승계가 원활치 못할 경우 M&A로 이어집니다. 기업승계방식에 따라서는 상속, 증여 및 M&A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기업승계의 중요성

기업승계는 단순히 재산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이 수십 년간 착실하게 쌓아온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가장 확실하게 경제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승계는 계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82.7%를 담당하고, 전체 사업체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경제의 핵심입니다.

<2019년도 중소기업 비중(전 산업)>

(단위 : 개)

산업분류	전체(A)		중소기업(B)		비중(B/A)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 산업	6,893,706	21,076,582	6,888,435	17,439,595	99.9%	82.7%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도부터 만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인구 수 대비 7%를 넘어서는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고 2018년경부터는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시대에 접어들었으며, 2025년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에서도 사회 전반의 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세대에 창업했던 경영1세대들이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기업을 다음 세대로 승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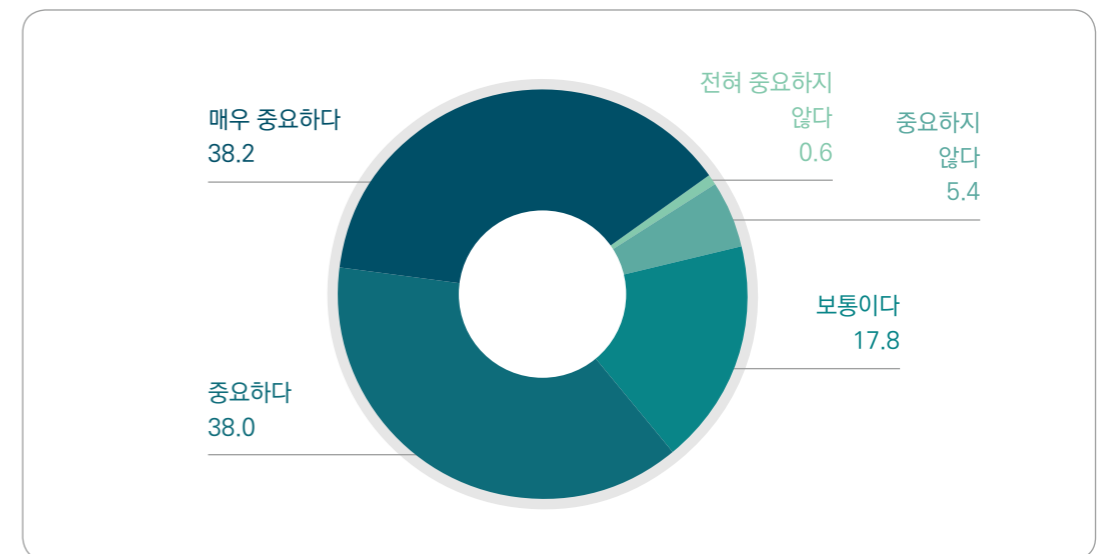
기업승계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경영자의 고령화가 지속되면, 경영자는 적극적인 자세로 기업을 경영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다시 투자 위축, 신기술 개발의 부진,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기업승계는 긴 소요시간과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는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볼 수 있으며, 고용유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및 경제적 안정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기업승계는 단순히 부의 대물림이 아닌 '책임의 대물림'이자 '제2의 창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중 76.2%는 중소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과 관련하여 기업승계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반면 6.0%는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를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우선 대표자 경영세대별로 '2세대 이상'의 '중요하다' 응답은 84.1%로 '1세대'(70.3%) 응답보다 13.8%p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표자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① 매우 중요(70세 이상 40.0%)'의 응답이 높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림> 중소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과 관련한 기업승계 중요성

(단위 : 개)



<가업승계 중요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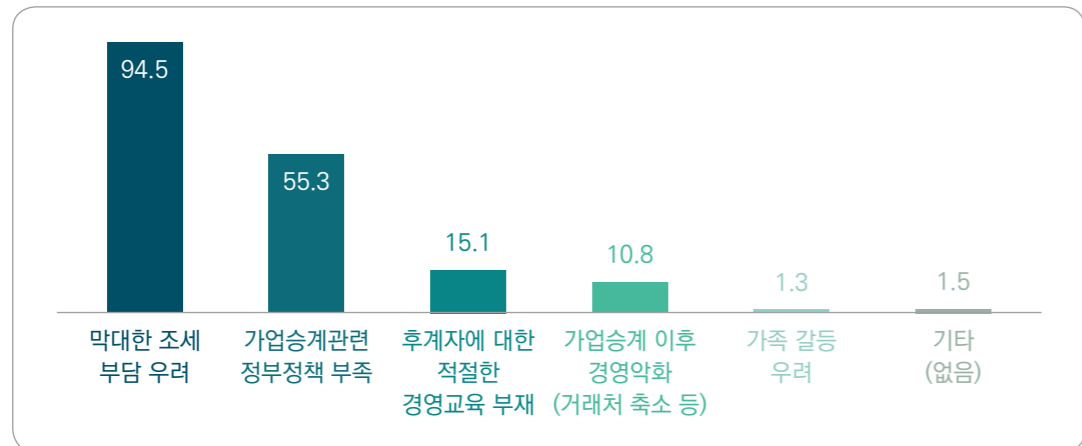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① 매우 중요	② 중요	③ 보통	④ 중요하지 않다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①+② 중요함	④+⑤ 중요하지 않음
전체	(500)	38.2	38.0	17.8	5.4	0.6	76.2	6.0
경영 세대	1세대 (286)	33.6	36.7	21.0	7.7	1.0	70.3	8.7
	2세대 이상 (214)	44.4	39.7	13.6	2.3	0.0	84.1	2.3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35.3	41.8	18.5	4.3	0.0	77.2	4.3
	60~70세 미만 (186)	39.8	38.7	17.2	3.8	0.5	78.5	4.3
	70세 이상 (130)	40.0	31.5	17.7	9.2	1.5	71.5	10.8
업력	10~20년 미만 (46)	32.6	28.3	32.6	6.5	0.0	60.9	6.5
	20~30년 미만 (121)	36.4	38.0	19.8	5.8	0.0	74.4	5.8
	30~40년 미만 (140)	27.9	49.3	15.7	6.4	0.7	77.1	7.1
	40년 이상 (193)	48.2	32.1	14.5	4.1	1.0	80.3	5.2

3. 우리나라 가업승계의 장애요인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원활한 가업승계를 원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주된 장애요인은 무엇일까요? 중소기업중앙회 「2020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으로는 '가업승계시 상속세 및 증여세 등 막대한 조세부담 우려(94.5%)'이고, 다음으로는 '가업승계관련 정부정책 부족'(55.3%),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15.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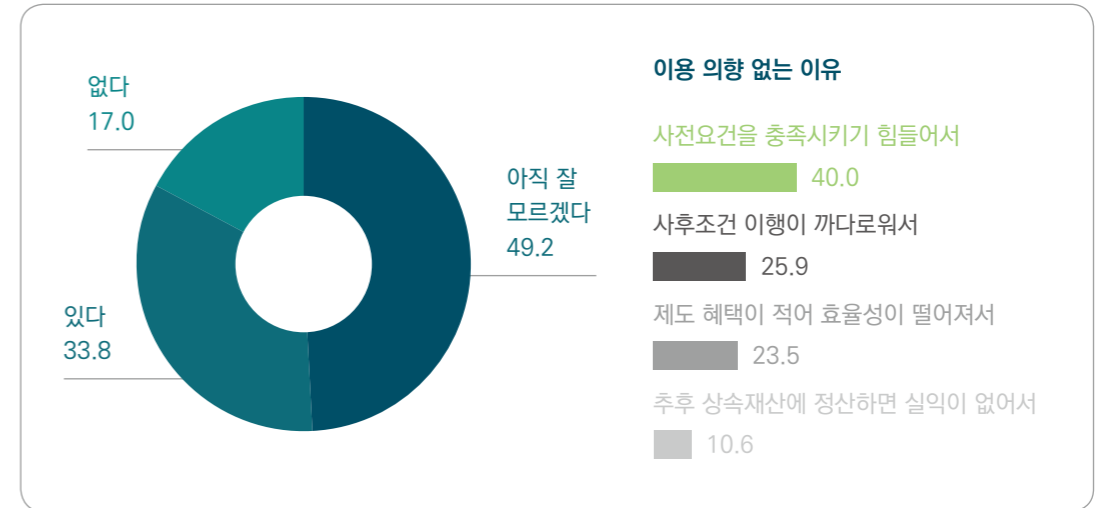
(단위 : %)



한편 중소기업 대표·임원의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할 의향으로 '있다'가 33.8%로 조사되었으며, '없다'(17.0%) 응답 중 '사후조건 이행이 까다로워서'(25.9%), '사전·사후요건 충족 노력에 비해 제도 혜택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져서'(23.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림> 가업승계 지원제도 사업 승계 계획 유무

(단위 : %)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 의향 여부>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아직 잘 모르겠다				아직 잘 모르겠다	
				사례수	①	②	③		④
전체	(500)	33.8	17.0	(85)	40.0	25.9	23.5	10.6	49.2
업력	10~20년 미만 (46)	41.3	26.1	(12)	41.7	16.7	33.3	8.3	32.6
	20~30년 미만 (121)	37.2	19.0	(23)	34.8	26.1	26.1	13.0	43.8
	30~40년 미만 (140)	31.4	12.9	(18)	55.6	16.7	16.7	11.1	55.7
	40년 이상 (193)	31.6	16.6	(32)	34.4	34.4	21.9	9.4	51.8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34.0	16.3	(50)	36.0	26.0	28.0	10.0	49.7
	30~50인 미만 (75)	30.7	21.3	(16)	37.5	37.5	18.8	6.3	48.0
	50~100인 미만 (63)	33.3	17.5	(11)	54.5	27.3	9.1	9.1	49.2
	100인 이상 (56)	37.5	14.3	(8)	50.0	0.0	25.0	25.0	48.2

주: ①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

② 사후조건 이행이 까다로워 기업 유지·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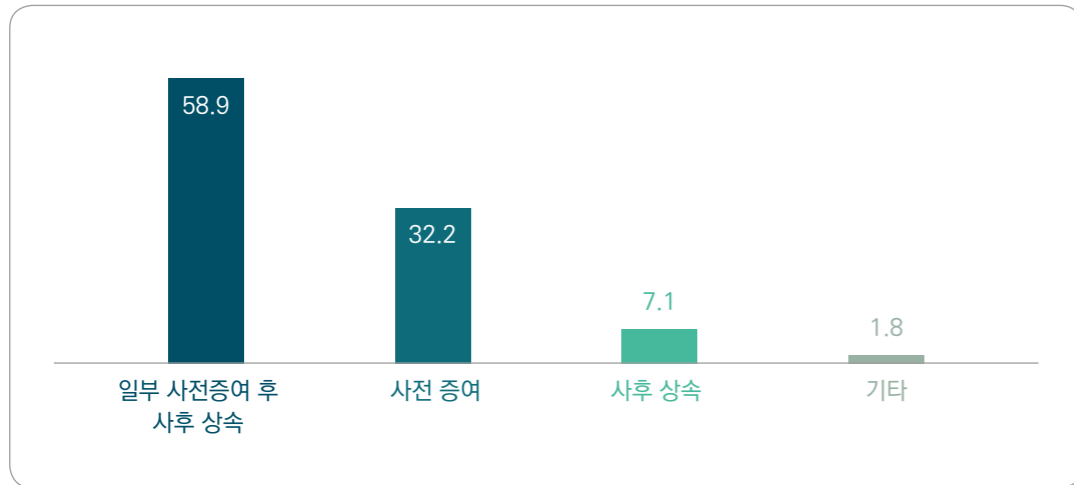
③ 사전·사후요건 충족 노력에 비해 제도 혜택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져서

④ 추후 가업상속자산 매각 시 양도세 이월과세로 인해 실익이 없어서

또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생각하는 주된 가업승계 방식으로는 주된 가업승계 방식으로, '일부 증여 후 상속'이 58.9% > '사전 증여(생전)' 32.2% > 사후 상속 7.1%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증여를 포함한 승계를 계획하는(일부 증여 후 상속, 사전증여 포함) 경우는 91.1%로 상속만 하는 경우(사후상속)보다(7.1%) 84.0%p 높은 것으로 조사됨. 이는 제도도입 초기보다 가업승계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며 1세대 창업자의 고령화에 따른 사전증여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가업승계의 두 축인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상호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림> 주된 가업승계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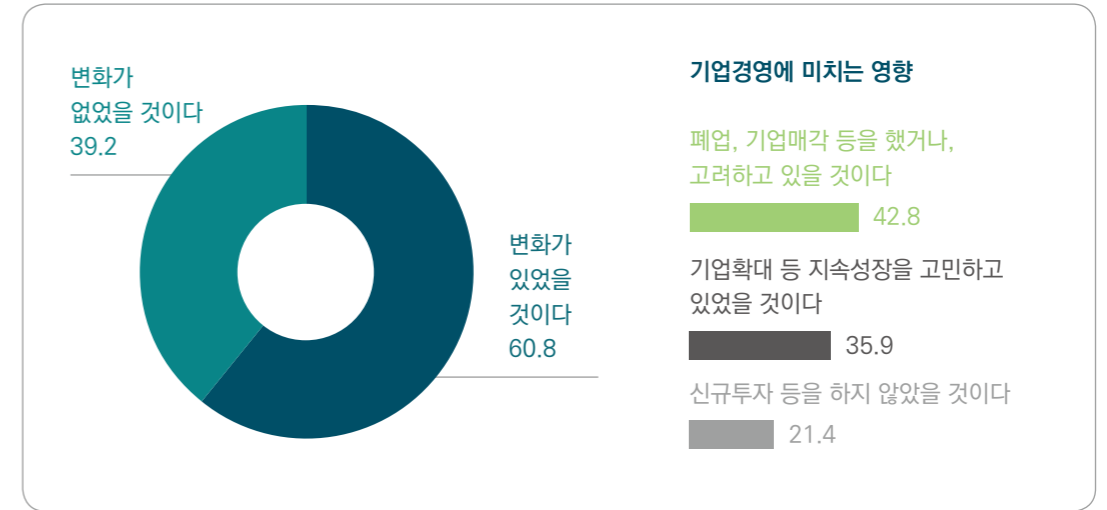
(단위 : %)



더불어, 기업이 가업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했을 시, 60.8%는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으로 '폐업, 기업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42.8%), '기업확대 등 지속성장을 고민하고 있었을 것이다'(35.9%), '신규투자 등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21.4%)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기업의 업력별로는, 기업의 업력이 낮을수록 '변화가 없었을 것이다(10~20년 미만 52.2%)'응답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림> 가업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가업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구분	사례수	변화가 없었을 것이다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폐업, 기업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기업확대 등 지속성장을 고민하고 있었을 것이다	신규투자 등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체	(500)	39.2	60.8	42.8	35.9	21.4	
경영세대	1세대	(286)	39.5	60.5	43.9	35.3	20.8
	2세대 이상	(214)	38.8	61.2	41.2	36.6	22.1
대표연령	60세 미만	(184)	37.5	62.5	36.5	39.1	24.3
	60~70세 미만	(186)	40.9	59.1	53.6	30.9	15.5
	70세 이상	(130)	39.2	60.8	36.7	38.0	25.3
업력	10~20년 미만	(46)	52.2	47.8	50.0	31.8	18.2
	20~30년 미만	(121)	44.6	55.3	46.3	28.4	25.4
	30~40년 미만	(140)	33.6	66.4	43.0	40.9	16.1
	40년 이상	(193)	36.8	63.2	39.3	36.9	23.8

4. 우리나라 기업승계 지원제도

(1) 세제상 지원제도

기업승계와 관련된 세제지원제도는 2007년 이후로 계속하여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기업승계와 관련된 주요 세제지원제도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상속공제

기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물려받아 기업을 승계받는 경우 기업상속재산가액의 100%(500억원 한도)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증여자)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의 주식을 기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2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3)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배제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배제는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에 대해서는 주식가액을 20%를 할증평가하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일정한 주식에 한해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4) 연부연납

연부연납은 상속세 납부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거치기간을 포함해 최대 20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2) 기업승계 지원제도

2008년 4월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명문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내에 중소기업 기업승계지원센터가 설치되었으며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홍보,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운영 및 제도개선 건의, 경영후계자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기업승계 1, 2세대 간 소통, 정보제공 및 상담, 기업승계관련 포럼 및 협의회, 후계자모임인 '한국기업승계기업협의회'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명문 장수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5. 중소기업 기업승계 전략(Tax Plan)의 기본구조

중소기업의 이익의 창출과 관리 그리고 이전은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경영을 통해 순이익을 내는 것이 우선이 될 것이고, 이렇게 창출한 순이익을 소유자 또는 투자자인 주주에게 이전하며, 소유자 등에게 옮겨진 부를 다시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세무전략은 일반적으로 각종 세액공제·감면을 활용하거나 세무조사 대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순이익으로 누적된 법인의 잉여금을 주주(중소기업에서는 보통 CEO)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세무전략으로 배당정책을 포함한 CEO플랜이 있을 수 있습니다. CEO플랜의 보편적인 방법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정비해 법인 입장에서는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고 동시에 주주이자 CEO에게 이전되는 부를 극대화하는 전략 등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주주인 동시에 CEO 또는 개인사업자인 본인의 부를 상속인(자녀 등)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Tax Plan을 포함한 기업승계 전략이 될 것입니다.

6. 기업승계와 관련된 세무전략(Tax Plan)

(1) 상속세와 증여세의 특성

기업승계와 관련하여 여러 종류의 세금이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상속세와 증여세가 가장 중요한 세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최고 세율이 50%인 초과누진세율구조로서 세율이 세목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일정기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 상속재산에 가산하거나 증여재산에 합산하는 누진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당국 입장에서 세원포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 변칙상속의 방지를 위하여 일반세목의 부과체척기간인 5년 등보다 훨씬 긴 부과체척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는 정부부과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유일한 세목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당국의 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세무조사로서 납세의무를 확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뒤에서 설명할 기업상속공제 등 여러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7년 등 장기간에 걸쳐 엄격하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느끼는 압박감이 실제보다 더 과중한 면에 있기 때문에 기업승계를 위한 세무전략은 꼭 장기간에 걸쳐 정교하게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무전략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세율이 10%~50%에 달하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해 5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 등의 과세표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부담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으로 느껴지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모든 세목이 마찬가지로이지만 상속세나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낮추게 되면 한계세율이 높은 만큼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안을 합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승계와 관련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상속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대폭 세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우 오랜기간 치밀하게 수립된 계획하에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상속이 개시된 후나 증여 후에도 사후관리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구조 및 절세방안 등을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고려해야 할 사항	
	재산가액	재산의 평가·증여재산합산과세·상속재산가산제도 등 활용, 기업승계주식 평가액의 최소화 방안
(-)	차감금액	공익법인 출연재산·공익법인 신탁재산·부담부 증여 등 활용을 통한 차감금액의 최대화
(=)	과세가액	
(-)	공제금액	기업상속공제(사업무관자산의 최소화 설계 등), 감정평가수수료공제 등을 활용한 상속공제액의 최대화
(=)	과세표준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승계주식의 최대화
(x)	세율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특례세율(10%, 20%) 활용
	산출세액	세대생략 증여의 활용 등
(-)	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활용, 세액공제금액의 최대화
(=)	납부세액	분납·연부연납·물납(증여세는 물납 불가)제도의 활용 및 상속세 재원 마련

2장

「민법」상 상속제도의 이해



제2장 「민법」상 상속제도의 이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해 이해를 하다 보면 상속, 유증, 상속인, 상속개시, 실종선고, 상속분, 상속포기,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등 다양한 「민법」상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의 상속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상속세 관련 규정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상속에 관련된 규정을 먼저 살펴보고 상속세 과세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민법」 제5편의 상속규정

제1장 상속(제997조~제1059조)

제1절 총칙(제997조~제999조)

제2절 상속인(제1000조~제1004조)

제3절 상속인의 효력(제1005조~제1018조) : 일반적 효력, 상속분, 상속재산의 분할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제1019조~제1044조) : 총칙,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제1045조~제1052조)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제1053조~제1059조)

제2장 유언(제1060조~제1111조) : 총칙, 유언의 방식, 유언의 효력, 유언의 집행, 유언의 철회

제3장 유류분(제1112조~제1118조)

1. 상속의 효과

(1) 상속

상속이란 자연인이 사망했을 때 사망과 동시에 그와 일정한 친족적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망자의 재산적 권리나 의무가 포괄적으로 당연히 승계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자연인의 사망에서 일어나므로 회사 등 법인이나 단체가 사망하거나 상속할 수는 없습니다.

(2) 상속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 예를 들어 변호사자격증 등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법제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 포괄·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하는 한편, 상속의 포기·한정승인제도를 두어 상속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의 효과를 귀속시키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으며,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채권자 및 상속인의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효력은 사망 순간에 사망자의 재산상 권리·의무 또는 지위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므로 상속을 위해 사망하기 전에 당사자의 특별의사표시가 없고, 부동산의 등기나 동산의 인도 등과 같은 대항요건을 위한 별도의 행위도 필요 없이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이와 같이 상속은 법률에 따른 재산의 이전·변동이므로, 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유증·사인증여와 구별됩니다.

또한 상속은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이므로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알든 모르든 사망자의 권리와 의무가 모든 상속인들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이는 매때나 증여 등이 특정인과 특정된 재산을 지정해 개별적인 의사표시를 거쳐 이전시키는 것과는 대비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순간에 공동상속인이 일단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은 피상속인의 사망 순간에 생기기 때문에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승계와 분할 사이에 시간적 간격을 없애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공유로 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해 각자 개인의 상속분에 따라 물권적 지분을 가지고 그 지분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음과 동시에 지분에 저당권·용익물권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분할 시까지는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일신전속권이란 피상속인에게만 귀속하고 상속인에게 귀속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진 권리·의무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인격권으로서의 성결권, 교수계약에 따른 권리, 부양의 권리·의무 등을 말합니다.

2. 유증과 사인증여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의 형태에는 의사표시가 필요없이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 이외에 의사표시가 필요한 유증 및 사인증여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유증·사인증여도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무상 이전된다는 점에서 상속과 동일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유증

유증(遺贈)이란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이 때 유언자를 유증자(遺贈者)라고 하고 유증의 이익을 받는 자를 수증자(受贈者)라고 합니다.

증여와 유증이 모두 재산의 무상이전 행위임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으나, 증여는 생전행위이고 계약인데 반해 유증은 사인행위이고 유언자는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유증은 사후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유증은 의사표시가 필요하고, 상속은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고 사망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법률효과를 부여한 법률요건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릅니다. 한편, 유증은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그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유류분제도로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자필방식, 녹음, 공정증서, 구수증서, 비밀증서 5종에 한합니다)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특히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2006다25103, 2006.09.08.).

유증의 종류에는 포괄적 유증, 특정 유증, 부담있는 유증이 있는데 우선 포괄적 유증은 “내 재산의 1/5은 손자에게 준다”와 같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정한 비율을 정해 유증하는 것을 포괄적 유증이라고 하고 유증을 받는 자를 포괄적 수증자라고 합니다.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어서 상속인과 같이 유증 사실을 알든 모르든 유증 목적인 상속재산(채무를 포함합니다)을 법률상 당연히 승계·취득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는 상속과 포괄적 유증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특정유증에 대해 살펴보면 상속재산 중 특정재산, 예를 들어 XX아파트 한 채를 지정해 유증하는 것이 특정 유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유증의 수증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고, 그 포기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할 때로 소급하게 됩니다.

특정 유증의 수증자는 증여계약의 수증자와 동일한 지위에 서게 되기 때문에 특정 유증과 사인증여(예를 들어, 갑은 을에게 XX아파트를 증여하며 그 효력은 갑의 사망시에 발생하게 됩니다)는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특정 유증의 목적물은 상속재산으로서 일단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되고 특정 유증의 수증자는 상속인(수증 의무자)에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이며 이 청구권은 상속개시의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담있는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이익을 주면서 동시에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부담시키는 유증을 말합니다. 부담부 유증에서의 부담은 유증의 대가나 반대급부가 아니고, 부담부 유증에 따라 수유자는 재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담을 이행할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2) 사인증여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기는 증여입니다. 즉, “내가 죽으면 XX아파트는 김중양에게 준다”는 내용의 무상계약을 말합니다.

사인증여나 유증은 증여자·유증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행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인 점은 같지만,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계약이고, 유증은 유언자의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서로 다릅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사이의 “계약”이고 단지 그 효과가 증여자의 사망시점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증과 유사하여 「민법」 상속편 중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 사인증여의 법적성질

- ① 수증자의 승낙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낙성계약(諾成契約)입니다.
- ② 특정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행위(不要式行爲)입니다.
- ③ 사인증여의 수증자는 증여자의 사망 시 상속인(수증의무자)에 대해 사인증여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지 못합니다.

3. 상속개시의 원인과 시기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됩니다. 상속개시의 원인은 사망이고 상속개시의 시기는 사망한 때라는 뜻입니다. 상속개시의 원인에는 사망 외에 사망으로 보는 인정사망, 실종선고, 부재선고가 있습니다.

「민법」에서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인의 자격·범위·순위·능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상속 및 유언의 효력 발생시기, 상속재산 및 유류분 산정기준시점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상속개시의 시기는 납세의무의 성립여부, 신고기한의 결정, 재산평가의 기준일, 국세 부과제척기간, 개정 법령의 시행시기 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1) 자연사망

자연사망의 경우 상속개시 시점은 “사실상 사망한 때”입니다. 사망의 사망시점이 언제인가에 관해서는 맥박(심장)정지설·호흡정지설·뇌사설 등이 대립하고 있지만 다수설은 맥박정지설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사망시점은 보통 의사의 진단으로 확정되며 자연인이 사망한 때에는 동거 친족 등이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의사 진단서 등을 첨부해 사망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은 사망신고서에 첨부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사고사의 경우), 공무원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등을 보고 망인의

‘사망 연월일시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합니다.

이처럼 공부에 기재된 ‘사망 연월일시분’은 ‘사망의 시점(상속개시의 시점)’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부과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됩니다.

(2) 인정사망

사체가 발견되면 사망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화재·수해 및 폭발 등 재해 발생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체가 발견되지 않아 진단서나 검안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관 등 공무원의 사망보고서에 의해 시·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을 기재하게 되는데 이를 인정사망이라고 합니다.

인정사망의 상속개시 시점은 사망보고서·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망의 일·시입니다. 다만, 인정사망은 사망을 추정하는 효력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중에 사체가 발견되어 ‘추정 사망시점’이 새롭게 나타난 경우에는 사망 신고를 다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초 기재된 인정사망 내용은 그 효력을 잃고 다시 신고한 ‘추정 사망시’가 ‘사망시’로 새롭게 추정됩니다.

인정사망 시점의 추정적 효력은 법률상 사망으로 의제되는 실종선고와는 다른 점입니다.

(3) 실종선고 및 부재선고

1) 실종선고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사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강한 경우 이해관계인(상속인, 배우자, 채권자,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등)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행하는 선고를 말합니다.

실종선고에 따른 상속개시의 시점은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이며 보통실종은 실종일(최후 소식일)부터 5년, 특별실종은 위난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해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서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던 그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자로서 이러한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장기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 부재자의 법률관계의 불확정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하에 법원이 실종선고를 함으로써 일정 시기에 사망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실종선고인 것입니다.

부재자의 경우 실종기간 만료일(그날의 24 : 00)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때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또는 사망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반대증거 제시로 실종선고를 반복할 수 없고, 반드시 법원에서 실종선고 최소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점에서 인정사망과 차이가 있습니다.

2) 부재선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거주자로 표시된 잔류자에 대해서는 가족·검사의 청구에 따라 잔류자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이 부재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고를 받은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상속·혼인에 관해서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부재기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부재선고 심판이 확정된 때를 사망의 시기로 본다고 해석됩니다.

(4) 동시사망

2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그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진·홍수 등과 같이 동일한 사고로 여러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각 사람의 사망시점이 불분명하고 서로 달라 상속개시의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추정 규정이므로 사망일시가 명백하면 번복될 수 있습니다.

동시사망의 경우 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개시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사망자들이 친자간이라도 상속은 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습상속은 개시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동일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지만 그 손자는 아버지를 대습하여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5) 상속개시의 시기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이 상속개시 시기이며,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인이 이를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상속은 개시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이를 모르고 있는 사이에 시효가 진행되어 상속회복 청구권 등이 소멸된다면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관해 상속인이 ‘상속의 침해’를 안 날 또는 ‘유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상속개시의 시기
사망일	실제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한 시점, 보통 의사의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에 의거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월·일·시·분 (단, 등록부의 기재내용은 추정적 효력만 있어 번복이 가능합니다)
실종선고	실종기간 만료일(「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실종선고일)
인정사망	관공서의 사망보고서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월·일·시·분 (단, 등록부의 기재내용은 추정적 효력만 있어 번복이 가능합니다)
동시사망	2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사망시점의 선후가 불분명한 경우 사망일자가 같은 것으로 추정

4. 상속분과 재산분할

상속분이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각각 승계할 관념적·분량적인 몫의 비율을 말합니다. 「민법」상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는 지정상속분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법정상속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지정상속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 의해 피상속인은 법정상속분에 우선해 유증을 받은 자로 하여금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유언이 지나쳐 수인의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만 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두어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라도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2) 법정상속분 및 상속의 순위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에서 규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1) 상속의 순위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유산은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태아가 있는 경우에는 태아도 상속 순위에 관해서는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1순위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① 제1순위 : 직계비속(태아 포함)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 1인이 있는 등 촌수가 다른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인 자녀 2인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② 제2순위 : 직계존속

제1순위의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제2순위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촌수가 같으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 최근친인 부모가 우선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③ 제3순위 :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배우자가 없을 때에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는 남녀의 차별, 기혼·미혼의 차별,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의 차별, 동복(同腹)과 이복(異腹)의 차별을 묻지 않고, 형제자매의 수가 여러 명인 때에는 동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에게는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형제자매가 모두 사망하거나 결격으로 상속할 수 없게 되면 그의 직계비속(조카나 질녀 등을 말합니다)과 배우자가 사망자를 대신해 대습상속합니다.

④ 제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없을 때에만 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3촌 이내 방계혈족에는 백부, 숙부, 고모, 외숙부와 이모 및 조카가 있고, 4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는 종형제자매, 고종형제자매, 외종형제자매, 이종형제자매 등이 있습니다.

⑤ 배우자

사망자의 배우자는 혈족이 아닌 상속인입니다.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1·2순위의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⑥ 특별연고자

피상속인과 아래와 같이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는 상속인 수색공고기간 내(1년 이상)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을 경우 상속인의 수색공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재산분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청구인에게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별연고자도 상속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
- ㉡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한 자
- ㉢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사실혼관계의 배우자, 사실상 양자 등)

⑦ 국가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이 없고,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가 없거나 분여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2) 법정상속분

법정상속분이란 피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한 지정이 없는 경우 「민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상속분이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각각 승계할 관념적·분량적인 몫의 비율을 말하며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합니다.
-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법정상속분의 비율 예시〉

(단위 : %)

구분	상속인	상속분	비율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2/5
		배우자 1.5	3/5
	장남, 장녀(미혼),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2/7
		장녀 1	2/7
		배우자 1.5	3/7
	장남, 장녀(출가), 2남, 2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1	2/9
장녀 1		2/9	
차남 1		2/9	
배우자 1.5		3/9	
자녀는 없고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부 1	2/7
		모 1	2/7
		배우자 1.5	3/7

3)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3) 기여상속인의 상속분

기여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를 말하며,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지만, 기여분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4) 대습상속분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한 자 등의 순위에 같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며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5) 협의에 따른 분할

유언에 따른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따른 분할에 의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해당 분할에 의해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6) 유류분 제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이를 생전에 처분할 수도 있고 사후에도 유언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근친의 생활을 보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근친자의 잠재적 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물적 생활기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타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하려는 피상속인의 자의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에 일정한 비율의 제한을 가하여 그 비율액만큼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나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유류분 권리자는 자기가 침해당한 유류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류분 권리자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이며,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 유류분을 가지게 됩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5.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적극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에게 포괄 승계시키는 것은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단순승인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상속인이 채무를 상속받은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인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해야 하고,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단순승인을 본래의 형태로 보고,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정한 행위 또는 부작위를 하는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법정 단순승인이라고 합니다.

-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②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 ③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를 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2)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상속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그 채무의 전부를 승계시키는 것은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고려기간)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하면 되고,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란 상속의 개시로 인해 일단 발생한 상속인으로서의 효력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단독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며,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포기의 소급효가 발생되어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포기한 상속인이라도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4) 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금지

일단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한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취소를 인정하면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으로 되어 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 금치산자가 한 경우, 사기·강박에 따른 경우, 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권자가 그 승인 또는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세

(1) 상속세의 의미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해 그가 보유하던 재산이 상속·유증·사인증여의 형태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세대간 부의 무상이전으로 이득을 얻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특정인에게 불로소득으로 인한 부의 집중 현상을 억제하여 모든 사람의 경제적 출발점을 비슷하게 하는 기회균등의 제고 효과를 지니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 또는 강화시키는 사회 정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소득세·법인세 등의 기간과세와 달리 재산이전에 대한 시점과세를 하며,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확정하게 됩니다.

(2) 상속세의 특성

상속세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①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즉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 ② 초과 누진세율로 세부담을 하게 되므로 부의 크기에 상응한 응능부담이 되어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가집니다.
- ③ 생전에 탈루되거나 비과세·감면 등으로 소득세 과세가 안 된 부분, 사망일까지 재산 보유 과정에서 가득한 자본이득 등이 사망시점에서 상속세로 부과됨에 따라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강화시킵니다.
- ④ 부의 집중현상을 직접 조정하는 효과가 있어 경제적 기회균등의 효과를 제고하게 됩니다.
- ⑤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생전에 부의 집중을 분산하려는 자산 이동화의 효과가 있습니다.
- ⑥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므로 과세물건이 확실하고, 세수입도 확실합니다.

(3)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체계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속인의 수나 유산의 배분내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 과세하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에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또한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서 납부할 상속세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상속재산 중 각각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일부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을 가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상속세의 과세대상과 납부의무자

1) 상속세의 과세대상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합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피상속인	과세대상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무제한 납세의무)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제한 납세의무)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2) 상속세의 납부의무자

① 납부의무자 및 그 부담비율

상속인(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수유자(사인증여의 수증자를 포함합니다)는 상속세에 대해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① ‘상속인(相續人)’이란 「민법」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② ‘수유자(受遺者)’란 ㉠ 유증을 받은 자, ㉡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의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상속세의 부담비율} = \frac{\text{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text{상속세 과세표준} - \text{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구분	내용
상증법상 상속인	법정상속인 ① 상속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배우자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상속결격자 또는 상속포기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었거나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에 포함된다.
	대습상속인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같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특별연고자 특별연고자란 상속권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없을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로서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자를 말한다.
수유자 ① 유증을 받은 자, ②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로서 상속인이 아닌 자 ③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개정사항) 위탁자·수익자 사망과 연계한 신탁의 과세기준 명확화

1.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개정내용〉 甲이 자신의 상가건물(신탁재산)에 대해서 수탁자 A와 다음과 같이 유언대용 신탁을 하였습니다.

위탁자 甲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상가건물의 수입(임대료)을 얻고, 수익자인 자녀 乙이 위탁자인 甲의 사망시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갖는다.

위 사례의 경우 ① 종전에는 위탁자 甲의 사망시 상가건물에 대해서 수익자 乙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후 그 상가건물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증여세는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를 함), ② 개정세법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을 사인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위탁자 甲의 사망시 상가건물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로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개정내용〉 甲이 자신의 상가건물(신탁재산)에 대해서 수탁자 A와 다음과 같이 수익자연속 신탁을 하였습니다.

위탁자 甲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상가건물의 수입(임대료)을 얻고, 수익자 甲인이 사망한 경우 그 수입수익권은 소멸하고 배우자 乙이 살아있는 동안 상가건물의 수입(임대료)을 얻은 다음에, 수익자인 배우자 乙위의 사망시 자녀 丙이 상가건물의 소유권(원본)을 갖는다.

위 사례의 경우 ① 종전에는 위탁자 甲의 사망시 상가건물을 수익자(배우자) 乙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후 그 상가건물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다음(증여세는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를 함), 수익자인 배우자 乙이 다시 사망한 경우 그 상가건물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② 개정세법에서는 수익자연속신탁을 사인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위탁자 甲의 사망시에는 상가건물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다음, 수익자인 배우자 乙이 다시 사망한 경우 그 상가건물에 대해서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②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연대납세의무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여기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다음의 가액을 말합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의 총액-부채총액]
- (-)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 (=)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참고사항)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계산 명확화

최근 대법원에서는 상속인·수유자의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2016두1110, 2018.11.29. 국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이 상속인 고유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정하는 기준으로 '제1항의 상속재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 역시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를 정하는 기준인 제4항의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한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그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당사자들 사이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과 더불어 상속세 특유의 과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일반적인 상속재산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인 만큼, 미리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정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였다면 그에 상응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상속인·수유자의 연대납세의무 한도에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에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② 이에 대응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상속으로 얻은 자산에서 공제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③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수유자(특별연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은 상속세 납부의무자에서 제외합니다. 그런데 수유자(특별연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지분상당액의 상속세를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①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납부할 지분상당액 계산

$$\left[\begin{array}{l} \text{영리법인에게} \\ \text{면제된 상속세} \end{array} - \begin{array}{l} \text{유증 재산에} \\ \text{대한 법인세} \end{array} \right] \times \begin{array}{l} \text{상속인등의} \\ \text{주식등의비율} \end{array}$$

② 유증재산에 대한 법인세

$$\text{영리법인이 유증받은 상속재산} \times 10\%$$

(제도의 취지)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상속에 대한 상속세 과세강화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상속재산을 유증·사인증여한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또는 출자자)가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인 경우에 그 재산가액에 대한 과세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으며, 그 취지는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상속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유증·사인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구분	종전	개정
영리법인	상속세 X(면제)	상속세 X(면제)
	해당 상속재산가액(익금) → 법인세 과세 ○	해당 상속재산가액(익금) → 법인세 과세 ○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	상속세 X(과세제외)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10% 법인세) ×상속인·직계비속의 지분비율=지분상당액의 상속세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 주식의 취득가액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 주식의 취득가액+상속세를 과세받은 상속재산가액

3) 상속재산의 소재지

상속재산의 소재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정합니다.

상속재산 구분	판정기준
①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의 소재지
② 광업권 또는 조광권	광구의 소재지
③ 어업권 또는 입어권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
④ 선박	선적의 소재지
⑤ 항공기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
⑥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채	주식 등 발행 법인의 본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외국법인의 국내 발행 주식 등 :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 영업장의 소재지
⑦ 신탁업자가 취급하는 신탁재산	금전신탁 : 당해 신탁재산을 인수한 영업장 소재지 금전신탁 외의 신탁재산 : 신탁한 재산의 소재지
⑧ 금융재산(⑥, ⑦, ⑨ 제외)	그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등 영업장의 소재지
⑨ 금전채권	채무자의 소재지 (*) ⑥~⑧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⑩ 기타 유형재산 또는 동산	그 유형재산 소재지·동산이 현존하는 장소
⑪ 특허권·상표권 등 등록을 요하는 재산	그 권리를 등록한 기관의 소재지
⑫ 저작권(출판권·저작권접권 포함)	저작권의 목적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 장소
⑬ 기타 영업상의 권리	그 영업장의 소재지
⑭ 위 외의 재산	그 재산의 관리자의 주소

(5) 상속세의 과세관할(납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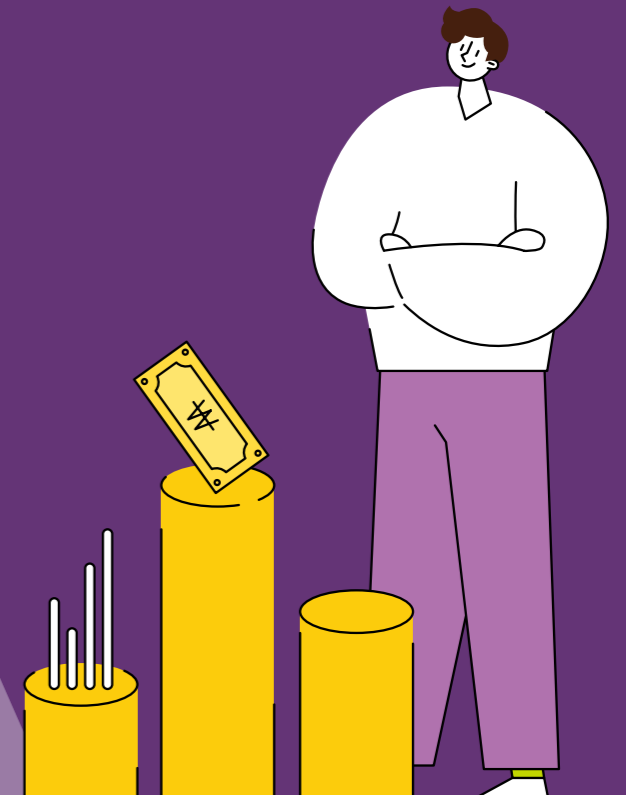
납세지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사하는데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하며 이는 관할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상속세의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당시 그 국세의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여기서 '상속개시지'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말하나, 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합니다.

한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해야 하며, 과세관할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과세관할
상속개시지가 국내인 경우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지방국세청장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 등의 관할구역 안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과세관할 별로 계산한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곳)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실종선고에 의한 상속개시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3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계산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계산

1. 상속세의 계산

상속세는 상속재산(본래의 상속재산·간주상속재산·추정상속재산)에서 비과세 및 과세가액불산입 재산을 제외하여 과세대상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고, 공과금 등을 차감한 후 상속개시일 전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한 후, 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구조>

본래의 상속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으로서 사망·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없으면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
+ 간주상속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 추정상속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 전 1년 이내 2억원(2년 이내 5억원) 이상 재산처분액·인출재산액 및 채무부담액으로 용도를 밝히지 못하는 일정금액
= 총상속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 이외의 자 5년)에게 증여한 재산 ※ 증여세 10%(20%) 특례세율 적용대상 증여재산인 창업자금과 기업승계주식 등은 기간에 상관없이 합산
- 비과세재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양임야,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 과세가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임대보증금, 은행대출금 등)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 Max[(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5억원~30억원)
	물적공제 기업상속공제=Min(기업상속재산가액×100%, 200억원~500억원 한도)

- 상속공제 등	물적공제 영농상속공제=Min(영농상속재산가액, 한도액 1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금융재산가액×20%, 2억원 한도) 재해손실공제=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가액 동거주택상속공제(주택가액×100%, 6억원 한도)																		
	• 감정평가수수료공제 및 비상장주식평가수수료 등 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table border="1"> <tr> <th>과세표준</th> <th>1억원 이하</th> <th>5억원 이하</th> <th>10억원 이하</th> <th>30억원 이하</th> <th>30억원 초과</th> </tr> <tr> <td>세율</td> <td>10%</td> <td>20%</td> <td>30%</td> <td>40%</td> <td>50%</td> </tr> <tr> <td>누진공제</td> <td>-</td> <td>0.1억원</td> <td>0.6억원</td> <td>1.6억원</td> <td>4.6억원</td> </tr> </table>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	-	0.1억원	0.6억원	1.6억원	4.6억원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	-	0.1억원	0.6억원	1.6억원	4.6억원														
• 세대생략 상속분은 30%(40%) 할증(대습상속은 할증하지 않음) (*) 2016년 1월 1일 이후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미성년자로 2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 40% 할증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문화재 자료 등에 대한 징수유예액																		
- 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2021년 현재 3%)·증여세액공제 등																		
+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40%,20%,10%)·납부불성실가산세																		
= 상속세 납부할세액	• 분납·물납·연부연납 : 분납과 연부연납은 중복적용되지 않음																		

1-1.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구분	내용
총상속재산가액	•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비과세상속재산가액	• 전사자 등에 대한 비과세 • 금양임야·문화재 등 비과세재산
(-) 과세가액불산입액	•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등
(-) 공제금액	• 공과금, 장례비, 채무
(+)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 • 특례적용 증여재산 (창업자금, 기업승계주식)
(=) 상속세 과세가액	

1-1-1. 총상속재산가액

(1)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재산 포함)이란 ①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②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격과 같이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총상속재산가액 = 「민법」에 따른 상속재산 + 유증재산 + 사인증여재산 + 의제(추정)상속재산

(2) 상속의 의제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재산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그 취지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형식이 상속·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데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계약자(실질납부자)	피보험자	수익자	상속재산 해당 여부
피상속인	피상속인	상속인	○
상속인	피상속인	상속인	×

이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text{보험금 총액} \times \frac{\text{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text{피상속인 사망시까지 납입된 보험료 총합액}}$$

2)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와 재산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자의 재산권을 수탁자의 명의로 신탁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지정된 수익자를 위하여 그 재산권이나 그 이익을 관리·처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그 재산에 대한 명목상의 소유자에 불과하고,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탁자이므로 피상속인이 신탁하는 재산이나 피상속인이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즉,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3)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그의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상속의 추정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성자산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내에 일정금액 이상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으로 추정함으로써 과세형평을 기하고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1)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경우

구분	구체적 내용
(1) 재산처분의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이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
(2) 채무부담의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여기서 '재산종류별'이란 ①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그 외의 재산으로 구분한 것을 말하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① 거래상대방(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을 말합니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②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③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인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④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⑤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2)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

용도불명금액 = 재산처분·인출·채무부담액으로 얻은 금액 - 용도가 입증된 금액

기준금액 = Min[①, ②]

- ① 재산처분 등으로 인해 받은 금액 × 20%
- ② 2억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상속추정재산가액) = 용도불명금액 - 기준금액

※ 계산사례

김사망씨는 2021년 4월 4일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김사망씨가 상속개시 전체 처분한 자산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시기	금액	용도불명금액
토지매각	2019년 12월 5일	3억원	1억원
건물매각	2021년 1월 31일	2억원	3천만원
채권매각	2020년 2월 14일	2억원	2억원
주식매각	2020년 11월 11일	2.5억원	4천만원

(계산내역)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1) 1년 이내에 처분하고 받은 금액 : 2억원 ≥ 2억원

- ① 기준금액 : Min[2억원×20%, 2억원] = 4천만원
- ② 용도불명금액 : 3천만원 < 4천만원
- ③ 추정상속재산가액 : 없음

(2) 2년 이내에 처분하고 받은 금액 : 2억원 + 3억원 = 5억원 ≥ 5억원

- ① 기준금액 : Min[5억원×20%, 2억원] = 1억원
- ② 용도불명금액 : 1억원 + 3천만원 = 1.3억원 > 1억원
- ③ 추정상속재산가액 : 1.3억원 - 1억원 = 3천만원

(3) 가산할 금액((1), (2)의 추정상속재산가액 중 큰 금액) = 3천만원

2.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1) 1년 이내에 처분하고 받은 금액 : 2.5억원 ≥ 2억원

- ① 기준금액 : Min[2.5억원×20%, 2억원] = 5천만원
- ② 용도불명금액 : 4천만원 < 5천만원
- ③ 추정상속재산가액 : 없음

(2) 2년 이내에 처분하고 받은 금액 : 2.5억원 + 2억원 = 4.5억원 < 5억원

추정상속재산가액 : 해당사항 없음

(3) 가산할 금액 = 없음

1-1-2. 상속세의 비과세

상속세의 비과세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과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는 국가에서 과세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별도의 사후관리 등을 하지 않습니다.

(1)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사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공공도서관·공공박물관에 유증·사인증여를 한 재산
-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해당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해 있는 보호구역 안의 토지
- ③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합니다)을 기준으로 한 다음의 재산. 다만, ㉠과 ㉡의 재산의 합계액은 2억원을 한도로 하며, ㉢의 재산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합니다.
 - ㉠ 분묘(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를 말합니다)에 속한 9,900㎡ 이내의 금강임야
 - ㉡ 분묘에 속한 1,980㎡ 이내의 묘토(墓土)인 농지
 - ㉢ 족보와 제구(2013년 2월 15일에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 1천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④ 「정당법」에 의한 정당에 유증·사인증여를 한 재산
- 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 2005년 1월 1일 이후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몰수·추징에 관계없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⑥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우리사주조합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유증·사인증여를 한 재산
- ⑦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그 밖에 기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 유증한 재산으로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하였거나 유증·사인증여에 의하여 지급해야 할 것으로 확정된 재산
- ⑧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공공박물관에 증여한 재산

여기서 “금강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의 임야를 말하고, “묘토”란 묘지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 땅으로서 제사를 모시기 위한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합니다.

1-1-3.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1)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해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연해야 합니다.

- ①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늦어지는 경우
- ②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설립허가 등이 늦어지는 경우

다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 등과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자선, 장학, 사회복지 목적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2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은 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분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후관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 초과분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 ① 운용소득을 1년 내 80% 이상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②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③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취임 금지
- ④ 자기내부거래 금지
- ⑤ 정당한 대가 없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광고·홍보 금지

(참고사항) 주식 보유비율에 관계없이 전액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공익법인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이 3년 이내 초과 출연 부분을 매각하는 경우(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주식 등 보유비율에 관계없이 전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합니다.

(1) 공익법인 요건

다음의 공익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이어야 합니다.

- ① 위 ‘(1)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에서 설명한 ①~⑤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후관리를 위반하지 않는 공익법인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 ④ 위 ③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2) 출연요건

위 (1)의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 받아야 합니다.

(3) 주무부장관의 인정요건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2)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신탁(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합니다)을 통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해당 공익신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①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공익법인 등이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수혜자일 것
- ②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않을 것
- ③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 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 ④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할 것.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신탁 이행이 늦어지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을 이행할 것

1-1-4. 공과금·장례비용 및 채무

상속세 과세가액은 다음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1)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한편,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산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등은 공제가 가능한 공과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장례비용

구분	비고
①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금액(②는 제외)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으로 함
②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으로 함

따라서 장례비용은 증빙서류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최저 500만원을 인정하며, 실제 장례에 소요된 금액이 아무리 많고 또한 이것이 증빙서류에 의해 입증된다 하더라도 최고 1천만원(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사용하는 경우 최고 1,500만원)까지만 인정되는 결과가 됩니다.

(3) 채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에 한정합니다. 여기서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합니다.

한편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에는 그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참고사항) 채무의 입증방법

구분	채무의 입증방법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 외의 채무	금융거래증빙,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관련 서류

1-1-5. 증여재산 가산액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생전에 분산증여를 통해 상속세의 누진적 부담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다음의 합산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합니다.

피상속인	증여를 받은 자	사전증여재산 가액
거주자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한 국내·외 재산가액
	상속인 아닌 자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한 국내·외 재산가액
비거주자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한 국내소재 재산가액
	상속인 아닌 자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한 국내소재 재산가액

이 경우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합니다. 즉, 증여당시 평가액을 가산하므로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시가상승분은 고려하지 않으며, 그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사례

다음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2021년 4월 4일 사망한 김사망씨의 과세자료입니다.

1. 상속재산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역	금액	비고
토지A	4억원	
토지B	1억원	국가에 유증된 토지임
토지C	3억원	미국에 소재하는 토지임
토지D	1억원	친구인 이생존씨에게 유증된 건물임
생명보험금	3천만원	김사망씨의 사망으로 장남이 받은 보험금으로, 총 불입보험료 1천만원 중 5백만원은 김사망씨가 나머지는 장남이 불입하였음
퇴직금	5천만원	김사망씨의 사망으로 인해 받은 금액으로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2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2. 김사망씨가 상속개시 전 증여한 재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증자	증여일	증여당시의 가액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
장남	2013. 7. 12.	5천만원	1.5억원
친구 홍길동	2014. 2. 14.	1억원	2억원
친구 임걱정	2017. 4. 19.	3천만원	1억원

3. 김사망씨의 소득세 미납액은 1천만원이며, 여기에는 상속인인 장남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가산금 1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김사망씨의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15백만원(봉안시설 사용비 7백만원 포함)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됩니다.

5. 사망당시 김사망씨의 채무는 은행차입금 2천만원입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1. 총상속재산가액

내역	근거	금액
토지A		4억원
토지B	비과세대상이지만 총상속재산가액에 일단 포함합니다.	1억원
토지C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국외재산도 포함합니다.	3억원

내역	근거	금액
토지D	유증에 대해서도 상속제가 과세됩니다.	1억원
생명보험금	3천만원×5백만원/1천만원=15백만원	15백만원
퇴직금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5천만원
합계		9.65억원

2. 공과금·장례비용·채무상속재산 등의 현황

내역	근거	금액
공과금	1천만원-1백만원=9백만원	9백만원
장례비용	8백만원(일반장례비)+5백만원(봉안시설)=13백만원	13백만원
채무	은행차입금 2천만원 전액	2천만원
합계		42백만원

3. 증여재산 가산액

수증자	증여일	합산할 금액	비고
장남	2013. 7. 12.	5천만원	합산기간(10년) 내의 증여분
친구 홍길동	2014. 2. 14.	-	합산기간(5년)이 지났음
친구 임걱정	2017. 4. 19.	3천만원	합산기간(5년) 내의 증여분
합계		8천만원	

4. 상속세 과세가액

총상속재산가액 9.65억원 - 비과세재산가액 1억원 - 과세가액불산입액 0원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42백만원 + 증여재산가산액 8천만원 = 9.03억원

(참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증여재산

구분	재산종류	관련규정
증여세 비과세재산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상증법 §46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상증법 §48①
	• 공익신탁한 재산	상증법 §52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상증법 §52의2①
합산배제 증여재산	• 재산취득후 해당 재산의 가치 증가	상증법 §31①3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이익, 양도이익	상증법 §40①2, 3
	• 주식의 상장 등의 이익에 따른 증여	상증법 §41의3
	• 합병에 대한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상증법 §41의5
	• 재산취득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법 §42의3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19년 1월 1일 이후)	상증법 §45의2
	• 특수관계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증법 § 45의3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증법 §45의4
조특법상 특례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	조특법 §71⑤
비실명 특정채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특정채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3 및 부칙§9
기타	• 증여자인 피상속인보다 수증자인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	재산상속 46014-473, 2000.04.17.
	• 증여자가 증여재산을 반환받고 사망한 경우 해당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과세 안함	재재산46014-284, 2000.10.05.

1-2.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구분	내용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비과세상속재산가액	• 전사자 등에 대한 비과세 • 금양임야·문화재 등 비과세재산
(-) 과세가액불산입액	•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등

구분	내용
(-) 공제금액	• 공과금, 장례비, 채무
(+)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
	• 특례적용 증여재산(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인적공제 : 기초공제, 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 물적공제 : 가업·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 신용평가전문기관에 대한 수수료 • 서화, 골동품 등 예술품 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과세최저한 50만원 미만)	

상속세 과세표준이란 상속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를 뺀 가액으로 합니다.

1-2-1. 인적공제

(1) 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기초공제만을 적용하며 다른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 배우자상속공제

1) 공제액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즉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등재된 자를 말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의 한도액 = Min【①, ②】

- ① 기준금액×배우자 법정상속분-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② 30억원

위 한도액에서 기준금액이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총상속재산가액(주1)

-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사인증여를 받은 재산가액
 -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가액
 - (-)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 공과금 및 채무(주2)
 - (+) 합산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주3)
-
- (=) 기준금액

(주1) '총상속재산가액'이란 「민법」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의제(추정)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증여재산 가산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비과세 재산가액과 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장례비용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3) 상속인 외의 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민법」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하고,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은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합니다.

현행 「민법」에 따른 배우자는 1순위(직계비속), 2순위(직계존속) 상속인과 공동상속하되, 배우자 상속분은 공동상속인의 1.5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자녀 1인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60%(1.5/2.5), 자녀 2인과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약 43%(1.5/3.5)입니다.

2) 배우자상속공제의 최저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상속세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최소 5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구분	분할기한 내에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무신고, 미분할
배우자 상속공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억원에 미달시 5억원을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도 : M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상속재산가액 × 법정지분율) -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과세표준 ② 30억 	

(세부사항) 배우자 상속재산의 분할과 신고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분할기한'이라 합니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합니다)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합니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①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의 분할을 심판청구한 경우
- ②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사항)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연장

〈개정내용〉 종전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하였으나,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기한이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연장됨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경우에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3) 그 밖의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종류	공제대상자	공제액
① 자녀공제	자녀	1명당 5천만원
② 미성년자공제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명당 1천만원×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③ 연로자공제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	1명당 5천만원
④ 장애인(**)공제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1명당 1천만원×기대여명의 연수

(*) 「민법」의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 이후 미성년자는 만 19세를 말합니다.

(**) 장애인의 범위 및 입증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의 범위	입증서류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증명서 • 상이자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한편 원칙적으로 그 밖의 인적공제(배우자상속공제 포함)는 서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 ① 자녀공제에 해당하는 사람이 미성년자공제에도 해당하는 경우
- ② 장애인공제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우자상속공제 또는 그 밖의 인적공제에도 해당하는 경우

(참고) 인적공제 중복가능여부

인적공제	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배우자					○
자녀			○	선택	○
미성년자		○			○
연로자		선택			○
장애인	○	○	○	○	

(4)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기초공제액과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공제)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나, 2020년 1월 1일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고한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일괄공제보다 적은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피상속인의 상속인이 그 배우자 단독인 경우를 말합니다)에는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만을 적용하며, 일괄공제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구분	일괄공제액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억원	
• 배우자만 상속재산을 받은 경우	단독상속	일괄공제 불가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또는 협의분할에 따라 배우자 혼자 상속 받은 경우	5억원

1-2-2. 물적공제

(1) 기업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기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써 자세한 내용은 '제4장 기업승계와 관련된 세제지원제도' 중 '1. 기업상속공제'에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2)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산림·어업경영 및 가축기름 포함)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 등에 종사한 상속인이 농지 등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을 15억원(201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5억원)의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구분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양축·영어·영림에 사용한 다음의 재산으로 합니다. ① 「농지법」 제2조 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 ②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③ 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 포함) ④ 「어선법」에 따른 어선 ⑤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는 제외) ⑥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 ⑦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염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해당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 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3) 금융재산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의 경우 평가액이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데 반해 금융재산은 100% 평가됨으로서 발생하는 재산종류간의 과세형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때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의 가액(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의 가액을 뺀 가액을 말합니다)이 있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합니다.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2,000만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2,000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 20%
10억원 초과	2억원

여기서 금융재산이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금전신탁자산·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비상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금융재산에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인된 금융기관의 채무를 말하며,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재해손실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써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자연재해 등의 재난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따라 해당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text{재해손실공제액} = \text{재해손실가액} - \text{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의해 보전가능한 금액}$$

(5) 동거주택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의 100%(2019년 12월 31일 이전에는 80%)를 공제하지만, 그 금액이 6억원(2019년 12월 31일 이전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또한 2013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분은 상속인인 배우자도 포함되었으나, 2014년 1월 1일 이후에는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방양한 경우로 한정하여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거나 배우자가 동거방양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text{상속공제액} = \text{Min}\{[\text{동거주택가액(부수토지가액 포함)} - \text{담보된 채무액}] \times 100\%, 6\text{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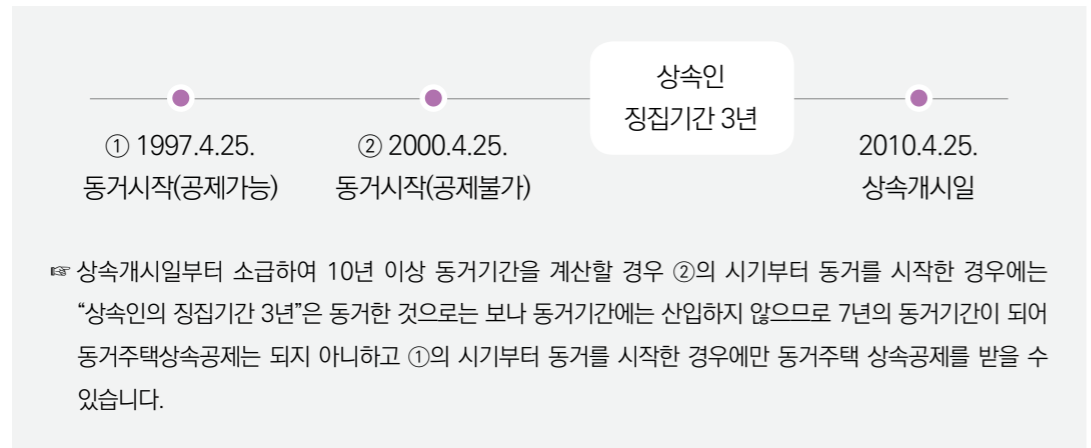
- ①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됩니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③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됩니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합니다. 한편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에 따른 1세대가 1주택(고가주택을 포함합니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a.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b.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c.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 d.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이농주택·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 e.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 ② 최연장자] 순서에 따라 ①·②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는 제외합니다.
- ④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으로 한정됩니다)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자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 ① 징집
- ② 학교에 취학(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제외)
- ③ 직장변경,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④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치료 또는 요양



1-2-3.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이상의 상속공제의 합계액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 (-)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 (-)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주1), (주2)

(=) 상속공제의 종합한도액

(주1)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즉, 위 계산식에서 [상속세 과세가액]5억원(일괄공제 수준)인 경우에만 이를 차감하고, [상속세 과세가액≤5억원(일괄공제 수준)인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2) 위 상속공제의 한도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자금 및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해당 창업자금 및 기업의 주식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업승계로 증여받은 주식의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8항, 제30조의6 제4항).

1-2-4.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구분	공제액	공제의 한도액	공제요건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	당해 수수료	5백만원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감정을 실시하고 당해 평가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가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수수료	당해 수수료	평가대상법인의 수 및 신용평가전문기관별 각각 1천만원	그 평가된 가액이 상속·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용)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등 예술적가치가 있는 유형자산 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	당해 수수료	5백만원	

1-3. 상속세액의 계산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는 40%)를 가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와 징수유예액을 차감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상속세 신고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1-3-1. 상속세 산출세액

(1) 상속세 세율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2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5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4억 6천만원

(2)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한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text{세대생략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text{상속세 산출세액} \times \frac{\text{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text{총상속재산가액}} \times 30\%(40\%)(*)$$

(*) 2016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를 할증합니다.

이처럼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해 상속세를 할증과세하는 이유는 한 세대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가 회피되는 결과를 방지함으로써 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1-3-2.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징수유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문화재자료 등 또는 박물관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세액에 대한 징수를 유예합니다.

$$\text{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text{상속세 산출세액} \times \frac{\text{문화재 자료 등 및 박물관자료의 가액}}{\text{상속재산가액(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포함)}}$$

1-3-3. 세액공제

상속세 세액공제	내용
증여세액공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해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상당액 공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개시된 경우 그 재상속이 개시되는 기간에 따라 일정액 공제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 3% 공제

(1) 증여세액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또는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가산하는 경우 그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은 당초 증여시 이미 증여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하는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text{증여세액공제액} = \text{Min}[\text{①}, \text{②}]$$

- 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 ② 공제 한도

위 산식에서 공제 한도액의 계산방법은 수증자가 상속인(수유자 포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 산식과 같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①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닐 경우

$$\text{상속세 산출세액} \times \frac{\text{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text{상속세 과세표준}}$$

②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

$$\text{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times \frac{\text{상속인 등 각자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text{상속인 등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증여재산포함)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

가. 상속인 등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

$$\text{상속재산에} \left[\left(\frac{\text{상속세 과세표준} - \text{사전 증여재산 과세표준}}{\text{상속인·수유자별 과세가액}} \right) \times \left(\frac{\text{가산한 상속·수유자별 증여 재산가액}}{\text{상속인·수유자별 과세가액}} \right) \right]$$

나. 상속인 등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

$$\text{상속세 산출세액} \times \text{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

※ 계산사례 : 증여세액공제

- 피상속인 사망 : 2021. 4. 4.
- 배우자, 장남, 차남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됨
- 피상속인이 2020. 4. 1.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 : 100백만원 (증여재산과세표준 : 70백만원, 기납부 증여세액 : 13백만원)
- 상속재산 가액 : 1,000백만원
- 상속세 과세가액 : 1,100백만원
- 상속 공제 : 700백만원
- 상속세 과세표준 : 400백만원

(1) 상속세 산출세액

$$\text{상속세 산출세액} = 400\text{백만원} \times 20\% - 10\text{백만원} = 70\text{백만원}$$

(2) 상속인 각자가 납부해야할 산출세액

구분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	상속인 각자가 납부해야 할 산출세액
배우자	$(400-70) \times \frac{1,000 \times 1.5 \div 3.5}{1,100-100} \div 400 = 0.3536$	24,752,000원
장남	$[70+(400-70) \times \frac{1,000 \times 1 \div 3.5}{1,100-100}] \div 400 = 0.4107$	28,749,000원
차남	$(400-70) \times \frac{1,000 \times 1 \div 3.5}{1,100-100} \div 400 = 0.2357$	16,499,000원

(3) 증여세액공제 : Min【①,②】= 12,249,573원

① 13백만원

$$\text{② } 28,749,000\text{원} \times 70 \div [70+(400-70) \times \frac{1,000 \times 1 \div 3.5}{1,100-100}] = 12,249,573\text{원}$$

(2)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속재산 중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 외국의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 【①, ②】

- ① 상속세 산출세액 × $\frac{\text{외국의 법령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text{상속세 과세표준}}$
- ② 외국에서 부과받은 세액

(3)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합니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前)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합니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액 = Min【①×②, ③】

- ① 공제세액 =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frac{\{ \text{재상속분 재산가액} \times \frac{\text{전의 상속세 과세가액}}{\text{전의 상속재산가액}} \}}{\text{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② 공제율

재상속기간	공제율	재상속기간	공제율
1년 이내	100%	6년 이내	50%
2년 이내	90%	7년 이내	40%
3년 이내	80%	8년 이내	30%
4년 이내	70%	9년 이내	20%
5년 이내	60%	10년 이내	10%

③ 공제한도 = 상속세 산출세액 - 증여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4)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는 상속세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text{신고세액 공제액} = (\text{상속세 산출세액 (할증세액 포함)} - \text{문화재 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 \text{공제·감면세액}) \times 3\%$$

(*) 공제율 개정연혁

2016.12.31. 이전	2017.1.1.~2017.12.31	2018.1.1.~2018.12.31	2019.1.1. 이후
10%	7%	5%	3%

1-3-4. 가산세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전에는 각 세법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가산세 체계를 전면 개정하여 2007년 1월 1일 이후에는 「국세기본법」에 공통적인 가산세를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1) 일반무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text{일반 무신고 가산세} = [\text{산출세액(세대생략가산액 포함)} - \text{징수유예액} - \text{공제·감면세액}] \times 20\%$$

2) 부정무신고가산세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text{부정 무신고 가산세} = [\text{산출세액(세대생략가산액 포함)} - \text{징수유예액} - \text{공제·감면세액}] \times 40\% (\text{국제거래 부정행위는 60\%})$$

(2) 과소신고가산세

1)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text{일반 과소신고가산세} = (\text{신고해야 할 납부세액} - \text{신고한 납부세액}) \times 10\%$$

2)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①)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②)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 ①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text{부정 과소신고가산세} = \text{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times 40\% \\ (\text{국제거래 부정행위는 } 60\%)$$

- ② '①'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총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text{일반 과소신고가산세} = (\text{총과소신고납부세액} - \text{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times 10\%$$

(참고)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배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①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
- ② 상속공제(또는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③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상속재산(또는 증여재산)으로서 재산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 ④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45조의3),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제45조의4), ㉢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

(3) 납부지연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를 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text{납부지연가산세} = ① + ②$$

- ① 상속세(또는 증여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 지연일수분 = 미납세액(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미납일수 × 25/100,000
- ② 상속세(또는 증여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 체납분 = 미납세액(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3%

(*) 따라서 미납이자에 대한 이자율은 연9.125%(1일 25/100,000×365일)입니다.

(참고)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배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①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45조의3),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제45조의4), ㉢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 이처럼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사유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② 상속세(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재산(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

(개정사항) 상속세·증여세 관련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 추가

〈개정내용〉 상속세(또는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이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는 것은 납부지연에 대한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1-4. 상속세의 납세절차

1-4-1.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1) 상속세의 과세표준신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상속세의 자진납부

상속세를 신고하는 자는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산출세액(할증세액 포함)에서 다음의 금액을 뺀 금액을 자진납부해야 합니다.

- ① 문화재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 ② 공제 또는 감면되는 세액
- ③ 신고세액공제액
- ④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금액

이 경우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할 수 없습니다.

구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
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때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상속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분납’란에 쓰는 것으로 분할납부신청이 완료되기 때문에 별도의 분납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상속세 신고시 작성·제출해야 하는 서류

〈필수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2)
- 채무부담 및 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 배우자 상속공제명세서(부표3의2)
-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 소명명세서(부표4)

〈해당시 제출서류〉

-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부표5)
-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협의분할서 및 평가명세서
- 기업상속공제신고서 등 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입증서류

※ 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증여세>주요서식」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증여세의 경정청구 특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또는 과세관청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이 많이 변동하였거나 하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기존에 납부한 상속세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 청구기한(3개월 이내)에 대한 특례규정에 해당합니다.

- ①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 ②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 상속재산이 수용·「민사집행법」상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상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이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할증평가된 가액에 대하여 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이 다음의 주식에 해당하여 그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은 경우. 이 경우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주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발행된 주식으로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예수해야 하는 주식

(개정사항) 경정청구의 특례사유 확대

〈개정내용〉 상속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주식에 해당하여 그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서 매각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1년 2월 17일 이후 결정·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또한 아래의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허용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조기에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①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부동산 무상사용 개시시점에서 5년간 임대료 상당액을 선과세하는데, 5년의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은 사유 등으로 무상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 a.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 b. 부동산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양도한 경우
 - c. 부동산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 d.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부동산무상사용자가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
- ② 금전무상대출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대부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해당 금전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 금전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자가 해당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않게 되는 경우
- ③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재산의 사용기간 중에 재산제공자로부터 해당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담보제공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해당 재산을 담보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1-4-2. 연부연납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재산이 대부분 부동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액의 상속세를 일시에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의 일시납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납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거액의 세금을 일정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의 기한 편의를 제공하는 연부연납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연부연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4장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 지원제도' 중 '3.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 •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 포함)이나 결정통지에 의한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 • 납세담보 제공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인 전부가 신청.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인 전부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일부 상속인이 자기분에 한해 신청 가능
신청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 :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기한후신고시 제출가능 - 수정신고시 납부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 가능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받은 경우 :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
허가 및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기한까지 허가여부를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시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 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 증여세는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 -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 상속세는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증여세는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납세고지서 및 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 그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4일 이내 • 허가통지기한까지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구분	내용
허가의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허가 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 변경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 가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담보의 변경 등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③ 납기전징수 사유에 해당되어 연부연납기한까지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전액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해당 가업용 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하거나 해당 상속인(배우자 포함)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폐업하는 경우 ⑤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⑥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소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부연납 허가일부 5년 이내에 가업상속공제금액 추정사유에 해당하면 허가일부 5년에 미달하는 잔여기간에 한하여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 ② 그 밖의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 •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

1-4-3. 물납

물납이란 세금을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재산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 유가증권 등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구성되어 있어 납세의무의 이행을 현금납부로 강제한다면 그 이행이 매우 곤란하며 급매 등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현금 대신 상속받은 부동산 등으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증여세의 경우에도 물납을 허용하였으나, 201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상속세의 경우에만 상속받은 금융재산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할 경우에 한해서 물납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1) 물납의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상속세를 물납할 수가 있습니다.

- ①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비상장주식을 제외하지만 비상장주식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합니다)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할 것
- ②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여기서 '금융재산'이란 금전과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특정금전신탁·보험금·공제금 및 어음을 말합니다.

(2) 물납의 신청

물납의 신청기간은 연부연납 신청기간과 같습니다.

- ① 신고기한 내 신고하는 세액의 물납신청 :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할 때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② 수정신고하는 세액의 물납신청 : 수정신고를 할 때에도 물납 신청을 허용하여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020년 2월 11일 이후 상속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정신고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와 함께 물납허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③ 기한 후 신고시 신고하는 세액의 물납신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할 때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④ 납세고지세액의 물납 신청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해당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신고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물납신청이 가능하지 않았지만 2020년 2월 18일 이후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물납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⑤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물납신청 :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첫 회분의 분납세액(연부연납 가산금은 제외하며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에 대해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물납의 허가

물납의 허가는 다음의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 발송을 하지 않은 경우 허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① 신고기한 내 신고하는 세액의 물납허가 기한 :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한(상속세는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합니다.
- ②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하는 세액의 물납허가 기한 :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합니다.
- ③ 납세고지세액의 물납허가 기한 :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합니다.

- ④ 물납허가 기한의 연장 : 물납 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물납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이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 자동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재산을 분할하여 물납해야 하는 경우 :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않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나 상속인·수유자 외의 자에게 증여한 분은 제외)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물납에 총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이 당해 상속재산가액의 50%를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불포함) 중 금전과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특정금전신탁·보험금·공제금 및 어음의 가액(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않음)을 초과할 것 • 납세의무자가 물납허가를 신청기한 내에 신청 •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 아닌 재산으로 물납 신청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기한까지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 과세표준 신고기한 - 상속세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시 :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시 신청서 제출 -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 후 분납세액을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 기한 30일 전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기한까지 허가여부를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신청한 물납 :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9개월 이내 - 상속세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시 신청한 물납 : 수정신고일 또는 기한 후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납세고지서 및 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한 물납 : 그 납부기한 경과일부 14일 이내 - 연부연납의 분납세액의 물납 :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허가통지기한까지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는 허가한 것으로 봄 •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신청 : 물납신청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않는 경우에만 허가통지 • 허가기간연장 : 기간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하며,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발송을 하지 않은 경우 허가한 것으로 봄

(4) 물납 재산의 수납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20일의 범위 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해당 물납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5)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

물납 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 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동산의 경우

- a.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 b. 물납 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c.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 d.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 e.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 f. d 및 e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② 유가증권의 경우

- a.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폐업 등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b.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회생절차 중에 있는 경우
- c.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시부터 허가시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물납 재산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d.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 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 f. e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6) 물납 재산의 변경

물납을 신청한 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 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3월)에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변경신청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변경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또한, 물납허가기간 내 물납 허가 후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7) 물납세액의 범위

1)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의 산식을 한도로 하며, 세무서장은 해당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이 없을 때에는 물납 한도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물납한도액=Min【①, ②】

$$\text{① 상속세 납부세액} \times \frac{\text{부동산+유가증권의 가액}}{\text{상속(증여)재산가액}}$$

② 상속세 납부세액 - 순금융재산가액 - 상장유가증권가액(처분제한 주식은 제외)

※ 예시 : 물납한도 계산사례

• 상속세 납부세액 30억원, 상속재산 85억원(오피스텔 10억원, 토지 35억원, 금융재산 40억원)

→ Min【①, ②】=물납 불가

① 30억원×45억원(*)/85억원=15.88억원

(*) 오피스텔 10억원+토지 35억원=45억원

② 30억원-40억원(금융재산)=△10억원

• 상속세 납부세액 45억원, 상속재산 100억원(토지 30억원, 비상장주식 30억원, 상장주식 10억원(처분제한 없음), 금융재산 30억원)

→ Min【①, ②】=5억원

① 45억원×60억원(*)/100억원=27억원

(*) 토지 30억원+비상장주식 30억원=60억원

② 45억원-(30억원+10억원(**))=5억원

(**) 현금전환이 용이한 금융재산 30억원과 상장주식 10억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2)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계산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 해당 상속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합니다.

$$\text{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 = \text{상속세 납부세액} \times \frac{\left(\begin{array}{l} \text{물납에 충당 가능한} \\ \text{부동산·유가증권의} \\ \text{가액} \end{array} - \begin{array}{l} \text{상속개시일 이후 관리·처분이} \\ \text{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된} \\ \text{부동산·유가증권가액} \end{array} \right)}{\text{상속재산가액}}$$

3) 비상장주식 등의 물납 가능 범위

위의 물납한도에도 불구하고 비상장주식의 경우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 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text{비상장주식 등 물납 가능 범위} = \text{상속세 납부세액} - \text{상속세 과세가액} - (\text{비상장주식} + \text{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가액})$$

※ 예시 : 비상장주식의 물납가능사례

• 상속세 납부세액 45억원, 상속재산 100억원(토지 30억원, 비상장주식 40억원, 기타 상속재산 30억원(물납대상 아님))

→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상속재산(60억원(*))으로 상속세(45억원) 납부가 가능하므로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불가능함

(*) 토지 30억원+기타 상속재산 30억원=60억원

→ (2018년 3월 31일 이전) 토지(30억원)으로 상속세(45억원)의 충당이 안되므로 비상장주식 물납가능

• 상속세 납부세액 20억원, 상속재산 60억원(토지 30억원(1억 저당권 설정), 비상장주식 20억원, 기타 상속재산 10억원(물납대상 아님))

→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상속재산(39억원(**))으로 상속세(230억원) 납부가 가능하므로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불가능함

(*) 토지 29억원(30억원-저당권 1억원)+기타 상속재산 10억원=39억원

→ (2018년 3월 31일 이전) 선순위 물납재산인 토지에 근조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토지 대신 비상장주식으로 물납가능

(8)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1)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물납에 충당 가능한 재산	물납충당 제외 재산
부동산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유가증권	국채·공채·주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단,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다만, 비상장주식 외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가능하나,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물납의 충당 순서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다음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해야 합니다.

- ① 국채 및 공채
- ② 물납충당이 가능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위 ①의 재산을 제외합니다)
- ③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아래 ⑥의 재산을 제외합니다)
- ④ 주권,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등(위 ①, ②, 아래 ⑥의 재산을 제외합니다)
- ⑤ 물납 충당이 가능한 비상장주식 등
- ⑥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

(9)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으로 합니다.

1) 주식의 경우

물납에 충당할 주식의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합니다. 그러나 상속 개시일로부터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에 증자 또는 감자가 있는 경우 주식수의 변동에 따른 1주당 가치가 변동하기 때문에 수납가액을 조정하여 조정 후의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수납해야 합니다.

구분		물납충당 제외 재산
증자	무상	$\text{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frac{\text{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1 + \text{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유상	$\text{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frac{\text{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text{신주 1주당 주금납입액} \times \text{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1 + \text{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감자	무상	$\text{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frac{\text{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1 - \text{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유상	$\text{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frac{\text{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text{신주 1주당 지급금액} \times \text{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1 - \text{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공모증자 하는 경우의 신주발행 및 특별법에 의해서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은 상속재산의 가액이 그대로 수납가액이 됩니다.

2) 연부연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

상속세의 연부연납기간 중 분할 납부하는 세액(첫 회분 분납세액 및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에 대해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해당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해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시가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3) 유가증권의 가액이 30% 이상 하락한 경우 수납가액 특례

물납재산인 유가증권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에는 물납 당시의 평가가액으로 수납함으로써 물납재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국고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납에 상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이하 '물납기간'이라고 합니다) 중 정당한 사유없이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이 아래의 ①의 재평가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의 가액에 비해 3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아래의 ②와 같이 평가한 가액으로 수납하게 됩니다.

① 재평가 사유

- a.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 b.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c.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배당금이 물납을 신청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금에 비하여 증가한 경우
- d. 위 a부터 c와 유사한 사유로서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수납가액의 평가방법

-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시가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 b.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물납을 신청한 유가증권(물납 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을 말합니다)의 전체 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 외의 상속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해당 물납신청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 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 평가액에 가산합니다.

(10) 물납신청의 철회 및 재평가신청 의무의 부여

2020년 2월 11일 이후 물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물납이 허가되기 전에 신청한 물납재산이 위 '(5)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서 설명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신청을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재평가사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5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보다 30% 이상 하락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철회 의무 및 재평가신청 의무를 납세자에게 부여하여 성신신고를 유도하고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 ①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 ②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③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배당금이 물납을 신청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금에 비하여 증가한 경우
- ④ 위 ①부터 ③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11) 물납재산의 환급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거나 감액하는 결정결정에 의해 환급되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게 됩니다.

- ①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한 순서에 따라 환급합니다.
- ②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물납충당 재산의 허가 순서의 역순으로 환급합니다.

2. 증여세의 계산

증여세는 증여자가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반면 증여세는 증여자의 재산총액이 아닌 수증자의 취득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1) 증여세 납세의무자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 납세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입니다. 한편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국내와 국외의 모든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이면 증여받은 재산 중에서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	과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 • 국내 비영리법인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재산

수증자	과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거주자 • 국외 비영리법인 	<p>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 소재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이나 국외적금 등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2.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외국법인(증여재산 취득일 현재 자산총액 중 국내소재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증여세 계산구조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증여재산의 종류, 채무(임대보증금, 은행대출금 등) 및 증여재산공제 등의 이해와 활용은 절세전략을 찾는 데 유용하므로 증여세 계산구조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계산구조]	
본래의 증여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없으면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
+ 증여추정재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등
=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장애인이 증여받아 신탁한 재산가액
- 채무인수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은행대출금 등)
+ 기존증여재산 가산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수증재산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합산 ※ 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공제 한도액	6억원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 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적 한도액임						
- 재해손실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이내에 화재 등 재난으로 멸실 또는 훼손된 가액					
- 감정평가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수수료(납부목적) : 5백만원 한도(신고 및 납부 시에만 적용) • 비상장주식 : 평가대상법인의 수, 신용평가전문기간 수별로 각각 1천만원 한도 • 서화·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에 대한 전문가평가수수료 : 5백만원 한도 					
=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과세 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	-	0.1억원	0.6억원	1.6억원	4.6억원
= 증여세 산출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생략 증여분은 30%·40% 할증(직계비속 사망 시 예외) (*)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 40% 할증 					
- 징수유예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자료 등에 대한 징수유예액 					
-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납부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3%) 등 					
+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불성실 가산세(40%,20%,10%) • 납부지연가산세 					
= 증여세 납부할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납·연부연납(분납과 연부연납은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 2016년 1월 1일 이후 물납 신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용어 정의

- 증여재산가액 : 본래의 증여재산에 증여추정재산 등(증여의제액과 추정증여재산)을 더한 금액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에 채무인수액 등을 차감하고 기존증여재산가액은 더한 금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
-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을 경우의 증여세 계산구조]

증여재산가액	• 해당 창업자금 또는 기업승계 주식 등의 가액
- 채무인수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 이미 과세 특례 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이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창업자금 또는 기업승계주식 등의 과세가액을 합산 ※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음
= 증여세 과세가액(창업자금은 30억원 또는 50억원 한도, 기업승계 주식은 100억원 한도) → 위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기본세율로 과세	
- 증여공제	• 5억원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감정평가수수료(납부목적) : 5백만원 한도(신고 및 납부 시에만 적용) • 비상장주식 : 평가대상법인의 수, 신용평가전문기간 수별로 각각 1천만원 한도 • 서화·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에 대한 전문가평가수수료 : 5백만원 한도
=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특례세율 적용)	• 창업자금 : 10% • 기업승계 과세특례 대상 주식 : 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은 20%)
= 증여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적용하지 않음
+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40%,20%,10%) • 납부지연가산세 • 창업자금사용명세서(고용명세서 포함) 미제출가산세(미제출 또는 불분명금액의 3/1,000)
= 증여세 납부할세액	• 분납·연부연납(분납과 연부연납은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 물납불가

[증여재산공제 연혁]

구분	증여재산공제액				
	'03.1.1.~ '07.12.31.	'08.1.1.~ '13.12.31.	'14.1.1. 이후	'16.1.1. 이후	
증여자	배우자	3억원	6억원	좌동	좌동
	직계존속	3,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	좌동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좌동
	직계비속			3,000만원	5,000만원
	기타친족	500만원	좌동	좌동	1,000만원
	그 외	없음	없음	없음	없음

(3) 증여세 신고·납부

증여세 납세의무는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취득한 날(증여시기)에 성립하며, 수증자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재산별 증여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구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기·등록이 필요한 자산	소유권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주식 및 출자지분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의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받기 전 명의개서를 한 경우 주주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무기명채권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 또는 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그 밖의 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Q. 부동산을 증여(증여계약일 : 2021년 3월 30일, 등기접수일 : 2021년 4월 1일)한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입니까?

A. 부동산과 같이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이 증여시기이므로 증여세 신고기한은 등기접수일(2021년 4월 1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2021년 4월 30일)부터 3개월인 2021년 7월 31일입니다.

(4) 증여세 신고시 작성·제출하는 서류

증여세 신고시 작성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
-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기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또는 기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2)
 -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신청서
 -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 ※ 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증여세>주요서식」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증여세의 신고·납부 관할세무서

증여세 신고·납부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증여재산 소재지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과세관할
주소지가 분명한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수증자의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①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②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③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증여자가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2항, 제39조의3 제2항,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라 의제된 경우	증여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6) 유의사항

상속세 및 증여세 정상 신고·납부의 장점

상속세(증여세)를 신고기한까지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신고세액공제(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10%~40%)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미납부액에 연 9.125%를 곱한 금액)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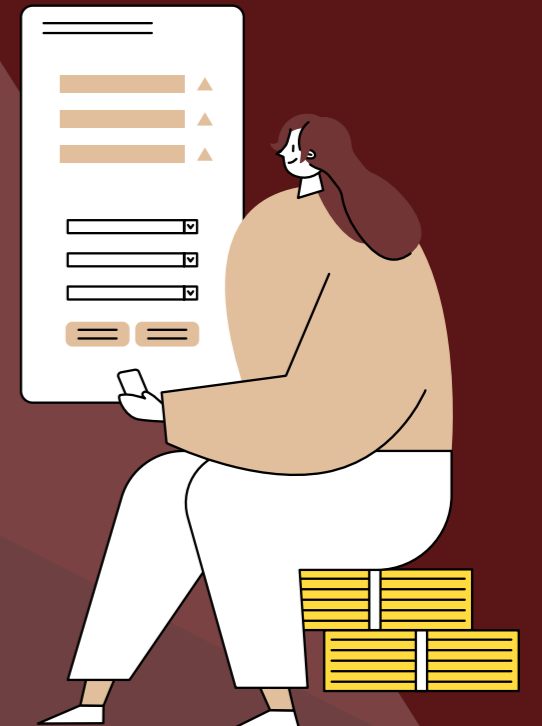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사전계획에 따라 절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의 시기가 빠를수록, 분산 증여할수록, 현금자산보다는 부동산을, 무수의 자산보다는 수익자산을, 향후 가치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증여할수록 절세에 유리합니다.

증여가 유리한지 또는 상속이 유리한지는 재산소유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과 보유재산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절세 대책도 상속세 및 증여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인세 등의 다른 세목과 연관되어 고려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모든 세목의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거나 관련 세법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책을 세운 다음 양도나 증여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기 위하여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유리한 경우도 있고, 불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절세효과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4장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 지원제도



제4장 기업승계와 관련된 세제 지원제도

기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생전에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상속하는 경우 기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500억원 한도)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기업상속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기업 등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의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60세 이상인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의 주식을 자녀가 증여받아 승계하면, 증여재산가액(최대 100억원)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 2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한 후 증여한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증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는 사전상속제도입니다.

이하에서는 기업승계와 관련된 세제 지원제도 중 기업상속공제와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업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해 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등 일괄공제액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30억원 한도) 등이 적용되나, 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500억원을 한도로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상속공제는 법개정 전 1억원에서 차차 공제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현재 업력에 따라 차등하여 최대 5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업상속공제 요건의 완화와 공제액의 대폭 상향은 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상속인이 효율적으로 전수받아 그 원천기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영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중견 장수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 요건과 사후관리 내용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현행 기업상속공제 요건과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 사후관리 유형 및 기업상속재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상속재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개인기업)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법인기업)으로 구분해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기업상속재산이란 상속재산 중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상속재산 중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및 제11장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2월 7일에 개정된 내용으로서 담보된 채무액을 빼는 규정은 법인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같은 날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text{가업상속재산} = \begin{array}{l} \text{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 - \text{해당자산에 담보된 채무액} \end{array}$$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가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이란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text{가업상속재산} = \left\{ \frac{\text{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text{법인의 총자산가액}} \times \left(1 - \frac{\text{사업무관자산가액}}{\text{법인의 총자산가액}} \right) \right\}$$

여기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의 자산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 ①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등 : 「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자산은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와 별장,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특정지역은 현재까지 지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와 별장, 비사업용 토지가 해당됩니다.
- ②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 여기에는 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은 업무무관 부동산과 업무무관 동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③ 대여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대여금으로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 중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현재 과세당국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서는 제외되지만 당연히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68, 2020.10.15.).

④ 과다보유현금 : 여기서 말하는 현금이란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의 요구불예금과 취득일부터 만기일까지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기업이 보유하는 현금이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보유 현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현금을 “과다보유현금”이라고 하여 업무무관자산에 포함합니다.

⑤ 법인이 영업활동과 직접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 이는 투자업 등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채권과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일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금융상품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참고사항) 자회사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에 대한 상반된 입장

(기재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업종의 완전자회사 주식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2, 2015.04.16.외 다수)

(법원)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 판단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2018두 39713, 2018.07.13. 국패)

※ 계산사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중앙의 대주주인 김종양은 2021년 4월 4일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가업상속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당 주식평가액 : 100,000원
- 발행주식수 : 20,000주(김종양 15,000주 보유)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회사 중앙의 자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상 총자산가액 : 100억원
- 비사업용토지 : 5억원
-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아파트 : 3억원
- 투자목적의 골동품 : 1억원
- 임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 5천만원
- 친구 회사인 주식회사 기업에 대여한 금액 : 2억원
- 현금보유현황

① 상속개시일 현재 현금성자산 보유액

구분	금액	비고
현금	5천만원	
보통예금	2.5억원	
별단예금	2억원	
정기예금	5억원	만기 : 2021년 4월 30일

②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현금성자산보유액

구분	현금	보통예금
2020년 말	1천만원	10억원
2019년 말	3천만원	3억원
2018년 말	2천만원	5억원
2017년 말	5천만원	2.5억원
2016년 말	3.5천만원	6억원

- 해외사업진출을 위한 관계회사 주식 : 10억원(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함)

피상속인인 김중양은 상속재산인 15,000주를 장남인 김가장에게 모두 상속하였으나 차남 김자리는 유류분청구소를 제기하여 5,000주를 반환하였습니다. 이 경우 장남인 김가장의 기업상속재산가액은?

- 계산내역

- ① 김중양의 상속받은 주식가액 : 15,000주×100,000원=1,500,000,000원
-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회사 중앙의 총자산가액 : 10,000,000,000원
- ③ 사업무관자산가액

구분	금액	비고
비사업용토지	500,000,000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	300,000,000	
투자목적의 골동품	100,000,000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	50,000,000	
친구회사에 대여한 금액	200,000,000	
과다보유현금	161,500,000	(주1) 참조
관계회사 주식	1,000,000,000	
계	2,311,500,000	

(주1) 과다보유현금

- 상속개시일 현재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유액 : 1,000,000,000원
-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액 : (10,000,000+1,000,000,000+30,000,000+300,000,000+20,000,000+500,000,000+50,000,000+250,000,000+35,000,000+600,000,000)÷5년=559,000,000원
- 과다보유현금 : (559,000,000×150%)-1,000,000,000=161,500,000원

④ 기업상속재산가액 : $1,500,000,000 \times (1 - 2,311,500,000 / 10,000,000,000) = 1,153,275,000$ 원

⑤ 1주당 기업상속재산가액 : $1,153,275,000 \div 15,000$ 주=76,885원

⑥ 장남 김가장의 기업상속재산가액 : (15,000주-5,000주)×76,885=768,850,000원

※ 기업상속재산 및 사업무관자산에 관련된 유권해석사례

• 조세법규는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인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인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에서 사업용 자산의 예시를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고정자산만이 공제대상으로 예시되어 있는 점, 같은 영 제15조 제5항 제1호에서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기업상속 재산가액”을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7항 제1호에서 기업승계 이후 처분이 제한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기업상속재산과 처분제한재산이 동일한데, 1년 이내의 단기간 보유하거나 사업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인 유동자산을 위 두 규정에 동시에 부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라 유동자산이 단기에 처분될 경우 그 처분된 가액이 기업용 자산가액 총액의 000를 넘는 경우 사후적인 상속세 추징대상이 되어 오히려 기업상속을 세제상 지원하려는 동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가 되는 점(법인 가업의 경우 개인과 달리 처분제한재산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명시하고 있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등에 비추어 볼 때, 유동자산은 기업상속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조심 2019중2136, 2019.09.09.)

→ 따라서 개인가업의 경우 법인가업과 달리, 1년 이내 단기간 보유하거나 사업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인 유동자산은 기업상속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례입니다.

•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사업용 자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비유동자산으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의미함(서면2020상속증여3741, 2021.03.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상속재산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함(재산-338, 2011.07.14.)

→ 따라서 개인가업의 경우 '가업(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임대용 토지 및 건물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유권해석입니다.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함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 판단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쟁점지분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대법원2018두39713, 2018.07.13. 국패)

→ 자유시장 경제질서 하에서 기업들이 해외 진출과 사업다각화 등으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회사 설립, 물적분할, 타기업 인수합병을 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인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할 경우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사업다각화를 통한 성장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 바, 결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다른 요건을 부가하여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 해외 현지법인이 없으면 이 사건 법인의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므로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법인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현지 생산공장에 해당하는 해외 현지법인 출자주식은 국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법인의 사업관련 자산에 포함하여 가업상속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함(감심-2019-270, 2020.03.05.)

- 쟁점지분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주식등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법인과 해외자회사의 직접적인 사업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쟁점지분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지분을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20서1841, 2021.02.19.)

→ 과거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은 물론 조세심판례에서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업종의 완전자회사 주식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고 가업상속재산에서 이를

제외함이 타당함(조심2017서4318, 2017.12.19.)'라고 함으로써 자회사 주식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무관자산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유하는 목적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생산설비 등을 간접적으로 보유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법인의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식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단기매매차익이나 배당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을 제외하겠다는 의도인데, 대부분의 자회사주식은 단기매매증권 등과는 달리 종속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등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산이므로 가업상속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최근 대법원판례(대법원2018두39713, 2018.07.13.) 이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은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주식이 재무상태표에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었는지 여부와 같은 다른 요건을 부가하여 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자회사의 직접적인 사업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동 지분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계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므로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에 따른 가업자산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11[법령해석과-3004], 2015.11.13.)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상속증여-1446, 2019.10.0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같은 항 제2호 마목에 따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제외함)에 해당하는 것이며,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같은 호

마목에 따른 과다보유현금을 판단하는 경우 현금에 포함되는 것임(서면-2015-법령해석 재산-1678, [법령해석과-2534], 2015.10.0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가업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상 가업상속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토지와 건물 등 유형고정자산으로 한정할 바 없고, 기업회계에 따른 자산의 범위에는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은 물론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등도 포함되는 점,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함에 있고, 가업상속공제 비율이 2008년 20%에서 2009년 40%, 2012년 70%로 매년 확대되고 있는 점, 가업상속재산을 유형고정자산으로 한정할 경우 자금력이 영세하여 토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반면 자금력이 풍부하여 토지, 건물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물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조심2012서626, 2012.06.19.)

→ 과세관청은 개입기업의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었으나, 조세심판원에서는 “기타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사업장 관련 임차보증금까지도 가업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마목에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4.12.2. 000원을 차입하여 2014.12.4.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2015.12.24. 해지하면서 같은 일자에 건설공제조합에게 상환하여 1년 이상 금융상품에 가입한 것이므로 일시적인 자금운용목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차입할 당시에 건설자재의 비축자금, 건설용기계장비의 구입 및 보수 자금, 노임자금 등의 목적으로 차입하였으나 위 매도가능증권은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매도가능증권은 펀드 성격의 수익증권으로서 000의 자금운용목적으로 가입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마목에 근거하여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도가능증권을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17광0248, 2017.08.24.)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시 보유 후 처분할 목적인

자기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법령해석재산-1711, 2015.11.13.)

- 임직원대여금(가지급금)이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법령해석재산-2768, 2020.10.15.)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 중인 자산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상속증여-3355, 2020.02.06.)

1-2. 가업상속공제액

(1) 공제금액의 계산 및 공제한도적용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 즉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고,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액 = Min【①, ②】

① 가업상속재산가액×100%

② 한도 : 경영기간 10년 이상 2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여기서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기업을 영위하던 중 사망한 경우 해당 기업이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각 기업별로 하는 것이며,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들(2016. 2. 4. 이전 상속분의 경우 상속인 1명)이 모두 상속받는 경우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인들 중 가업상속인이 1개의 가업을 상속받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1개의 가업에 대해서만 가업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제출한 가업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므로 2개 이상의 가업을 가업별로 각각 자녀들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신고 된 가업 외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액이 500억원을 한도로 상향됨에 따라 2개 이상의 가업을 상속인 1명이 모두 상속받는 것으로 선택한 경우로서 각각의 가업이 그 영위기간이 다른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2개 이상의 가업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금액은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가업을 기준으로 적용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각 기업별 공제금액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해당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5, 2014.3.11.)에 의존하였으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16년 3월 2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조에 해당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 2월 5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도 가업상속공제가 인정되어 2개 이상의 가업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업영위기간	상속가액	공제순위	공제한도액	공제액
35년	100억원	1순위	500억원	100억원
15년	500억원	3순위	Min【(500억원-100억원-300억원), 200억원】	100억원
27년	300억원	2순위	Min【(500억원-100억원), 300억원】	300억원

이와 같이 가업영위기간이 다른 2개 이상의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전체한도금액인 500억원과 개별한도금액인 200억원, 300억원, 500억원을 감안해 가업 영위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참고사항) 가업상속공제액 개정연혁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의 가업계속영위기간	공제액	공제한도액
2007.12.31. 이전	5년 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	1억원
2008.1.1.~ 2008.12.31.	15년 이상	Max【①, ②】 ① 가업상속재산가액 × 20% ② 2억원(미달시 가업상속재산가액)	30억원
2009.1.1.~ 2011.12.31.	10년 이상~15년 미만	Max【①, ②】 ① 가업상속재산가액 × 40% ② 2억원(미달시 가업상속재산가액)	60억원
	15년 이상~20년 미만	Max【①, ②】 ① 가업상속재산가액 × 40% ② 2억원(미달시 가업상속재산가액)	80억원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의 가업계속영위기간	공제액	공제한도액
2009.1.1.~ 2011.12.31.	20년 이상	Max【①, ②】 ① 가업상속재산가액 × 40% ② 2억원(미달시 가업상속재산가액)	100억원
2012.1.1.~ 2013.12.31	10년 이상~15년 미만	Max【①, ②】 ① 가업상속재산가액 × 70% ② 2억원(미달시 가업상속재산가액)	100억원
	15년 이상~20년 미만	Max【①, ②】 ① 가업상속재산가액 × 70% ② 2억원(미달시 가업상속재산가액)	150억원
2012.1.1.~ 2013.12.31	20년 이상	Max【①, ②】 ① 가업상속재산가액 × 70% ② 2억원(미달시 가업상속재산가액)	300억원
2014.1.1. 이후	10년 이상~15년 미만	가업상속재산가액	200억원
	15년 이상~20년 미만	가업상속재산가액	300억원
	20년 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	500억원
2018.1.1. 이후	10년 이상~20년 미만	가업상속재산가액	2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가업상속재산가액	300억원
	30년 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	500억원

(2) 공제의 배제-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2017년 12월 19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중견기업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는 가업상속인의 상속세 납부능력요건을 따져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지 판단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효율적 전수와 활용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상속세로 인해 가업상속인이 가업을 성공적으로 유지·존속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다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중견기업의 상속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할 때 다른 상속재산이 없어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면 가업승계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견기업의 상속일 것

따라서 가업상속대상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납부능력 요건”을 적용받지 않게 되며,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은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만 적용하게 됩니다.

② 납부능력 기준요건 충족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게 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상속세 납부능력 기준충족 요건 = ① ≤ ②

①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가액(*)

②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 × 2

(*)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외의 상속재산으로서 해당 가업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고 해당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합니다.

(**)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 :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상속세 납부의무)에 따라 계산한 가업상속인이 납부하게 될 상속세액을 말합니다.

※ 납부능력요건의 이해

상속개시일 : 2021년 4월 4일

상속인 : 아들 A, 딸 B

상속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중견기업인 주식회사 중앙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은 50억원으로서 현재 가업승계 준비 중인 아들 A가 상속받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예금 70억원 중 30억원은 아들 A가, 나머지 40억원은 딸 B가 상속받는 것으로 합니다.
- ③ 딸 B는 상속 개시 전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 ④ 상속인의 채무 중 아들 A는 10억원, 딸 B는 10억원이 귀속됩니다.

상속개시 당시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상속세 납부능력요건의 해당여부는?

- 납부능력요건의 검토

① 중견기업의 상속일 것 : 여

② 납부능력요건 충족여부 : ㉠20억원 ≤ ㉡×2=약 41.6억원 → 여

㉠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가액 : a+b-c-d=20억원

a. 아들 A의 상속재산가액 : 가업주식가액 50억원 + 예금 30억원 = 80억원

b. 아들 A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 : 0원

c. 아들 A에게 귀속된 채무 : 10억원

d. 가업상속재산가액 : 50억원

㉡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 : 약 20.8억원

a. 상속세 과세가액 : 50억원+70억원+20억원-20억원=120억원

b. 상속세 과세표준 : 120억원-5억원(일괄공제)-2억원(금융재산 상속공제)=113억원

c. 상속세 산출세액 : 113억원×50%-4.6억원=51.9억원

d. 아들 A가 부담하는 상속세액 : 51.9억원×{93.5억원^(주1)×(70억원^(주2)/100억원^(주3))}
=163억원=약 20.8억원

(주1) 상속세 과세표준 -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 113억 - {20억원 -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93.5억원

(주2)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가액상당액 -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가액 : 70억원-0원=70억원

(주3) 상속세 과세가액-가산한 증여재산가액 : 120억원-20억원=100억원

∴ 아들A는 납부능력요건을 충족하여 기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1-3. 가업상속공제 사전요건

(1) 기업규모 및 업종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다음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이어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의 범위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 ①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③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중소기업의 범위

1. 기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영위 요건

2016년 12월 20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을 개정하여 2017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부분부터는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해당업종을 아래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신설하였으며, 이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대상 업종을 새롭게 다시 분류하였습니다.

[별표] <개정 2021. 10. 19.>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기업 해당 업종
가.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기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기업용 자산의 가액)
나. 광업(05~08)	광업 전체
다. 제조업(10~33)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라.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37~39)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마. 건설업(41~42)	건설업 전체
바. 도매 및 소매업(45~47)	도매 및 소매업 전체
사. 운수업(49~52)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아. 숙박 및 음식점업(55~56)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자. 정보통신업(58~63)	출판업(58)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은 제외한다.
	방송업(60)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기업 해당 업종
자. 정보통신업(58~63)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차.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사업시설 관리 및 조정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타. 임대업 : 부동산 제외(76)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파. 교육서비스업(85)	교육 서비스업(85) 중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원훈련학원(85669)
하.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90~9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너.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기업 해당 업종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희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은 제외한다)

가업 해당 업종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차.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거.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
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3. 매출액 및 독립성 기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요건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에서는 “중소기업기준”이라고 합니다) 이내일 것,
- ②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해야 할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부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 실질적인 독립성

매출액 기준 외에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아래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뿐 아니라 간접소유를 포함하며,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2020. 6. 9.>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2017. 12. 2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기준)

- ③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어느 한쪽(거주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다른 쪽(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1. 다른 쪽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어느 한쪽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그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항에서 “주주법인의주식소유 비율”이라 한다)
2.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미만을 어느 한쪽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 : 주주법인별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더한 비율
4. 어느 한쪽과 주주법인, 그리고 이들 사이의 하나 이상의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4. 자산총액 기준

자산총액은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중견기업의 범위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개시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이라고 규정하여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었으나, 세법개정시 이를 보완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것)
- ③ 상속개시일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

※ 중견기업의 범위

1. 기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영위 요건

2017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견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2017년 2월 7일 신설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합니다.

2. 독립성 기준

기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중소기업이 아니어야 하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을 준용한다.

-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임원
-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 그 개인의 친족

3. 매출액 기준

기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 기업규모 및 업종요건에 관련된 유권해석

- 기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서면-2019-상속증여-4227[상속증여세과-193], 2021.03.30.)
- 해당 사업체는 호텔업, 음식점업, 전시회장 및 컨벤션장 임대업을 겸업하는 회사임
 - 호텔업의 경우 객실 및 음식 제공, 음식점업의 경우 예식서비스와 음식을 제공, 컨벤션장 임대업의 경우 장소임대 및 음식을 제공함
 - 음식 수입이 아래와 같이 전체 수입의 70%가량 되므로 음식점업으로 보아 기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 되는지 여부
 - 기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주된 공급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업종을 판단해야되는 것임(서면-2020-상속증여-3944 [상속증여세과-951], 2020.12.3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제9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중견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 종속기업이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매출액 계산 시 종속기업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99[법령해석과-993], 2017.04.12.)

→ 중견기업의 상속개시일 전 3년간의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연결재무제표 대상이 되는 종속법인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규모의 확대에 따른 비중소기업인지 판단시 매출액은 관계기업 매출액을 합산하고, 내부거래 매출액을 제외하지 않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매출액은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1, 2017.07.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말하는 것임(법령해석재산-3959, 2016.07.29.)

• A기업과 B기업, C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A기업이 같은 영 별표2에 따라 B기업과 C기업을 각각 직접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음) A기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A기업과 B기업, C기업의 매출액을 모두 합한 관계기업 전체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이며, 관계기업간 내부거래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매출액에서 내부거래 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법령해석재산-2083, 2016.11.1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인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제조업 회사본부” 및 “비금융 지주회사”는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재산세과-157, 2011.03.14)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상속개시 전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그 외 기계장치 등의 자산만이 상속되는 경우에도 기업상속공제는 적용가능하다는 유권해석임(법령해석재산-3762, 2016.09.30.)

• 당사는 「농업·농촌기본법(現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돼지 생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음

- 당사가 생산한 돼지는 제품 매출로 인식하고, 외부에서 매입하여 판매 하는 돼지는 상품매출로 인식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평균제품매출의 비중은 15%이며 상품매출은 85% 정도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품매출은 축산업(012) 중 양돈업(01220)에 해당 하며, 상품매출은 도매 및 소매업 중 산동물도매업(46205)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에는 도소매(산동물)와 축산(양돈) 등으로 되어 있음

- 농업회사법인의 도소매업의 사업수입금액이 축산업보다 많은 경우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기업상속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주된 사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서면법규과-1260, 2014.12.0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인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운전학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상증, 재산세과-552, 2011.11.22.)

(2) 가업경영기간 요건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계속해서 가업을 경영해야 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해서 사실상 경영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2014년 2월 2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 재직요건을 완화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로 재직 후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피상속인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가업경영기간 요건과 관련한 유권해석 및 판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01.2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 설립 이후 계속하여 피상속인이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 피상속인이 쟁점가업의 운영기간의 60%를 초과하는 19년 11개월 이상을 금치산자가 아닌 정상인인 대표자로 가업에 종사한 이 건이 경우,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쟁점가업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10년 이상 계속 경영요건과 관련해 종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건과 같이 부득이하게 상속개시일 이전에 금치산자로 선고되거나 와병 등으로 인하여 가업 현장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결국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은 피상속인이 급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는 결과(“피상속인이 사망당시까지 와병 중에 있었다면 얼마동안의 와병기간을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의제할 것인지를 상증법상 명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첨언하였습니다)를 초래하게 되어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의 효과를 저하시키는 면도 간과하기 어렵다고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례 후 피상속인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불가피하게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1, 2014.11.14.)”이라고 유권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조심2013중0032, 2013.10.16.)

- 피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보유한 기간과는 무관하게 언제든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그 가업의 경영 또는 소유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아니한 주식의 증여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세제상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피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가업상속공제시 피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을 주식보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기간을 합하여 10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고, 법문언상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기간이 아니라 주식보유비율을 합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논리적·체계적 해석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 대해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하던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않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그 증여받은 주식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는 조세심판례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하던父의 지분이 50%이고 가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母의 지분이 50%인 경우로서 母의 지분을 부부간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여 父에게 전부 증여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父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父의 지분 100% 중 母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50%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서 실무상 주의를 요합니다.(조심2019서1956, 2019.07.11.)

- 가업을 경영하는 자(피상속인)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 또는 자녀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위의 조세심판례와 같은 의미의 유권해석으로서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극단적으로 상속 개시일이 임박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식의 상속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유권해석입니다.(법령해석재산-1443, 2015.10.01.)

- 피상속인이 같은 업종의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을 경영하다가 개인기업을 폐업하고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해당 법인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개인기업의 사업 영위기간은 법인기업의 사업 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법령해석재산-0600, 2016.12.30.)
-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가업을 운영하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계속하여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기업의 운영 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법령해석재산-0561, 2017.6.30.)
- 질의내용
 - 부친의 개인기업을 모친이 가업상속받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 공제를 받음
 - 위의 모친이 다시 10년 내에 사망하는 경우임
 - 위와 같이 가업상속공제 받은 모친이 10년 내 재 사망하여 그 자녀가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다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 사망하여 당해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가업승계를 1차 상속으로 인한 가업승계로 그 가업상속인인 모친의 사망으로 인한 가업승계를 2차 상속으로 인한 가업승계로 이해할 때, 피상속인인 부친이 10년간 영위한 가업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차 상속으로 인해 가업승계받은 기업은 그 1차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2차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즉 1차 상속개시일부터 2차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으로 10년 이상 가업의 영위 여부를 판단한다는 유권해석입니다.(재산세과-712, 2009.04.08.)
-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유상증자로 인해 주식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법령해석재산-2293, 2016.12.28.)

(3) 최대주주지분 요건

피상속인이 법인의 주주인 경우 피상속인은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해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최대주주 등”이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현재 세법인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쌍방특수관계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주식보유 요건은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가업영위기간의 계산은 주식보유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실제 가업을 운영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자의 자세한 범위는 이 책 뒤에서 설명할 “보론 :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대주주지분 요건과 관련한 유권해석 및 판례

-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서면-2020-상속증여-0595, 2020.05.26.)
 - 위의 유권해석은 예를 들어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법인의 사용인이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즉 지배주주 등과 임직원의 지분율을 합산 할 경우 10년간 계속하여 50%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그 사용인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분율 보유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의미임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 점, 가업의 승계는 경영승계와 함께 소유승계가 수반될 필요가 있으므로 상속인이 가업에 계속 종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식 등의 지분도 일정한 정도로 유지되어야 하는 점, 이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는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상속인이

본래 부담하였어야 할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는 제3항 제1호에서 기업상속의 피상속인 요건을, 제3항 제2호에서 기업상속의 상속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기업상속 재산가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해질 내용은 '기업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주식 등의 지분 보유비율 등과 같은 사항'이라고 할 것이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가목은 기업에 해당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등과 그 특수관계자가 최소한 보유하여야 할 주식 등의 지분 보유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7206 판결 참조), 그 문언을 넘어서 '기업상속 재산가액'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면서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10년 이상' 부분을 추가하여 명시한 취지는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는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는 기업의 요건과 기간 측면에서 일치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피고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 중 기업상속 재산가액을 한정하기 위하여 위 규정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은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본래 부담하였어야 할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상당 부분 탈법적인 기업상속공제 제도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탈법적인 기업상속 공제 제도의 이용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문언을 넘어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2020-누-52889, 2021.03.26, 국패, 진행중).

→ 위의 판례는 증여받아 10년이 안된 주식에 대해서는 기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바로 아래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이 난 사건(조심2019서1956, 2019.7.11.)을 취소한 것으로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7.11.26. 취득한 쟁점주식을 2017.6.10.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취득한 것이어서 피상속인의 쟁점주식 보유기간은 10년(약 9년 7개월)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보유한 기간과는 무관하게 언제든지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그 기업의

경영 또는 소유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아니한 주식의 증여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세제상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피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청구주장대로라면 극단적으로는 상속개시일 바로 전날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식의 상속에 대해서도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는 결론에 이름), (이하 생략)(조심2019서1956, 2019.7.11.).

-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발행주식 총수 및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계속 보유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상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발행주식 총수 및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서면-2017-상속증여-3473, 2018.03.02.)
- 비상장 중소기업이 상장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의 기업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후에는 100분의 30이상을 각각 보유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임(상증, 재산세과-432, 2011.09.20.)
 - 위의 유권해석은 비상장기업을 상장한 후 기업승계 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 적용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최대주주 등 지분을 보유요건은 비상장기업에 해당하는 기간은 50% 이상, 상장기업에 해당하는 기간은 30% 이상을 각각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따른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면 100분의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서면법규-1386, 2013.12.22.)
- 명의신탁된 것으로 확인된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재산세과-3185, 2008.10.08.).
 - 위의 유권해석은 최대주주 등의 지분 보유요건(50%, 상장 30%)은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의 지분이 작은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하여 같은 령 제15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재산세과-596, 2010.8.16.)
- 귀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甲법인의 근로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제6호 및 제2항·제3항 제1호에 따라 증여자인 대표이사 A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상속증여세과-314, 2014.08.20.)
-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의 발행주식총수의 50%(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30%)이상을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법령해석재산-0102, 2016.5.16.)
→ 위의 유권해석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중에 피상속인이 지분비율을 충족한 후 가업상속대상 법인이 규모가 초과되어 중소기업의 규모가 초과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을 졸업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의미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재산세과-510, 2010.7.14.)

(4) 피상속인 요건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등(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으로 재직하는 경우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① 전체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는 경우 : 법인의 경우, 설립일부터 상속이 개시되는 날까지 기간 중에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50%(상장법인 30%) 이상 되는 시점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을 통산하여 50%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또한 개인기업의 경우 전체 가업 영위기간 중 대표자로 등재된 기간이 50%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합니다(개인의 경우 대표자 변경시 폐업 후 다시 신규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신청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로 등재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는 경우 : 이는 전체 가업 영위기간 중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기간이 50% 미만인 경우를 보완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 ③ 전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는 후 상속인이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는 경우 : 평균수명의 증가와 늦은 가업승계로 인한 ceo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해서 계속 재직한다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 재직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법인가업에 대한 피상속인의 요건을 판단할 때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하던 기간의 범위 내에서 계산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란 최대주주 등 지분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가업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법인의 설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등 지분을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관리 및 운영에 참여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대표이사로 재직한다는 의미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전문경영인 등과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도 포함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과 가업요건 연관성〉

대표이사 재직요건	가업 요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의 의미)
①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재직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가업상속공제 가능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대표이사(개인은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업을 사망일까지 영위하여야 함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재직	
③ 가업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 재직(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재직한 경우로 한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경영”의 의미는 아님)한 기업이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 고령화 사회의 질병 등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 것임

※ 피상속인 요건과 관련한 유권해석사례

1. 가업영위 판단

- 신청인은 2006년 6월 26일 폐기물처리업체인 AAA(주)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
- 동 법인의 주주구성은 대표이사 □□□(父) 42.86%, ○○○(母) 28.57%, △△△(子) 28.57%로 되어 있음
- 신청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피상속인 요건에 해당되어 자(상속인 요건 해당)에게 가업상속을 준비 중에 있음
- 동 법인은 설립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여 왔는데, 주업종을 계속 유지하면서 신규 업종(컴퓨터 프로그램 개발관리업)을 추가하려고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함(서면-2017-상속증여-3054, 2021.03.31.)

2. 개인사업을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 판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 설립 이후 계속하여 피상속인이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3. 10년 이내 재차 가업상속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 부친의 개인기업을 모친이 가업상속받아 상속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음
- 위의 모친이 다시 10년내에 사망하는 경우임
- 위와 같이 가업상속공제 받은 모친이 10년내 재 사망하여 그 자녀가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다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 사망하여 당해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산-712, 2009.04.08.).
- 이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10년)을 판단함에 있어 1차 상속으로 승계받은 가업을 2차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기산일을 1차 상속개시일로부터 하여 2차상속개시일까지 기간으로 10년 이상 가업영위 여부를 판단한다는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 2010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을 개정하기 전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하던 가업의 상속이 이루어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그 당시 피상속인을 제외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이 사망하여 재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대상 가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업이란 종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가업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 조항에서 예외규정으로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라고 하여 종전에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하여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다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영위기간 합산 여부 등

- 본인은 화성시 ○○면 △△리 236-1 소재 ·식품(업종 : 제조 - 두부, 포장두부)회사로서 1985년 개업하였으며, 2009년에 같은 △△리 233-1 소재 ·식품 제2공장 증설하여 동일업종으로 개업하였음
- 위 2개 사업장은 한울타리 내에 소재하며, 동력사용 문제로 사업자번호를 다르게 등록하였으나, 실지 하나의 사업장임
- 본인의子是 ·식품 제2공장 소속이지만 본인을 도와 실지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음
-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음
 - ① 2013년에 ·식품 제2공장을 (주)·식품으로 법인전환 예정(대표이사는 본인)
 - ② 2015년에 (주)·식품에서 ·식품을 포괄양수도하여 인수
- 위의 향후 계획과 같이 법인전환한 후 2024년도에 상속을 가정할 때 상속법 제18조 제2항제1호 가목의 사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재산-427, 2012.11.28.)

5. 합병 후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본인(1948년생)은 A법인과 B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경영
- A법인은 1983년 설립하여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던 중 2007년말 계열사에 제조업을 양도하고 2008년 서비스업(경영상담)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함
- B법인은 1984년 도매업(무역)을 주된 업종으로 설립하여 조세특례 중소기업에 해당되었으나 2004·2005년 매출액 기준이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았다가 2006년부터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됨. 당 회사는 2009년 A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함
- 2009년 A법인은 B법인을 흡수합병하고, 현재 A법인의 주된 업종은 도매업(무역)임
- 사실관계가 이와 같은 경우 가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B법인을 A법인에 흡수합병하고 주된 업종을 합병 전 B법인의 주된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는 변경된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처음 공급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재산세과-755, 2010.10.14)
- 즉 법인 간 합병의 경우, 가업 영위기간은 이미 가업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합병하거나 주주구성이 동일한 기업 간의 합병으로 처음부터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기업 간의 합병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 개시일부터 기산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합병 후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6.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 기간의 기산일 적용방법(인적분할)

- ○○기계(주)는 1975.3월 제조업과 부동산임대를 하는 법인으로 설립하였음 (수입금액 비율, 제조업 : 임대업 = 90 : 10)
- 2002.11월 □□(주)로 법인명 변경, 제조 및 부동산임대업 영위
- 2002.12월 법인 분할하여 제조업 영위법인 ○○기계(주)를 설립하여 업종 분할함
- 위와 같은 ○○기계(주)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업상속” 적용시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계산함에 있어 1975년 3월부터 기산하는지 법인분할 시점인 2002년 12월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조업부문을 인적분할한 경우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재산-951, 2009.05.15.)

→ 위와 같이 종전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을 분할한 후 분할 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게 되면 기업 영위기간을 통산하지만, 분할 전 법인이 가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규모요건 등)에서 분할함으로써 가업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분할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10년 이상 가업의 영위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7. 합병으로 인한 법인전환

-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30년간 직접 경영하다가 법인과 합병하여 존속하는 합병법인의 대주주로 되었고 존속회사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하여 같은 업종을 5년 동안 직접 경영에도 참여하다가 상속이 개시되면서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 개인사업자로서 종업원과 합병법인의 종업원 숫자 등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기준 미달로 중소기업에 해당함
- 위와 같은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직접 계속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그 법인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과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경영하던 기업이 통합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임(재산세과-3784, 2008.11.14.)

8. 기타의 유권해석

-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제조 및 도매업을 중단하고 물류창고 운영업으로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은 해당 기업이 주된 업종을 변경한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기산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업종으로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27, 2015.10.28.)
-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유상증자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93, 2016.12.2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제1호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기업의 종전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 신규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사실상 폐업하지 아니하고 이전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업종의 변경 여부는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종전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 신규로 사업을 영위한 것인지 또는 사업장이전인지 여부는 종전사업장과 신규사업장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재산세과-301, 2012.08.2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영위한 사업기간은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재산상속46014-1752, 1999.09.2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의 영위기간은 피상속인이 같은 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가업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사전답변 법규재산2013-432, 2014.01.22.)
-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모두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서면-2017-상속증여-2401, 2018.04.11.)

(5) 상속인 요건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및 상속개시일 전 가업종사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함이란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직접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상속인의 가업종사 기간을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18-15-8).

다만, ①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피상속인이 65세를 넘어 사망한 경우라도 ② 천재지변, 화재 등 인재로 인한 사망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업종사 기간이 2년 미만이어도 예외적으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가업에 종사하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 사이에 상속인이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 등을 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2) 공동상속의 허용

2016년 2월 5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상속인 1인이 가업을 전부 상속”해야 하는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종전에는 상속인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을 것(「민법」상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은 제외)을 요건으로 하고 있었으나, 2016년 2월 5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가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기업별 상속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다수의 상속인 중 다른 상속인요건을 충족한 상속인들이 1개의 기업을 공동으로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임원 및 대표이사 등 취임요건

상속인 및 그 배우자는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대표자 포함)로 취임하여야 합니다.

4)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

2014년 2월 2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위 상속인의 요건을 그 상속인의 배우자(피상속인의 사위, 며느리)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는 법인사업자에 한정해서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여부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합니다)의 사망으로 다시 가업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최대주주 중 1인이 사망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다면 그 후 다른 최대주주 중 1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다시 사망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다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데, 현재 공동상속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공동상속인이 순차로 사망했을 때 그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중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모두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냐에 대해서 과세당국에서 법령개정 또는 유권해석 등으로 명확히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상속인 요건과 관련한 유권해석사례

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한 경우

- 질의자는 부산에 소재한 개인 종합병원의 병원장임
- 질의자가 사망할 경우 현재 병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정상속인(처와 자녀) 5명이 각자 법정상속분만큼 상속하고 자녀 1인의 배우자(질의자의 사위)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상속인들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병원을 운영할 예정
- 상속인의 배우자(사위)가 병원을 운영할 경우 해당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하던 개인기업을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속인의 배우자가 해당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상속증여-2401, 2019.03.05.)
- 과세당국은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는 경우 상속인이 그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는 특례규정은 법인사업자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여부에 대한 판단

- 000(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84.2.4.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000(이하 “가업기업”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경영하던 중 2014.8.29. 사망
- 공동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000), 아들(이하 “000”이라 한다), 딸(000) 등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000이 가업기업의 주식을 단독으로 상속받는데 합의하고, 2015.1.30. 처분청에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회신이 없자, 2015.3.2. 일단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를 신고한 후, 2015.7.20.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기

신고한 상속세를 감액하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9.30.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2016.6.3.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이하 “쟁점의결”이라 한다)을 거쳐 2016.11.29. 인용(감액·결정)함

- 감사원은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상속인의 사전가업종사 요건(상속개시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재차 부과하라고 2018.7.13. 처분청에 시정요구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9.3.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000을 경정·고지함
- 개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공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고,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재차 상속세를 부과한 이견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18-서-4591, 2020.01.13, 취소)

3. 2개 이상의 가업을 가업별 공동상속 또는 단독상속하고 공동대표 또는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 피상속인이 3개의 독립된 기업을 영위하다가 사망하여 기업별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식 등을 공동상속 또는 단독상속하고 해당 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3개 기업의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제하는 것임
-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80, 2017.10.12.)

4. 2년 이상 가업 종사 요건을 판단할 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친은 63세로 중소기업 법인을 27년간 대표이사로써 운영하던 중 2015년 6월 업무 차 해외 출장 중 병명을 알 수 없는 사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본인이 사업체를 승계하고자 함
- 본인은 현재 27세로 대학 3년 수료 중 군복무를 위해 휴학하고 2015년 5월 만기 제대 후 다시 복학하여 재학 중에 있음 종전 종사기간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 상증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병역의무, 질병요양 등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고 있는데, 본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임(서면-2015-상속증여-1078, 2015.07.16)

→ 2014년 2월 2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나목이 개정됨에 따라 종사기간의 통산을 인정함과 동시에 예외규정도 확대하여 ① 피상속인이 60세(2016년 2월 5일 시행령 개정 전 내용으로 2016년 2월 5일 이후 상속분부터는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②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종사기간이 없더라도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 이상 직접 가업 종사요건”을 판단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예외를 인정하지만, 그 사유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던 중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 사이에 발생한 것이 아닌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입니다.

5. 가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재분할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배우자 단독소유로 재등기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은 2012년 3월 1일, 상속세 신고기한은 2012년 9월 30일로 아직 상속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임
- 2012년 5월 2일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상의 상속비율대로 공동상속(배우자 및 자녀 3명) 등기를 완료하였고, 가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도 상속인 4인의 공동소유로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음
-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기업은 상속세법상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으로 10년 이상 운영)으로 지금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현재 그 배우자가 직접 운영하고 있음
-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가목·나목에서 정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요건(상속인 1인이 해당 기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대표이사 등 취임)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 3명의 공동명의로 기 상속등기 완료된 토지와 건물(기업용자산)에 대하여 상속인간 재협의분할을 통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 단독 소유로 재등기하는 경우 가업에 사용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때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하여 등기된 사업용 부동산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1인 단독명의로 재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의 배우자 1명이 사업용 부동산을 전부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자산세과-309, 2012.08.30.)

6. 가업상속재산 중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 A회사는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이며 주주 구성은 父 4,000주, 子1 2,000주, 子2 1,000주, 母 3,000주를 보유하고 있음
- 상기의 父와 子1은 현재 A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증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
- 父의 유언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A회사 주식 4,000주 중 3,500주는 가업승계자인 子1에 유증하고 500주는 설립할 재단법인(공익법인, 장학재단 등)에 유증하기로 함
-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상속인 1명이 해당 기업의 전부를 상속받아..”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은 4,000주 중 몇 주인지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는 중소기업 주식 중 일부를 같은 법 제16조의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남은 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남은 주식 전부를 상속인 1인이 상속받은 때에는 해당 기업 전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임(자산세과-730, 2010.10.06.)

7. 공동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 질의법인은 부친이 1971.10월 설립하여 1989.2월 법인전환하였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임
- 부친이 2000년 하반기 뇌출혈로 쓰러진 후에 2001.1.3. 이후 4명의 자녀 중 자녀1은 대표이사로, 자녀2는 등기임원인 공장장으로 재직함
-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경우 유언공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이 상속되고, 자녀2는 상속세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공동(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임

구분	2016.12월		유언공증 내용		비고
	소유주식수	지분율(%)	소유주식수	지분율(%)	
부친	364,560	98.50	-	-	18세 이상
자녀1	2,720	0.75	167,698	46.00	
자녀2	2,720	0.75	123,950	34.00	
자녀3	-	-	36,456	10.00	
자녀4	-	-	36,456	10.00	
합계	370,000	100.00	370,000	100.00	

(*) 가업상속공제의 '가업' 요건과 '피상속인' 요건은 모두 충족함을 전제함

→ 자녀1이 부친의 질병으로 상속개시 전 가업기업의 대표이사에 재직하던 중 부친으로부터 가업기업을 자녀2와 공동상속을 받은 후에 자녀2가 공동(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자녀1과 자녀2가 상속받은 가업재산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 것이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들이 1개의 기업을 공동상속받고 공동(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또는 가업재산을 상속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라고 유권해석(법령해석재산-1278, 2018.10.16.)하여 공동상속 후 대표이사 취임은 공동이나 각자대표이사 취임의 형식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8. 가업상속공제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 여부에 대한 판단

- [갑]법인의 대표이사였던 피상속인(2009.1. 사망)이 사망하자 2009.1.말경 전무(타인)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되고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정정도 된 이후에, 가업상속인(상속인이 부인과 딸2명임)인 부인이 부사장으로 업무결재를 하다가 2009.7경 대외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기존 대표이사를 그대로 두면서 공동대표이사로 선임이 되고 공동대표이사로 업무결재를 하여왔으나, 동 공동대표등기는 지연하였고 사업자등록도 공동대표로 정정되지 않음

- 상종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는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표이사 취임”을 이사회에서 선임되고 그에 따른 승낙이 있으면 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는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재산-166, 2010.03.18.)

→ 참고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로 종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없지만 피상속인의 기업을 상속받아 상속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자를 변경한 후 상속인이 대표자로 등재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9.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업)을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 분할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

- 처분청은 이 건과 같이 상속재산 협의분할 과정에서 현금이 지급된 경우 기업의 전부를 상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한 사업에 대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일정액을 공제받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그동안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용대상, 공제대상금액 및 한도액 등이 변경되어 온 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다목은 ‘상속인 1명이 해당 기업의 전부를 상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공동상속인들과의 개별적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가업상속재산의 전부를 취득(000주)의 주식(동명세서상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이 발행주식 전체를 보유하고 있다)하여, 결과적으로 기업의 전부를 상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공동상속인들에게 현금 지급을 이유로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부인한다면, 피상속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유사한 가치가 있는 현금부동산 등의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협의분할로 상속인 중 1명은 주식(가업상속재산)을, 나머지 상속인들은 현금부동산 등을 상속할 수 있게 되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게 되고, 만약 이 건과 같이 피상속인이 주식(가업상속재산)외에 특별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피상속인이 직접 유언을 하지 않는 이상 애당초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당초에는 기업을 전부 상속하였다가 공동상속인들간의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등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기업을 전부 상속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2호가 개정되어 이후부터는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될 재산은 이를 상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청구인이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다른 상속인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마치고 가업상속에 필요한 주식을 전부 취득한 후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2부0934, 2014.3.18.)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특정 상속인이 나머지 상속인에게 그 대가로 본인 소유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2014년 2월 21일 청구인이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마치고 가업상속에 필요한 주식을 전부 취득한 후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음

10. 기타의 유권해석

• 피상속인이 보유한 차명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고함으로써 상속인 1명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기업의 전부를 상속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법규과-909, 2014.08.22.)

• 2016.2.5. 이후 상속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2이상의 기업 전부를 승계받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 1인이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속증여-3616, 2016.05.17.).

- “상속인의 기업종사여부”는 전적으로 기업에만 종사한 경우 뿐 아니라 겸업의 경우에도 그 기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상속인이 기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에 해석해야 할 것임(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832, 2015.04.16.)
-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기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로 취임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1개 기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자 승계지분에 대해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서면- 2017-상속증여-2203[상속증여세과-198], 2018.02.21.)
-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기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로 취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개 기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자 승계지분에 대해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 2016.07.29.).
- 기업상속공제의 취지가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세제상 지원하기 위함에 있기 때문에 비록 상속개시일 2년 전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확인되지는 않지만, 근로소득으로 매월 일정금액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기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관련학원을 수강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조심 2001부 1761, 2011.11.2.)

(참고사항) 기업상속공제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구분	2014.02.20. 이전	2014.02.21. 이후	2016.2.5. 이후
피상속인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 ② 피상속인이 기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로 재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 ② 기업영위기간 중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이 다음 중 어느 하나 ㉠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하는 경우로 한정)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 ② 기업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상장법인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③ 기업영위기간 중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이 다음 중 어느 하나 ㉠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 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 개시일 까지 계속 재직하는 경우로 한정)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요건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②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기업에 종사 ③ ①과 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기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② 상속개시일 2년 이상 직접 기업에 종사 ③ 상속인 1명이 해당 기업의 전부를 상속받음(유류분상속 재산은 제외) ④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기업에 종사 ③ (삭제) ④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

(*) 2017년 2월 7일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기업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에서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기업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명확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 기업상속공제 적용의 효과

A사의 100%주주인 甲씨가 사망 후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와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상속세 부담액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이를 위하여 甲씨의 상속재산 및 甲씨가 대주주로 있는 A사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의 현황	A사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A사 비상장주식 : 300억원 강남소재아파트 : 30억원 현금성자산 : 2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주주 : 甲(100%) 기업영위기간 : 50년 업종 : 자동차부품제조업 자산총액(세법상) : 500억 사업무관자산 : 50억원(*) (*) 대여금 20억원, 주식 30억원

기업상속공제 적용여부에 따른 상속세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업상속공제 미적용	기업상속공제 적용	비고
I. 상속재산	350억원	350억원	총 상속재산가액
II. 기업상속공제	-	270억원	(주1)
III. 이외의 상속공제	10억원	10억원	배우자 및 일괄공제
IV. 상속세 과세표준	340억원	50억원	
V. 상속세 산출세액	165.4억원	20.4억원	5단계 초과누진세율
VI. 세액공제	4.962억원	0.612억원	신고세액공제
VII. 상속세 납부할세액	160.438억원	19.788억원	

(주1) 기업상속공제액 = Min[①, ②]=270억원
 ①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가액(300억원)×(1-10%(사업무관자산가액비율))=270억원
 ② 기업영위기간 30년 한도(500억원)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상속공제의 적용여부에 따라 상속세 납부세액이 140.65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차이는 기업상속공제의 적용여부에 있으며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을 경우 납부세액인 약 160억원은 보유하고 있는 강남의 아파트 및 현금성자산으로는 납부가 어려워 상속받은 A사 주식까지 처분하여 납부할 세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납부세액인 약 20억원은 상속받은 현금성자산만으로 납부가 가능하게 되어 상속받은 A사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4. 기업상속공제 사후요건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 이내(2019년 12월 31일 이전 상속은 10년)에 정당한 사유없이 ①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② 가업용 자산을 유지하지 않거나 ③ 상속받은 지분을 유지하지 않거나 ④ 고용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은 사후요건을 위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에 기간별 추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재계산 후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사후관리 위반과 관련해서는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2016년 12월 31일 이전의 상속개시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2016년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일정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2018년 1월 1일 이후 사후관리를 위반하게 되면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고용유지요건 위반시에는 해당 사업연도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업상속공제가 추징되는 경우〉

사유	내용
1.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된 경우	①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③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이나 휴업(무실적 포함), 폐업하는 경우
2.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이상을 처분한 경우	① 가업용 자산가액 가. 소득세법 적용받는 가업 : 기업상속재산 나. 법인세법 적용받는 가업 : 기업 법인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② 가업용 자산 중 처분(임대)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③ 처분비율 = ②/①
3.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음의 사유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거나 최대주주에서 제외된 경우 ①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②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③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시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사유	내용
4. 고용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p>다음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p> <p>①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기준고용인원)의 80%에 미달하는 경우</p> <p>②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각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기준총급여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p>
	<p>다음 ③과 ④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p> <p>③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p> <p>④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p>

(1) 가업종사요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2019년 12월 31일 이전은 10년)이상 가업에 종사(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해야 합니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의 범위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란 사실상 가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① 상속인(또는 그 배우자)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
- ② 가업의 주된 업종(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둘 중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합니다)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업종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더불어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및 기존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도 허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업종변경에 대한 이 개정내용은 개정 후 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에 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 ③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참고사항) 2020년 시행령 개정 전 업종 유지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가업의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2014년 2월 2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세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업종변경으로 보지 않았으며, 그 이전에는 관련 해석(재산세과-773, 2010.10.19.외 다수)에서 세세분류까지만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2월 5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이를 재차 완화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업종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와 함께 상속개시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세분류내 업종의 매출액이 매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30%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2)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정당한 사유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봅니다.

- ①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②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 ③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종료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 사례: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 판단

생수생산을 영위하던 법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은 후 매출감소에 따른 사업다각화를 위해 주류면허를 취득한 후 맥주제조를 주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하나요?

관련 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분류는 다음과 같음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업종	제조업	11. 음료제조업	111. 알콜음료제조업	1111. 발효주제조업	11112. 맥아 및 맥주제조업
			112. 비알콜음료 및 얼음제조업	1120. 비알콜음료 및 얼음제조업	11202. 생수 생산업

(1) 2013년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관련유권해석(재산-331, 2012.09.17.)에 따라 세세분류까지 동일해야 하므로 “생수 생산업”에서 “맥아 및 맥주제조업”으로의 변경은 주된 업종 변경에 해당하므로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됨

(2) 2014년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시행령 개정으로 세분류까지만 동일하면 되지만, “비알콜음료 및 얼음제조업”과 “발효주제조업”의 세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역시 주된 업종변경에 해당하여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됩니다.

(3) 2016년 이후에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시행령의 재개정으로 소분류내에서의 변경은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나, “비알콜음료 및 얼음제조업”과 “알콜음료제조업”의 소분류가 다르므로 역시 주된 업종변경에 해당하여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됩니다.

(4) 2020년 이후에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시행령의 재개정으로 중분류내에서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동 개정의 취지는 사후관리기간이 비교적 장기(7년)라는 점과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의 가능성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사항) 주된 업종의 변경에 해당되는 않는 경우 개정연혁

2013.12.31. 이전	2014.1.1. 이후	2016.2.5.~2020.2.10.	2020.2.11. 이후
세세분류가 동일해야 함 (재산-773, 2010.10.19.)	세세분류 → 세분류 내 서 업종변경	소분류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세 분류 매출액이 사업연도 말 전체 매출의 30% 이상 인 경우	- 중분류 내에서 변경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후 중분류 외 변경도 가능

※ 기업중사 요건과 관련한 유권해석사례

1. 상속인이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단지 19일 늦게 하였을 때 기업상속공제 요건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7.5.15. 사망한 000의 배우자이자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이 000소재에서 화물선 운수업 등을 영위하였던 000의 재산가액 000을 기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세과세표준 000원으로 하여 2017.5.15.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음
- 기업상속인 000은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이 되는 2019.11.30.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어야 하나 그 기한이 경과한 2019.12.19.에서야 등재되었을 경우 기업상속공제 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상속인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이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기업상속인 000은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이 되는 2019.11.30.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어야 하나 그 기한이 경과한 2019.12.19.에서야 등재된 점, 000의 법인등기부등본상 000의 대표이사 취임일이 2019.11.29.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기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21광2692, 2021.07.12, 기각)

2.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업종변경 사례

- 거주자 갑은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A를 운영하다가 사망함
- 거주자 갑과 내국법인 A는 기업영위기간, 업종 등 상증법에 따라 기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함
- 내국법인은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 건설업체에 창호·샤시를 제조 납품(제조업)하거나 창호를 설치하는 공사업무(건설업)를 함께 영위함
- 내국법인 A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매출비중이 50 : 50 정도인데, 거래처의 수요(단순가공 납품의 요청 또는 설치공사의 요청 등)에 따라 건설업과 제조업의 매출액 비중이 변동하고 있음
- 내국법인 A의 매출이 상속개시 당시에는 건설업 비중이 6 : 4로 높다가 그 다음 해에는 제조업이 6 : 4로 높아질 경우에 이것이 위 “기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것인지 여부
- 기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기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기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 때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재산-270, 2012.07.24.)
- 기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서면-2017-상속증여-1891, 2018.10.30. 같은 의미)
- 기업상속공제의 취지는 원활한 세대 이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유지, 고유 기술 및 노하우의 계승·발전, 영속기업으로의 성장과 장수기업의 토대를 육성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활력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10(현재는 7년)년간 동일업종을 유지하도록

사후관리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2이상인 경우 주된 업종이란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가업승계의 취지인 기업의 영속성장의 측면에서 보면 업종의 다각화, 업종의 구조조정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자의적인 구조조정 등이 원인이 아닌 외부환경의 변화, 즉 업황의 좋고 나쁨으로 인한 수입금액 변동이 발생하여 주된 업종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에는 너무 가혹한 사후관리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회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주된 업종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유권해석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3.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폐업이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 위반에 따른 추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망 김△△(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1975. 00. 00.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AAA을 가업으로 경영하다가 2011. 00. 00. 사망
-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피상속인 소유의 AAA 주식 60,000주 등을 상속
- 원고들은 2012. 00. 00.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2,500,000,000원으로, 그 중 AAA 주식 60,000주의 가액을 2,000,000,000원으로 각 평가하고, AAA 주식 60,000주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여 산정한 상속세를 신고·납부
- 국세청장은 2016. 00. 00.부터 2016. 00. 00.까지 BBB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던 중, AAA이 2014. 00. 00. 폐업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00. 00.원고들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858,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300,000,000원을 경정·고지
- 청구인이 가업승계 후 쟁점법인이 2년 2개월만에 폐업되었으므로 가업승계의 증여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법령 등에 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른 폐업을 '정당한 사유'나 '부득이한 사유'로 열거하지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시하였음(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27, 2017.12.12.)
-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 위반에 따른 추징의 예외사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것이어야 하므로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폐업이라 하여도 추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4. 물적분할의 경우 주된 업종변경

- 회사는 A업종과 B업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으며 매출액 비중은 A업종 2, B업종 1의 비율임
- 회사의 대표이사는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자(32세)에게 주식의 30%를 증여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함
- 회사는 증여 이후 B업종을 물적분할하고 대표이사가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는 관계회사C와 합병하려고 함. 관계회사 C의 현 대표이사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동일하며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
- 관계회사C는 B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는 분할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임
- A업종과 B업종을 물적분할하고 B업종을 관계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주된 업종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개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사업별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5항 제2호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재산-92, 2011.02.23.)
- 위 사례는 증여세과세특례와 관련된 사례이지만 가업상속공제의 사후요건인 “주된업종 변경금지” 요건과 같은 사후관리요건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추징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자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임
- 질의자는 상속개시일 전에 MBA에 합격하여 2018년 9월에 국외 유학을 갈 예정임
- 대표이사 취임 후 MBA 학업 중에는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MBA 학업 완료 후 가업에 종사할 예정임
- MBA 공부를 위해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8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취학은

국외 학교에 취학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나, 그 국외 학교의 성격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만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취학상 형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서면-2018-상속증여-1912, 2018.08.07.)

6. 기타의 심판결정례 및 유권해석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6개월 만에 폐업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법령에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폐업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 2017구-1237, 2017.06.12.)
 -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1년 이상 휴업(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 경우 사후 관리 요건 미충족사유에 해당하며, 사업용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는 사후관리 예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63, 2017.02.28.)
- 하지만, 동 유권해석 이후 조세심판례에서는 같은 내용에 대해 “리모델링 공사가 가업의 확대·승계 발전을 위한 ‘영업준비’의 일환으로 영업활동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며 “해당 공사 기간 등은 휴업신고 없이 건설중인 자산관리 등 통상적인 업무관리 활동의 일정 수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판시하였으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제3호의 ‘실적’의 의미는 문헌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매출실적, 매입실적, 손익실적 등을 참작해 해당 가업의 ‘사업실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없이 ‘매출실적’으로만 한정해서 축소해석하면 안된다는 의미의 심판례입니다(조심2018서0804).
-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제조 및 도매업을 중단하고 물류창고 운영업으로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은 해당 기업이 주된 업종을 변경한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기산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업종으로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법령해석재산-0227, 2015.10.28.)
 -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주된 업종의 변경에 해당하는 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상속증여-4914, 2016.09.30.)

(2) 가업용자산 유지요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2019년 12월 31일 이전은 10년)에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에 10%) 이상을 처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는 공제받은 금액에 자산처분비율과 기간별 추정율을 곱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또한 자산처분비율을 산정할 때 여러 번에 걸쳐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처분한 자산의 가액은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① 가업용 자산

여기서 가업용자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가업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가업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업유형	가업용 자산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 자산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가업	상속재산 중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 제외)

② 가업용자산을 7년 이내에 20%(5년 이내에는 10%) 이상 처분했는지 여부

또한 가업용자산을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20%(5년 이내에는 10%) 이상 처분했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총 가업용 자산가액 중 처분한 가업용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판단하고, 처분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text{가업용자산 처분비율} = \frac{\text{처분(임대)한 가업용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text{전체 가업용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③ 가업용자산을 7년 이내에 20%(5년 이내에는 10%) 이상 처분했을 때 추정방법

해당 가업용자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20%(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text{상속세 부과액} = \text{가업상속공제액} \times \text{자산처분비율} \times \text{기간별 추정율}$$

여기서 자산처분비율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업용자산의 가액으로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나, 여러 번에 걸쳐 처분할 때에는 최초의 처분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다음 또다시 처분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 처분한 자산의 가액은 제외하고 산정하며, 기간별 추정율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5년 미만은 100%, 5년 이상 7년 미만은 80%를 적용하게 됩니다. 즉,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을 위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후 또다시 위반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 종전에 처분한 자산의 가액은 제외하고 자산처분비율을 산정한다는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자산처분요건 위반여부의 구체적 사례

-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제조업체를 2021년에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시 공장에 대하여 가업 상속공제를 받았습니다.
- 가업용자산의 현황 및 상속개시일(2021년 4월 4일) 현재의 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공장 1의 토지 및 건물가액 : 50억원
 - ㉡ 공장 2의 토지 및 건물가액 : 30억원
 - ㉢ 공장 3의 토지 및 건물가액 : 20억원
- ① 1차 처분 : 2021년 12월 31일 위 가업용자산 중 ㉠의 토지 및 건물을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처분하였습니다.
 - a. ㉡ 공장 2의 토지 및 건물처분시 자산처분비율 : 30억원/100억원 = 30%
 - 5년 내 자산의 10%를 초과하여 처분하였으므로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 b. 추정할 경우 처분비율 : 최초 처분이므로 a와 동일
 - c.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 가업상속공제액 100억원 × 자산처분비율 30% × 기간별추정율 100% = 30억원
- ② 2차 처분 : 2027년 12월 31일 위 가업용자산 중 ㉢의 토지 및 건물을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처분하였습니다.
 - a. ㉢ 공장 3의 토지 및 건물처분시 자산처분비율 : 50억원(*)/100억원 = 50%
 - (*) 20% 또는 10% 이상 처분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초 처분가액 30억원과 재차 처분가액 20억원을 합한 누계액 기준 50억원으로 판단합니다.
 - 7년 내 자산의 20%를 초과하는 50%를 처분하였으므로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 b. 재차 처분시 처분비율 : 20억원/100억원 = 20%
 - c.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 가업상속공제액 100억원 × 자산처분비율 20% × 기간별추정율 80% = 16억원

다만,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① '가업용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후 처분한 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사용하는 경우(*)
 - (*) 여기서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란,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상속증여-3357, 2020.04.21.).
- ②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③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④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⑤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경우
- ⑥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변경된 업종을 영위하는 가업의 영위를 위하여 자산을 대체취득한 후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⑦ 가업용 자산의 처분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2020년 2월 11일 시행령 개정 이전에 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 가업용 자산유지 요건과 관련한 유권해석사례

1. 가업상속재산이 수용되는 경우 대체취득 기준

- 가업용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었음
- 동일한 자산을 대체 취득할 때 상속당시 자산가액만큼 취득해야 하는지 또는 현재 시세만큼 취득해야하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상속증여-3357, 2020.04.21.)
 - 위 사례는 가업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 자산유지요건의 예외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상증법

시행령에서는 이 뿐만 아니라 시설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자산과 동종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처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을 이전하고 기타 투자를 마무리하여도 현금성 자산이 발생할 것으로 쉽게 예상이 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재산-140, 2011. 3. 17.외 다수)에서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상속세 추징대상으로 하였으나 대체 취득 후 남은 현금성 자산을 회사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가업승계의 취지인 가업의 영속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는 현재 국가의 목표인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수도권 과밀억제와 지방경제 활성화에 반하는 유권해석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신규투자 및 사업확장 등 사업계획수립에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됩니다.

2. 가업상속재산을 현물출자 등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자산유지조건 위반 여부

- 개인기업체를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현물출자 또는 포괄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가업상속공제금액을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의 법인전환은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상증령 제15조 제5항)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은 소유재산의 형태가 개별적인 자산·부채에서 주식으로 대체된 것이므로, 단순한 가업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보아 상속세를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563, 2007.12.31.)

3. 가업용자산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제조업체(개인)을 2010년에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시 공장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음

- 이후 공장의 면적이 부족하여 가업상속 받은 공장의 빈 토지위에 공장건물을 새로 신축하고 신축건물의 일부는 공장에서 사용하고 일부는 건축비를 충당하고자 임대를 생각하고 있음

- 위 신축건물의 일부 임대가 상증령 제15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임대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시 임대인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계산방법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의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가업용 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며, 가업용 자산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건물 신축에 사용된 면적의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의 가액에 신축건물의 연면적에서 임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업용 자산 중 처분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을 적용하는 것임(재산세과-163, 2011.3.30.)

→ 상이 질의를 계산사례로 살펴보면,

- 가업상속자산의 가액 : 토지 1,000원, 건물 300원

- 토지면적 : 1,000㎡, 이 중 건물 외 면적 500㎡(가액은 500원)

- 건물 외 면적인 500㎡에 공장건물을 상속개시 후 3년만에 신축(신축건물 연면적 1,000㎡ 중 200㎡ 임대)

① 가업용 자산 중 건물신축에 사용된 토지면적(500㎡)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 : 500원

② 신축건물의 연면적 : 1,000㎡

③ 임대면적 : 200㎡

④ 가업용 자산 중 처분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 500원×200㎡÷1,000㎡=100원

⑤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 : 100원÷1,300원=7.69%

∴ 처분비율이 5년 10% 미만이므로 사후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4. 가업용 자산을 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학원(개인사업체)을 2005년 甲이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2006년 주식회사 CC학원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학원의 사업을 주식회사 CC학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날에 주식회사 CC학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음

- 이후 2006. 12. 31. 학원의 폐업신고를 하고,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함

- 이와 같이 가업용 자산을 가업인 학원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 배제되어 추징되는 것인지?

→ 상속받은 학원업 중 가업용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법인에 양도하면서 동 가업용 자산을 해당 법인에 임대한 것의 실질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가업을 학원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분할한 것으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부산지방법원2013구합20944, 2013.10.25., 국승)

5. 가업용 자산을 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학원(개인사업체)을 2005년 甲이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2006년 주식회사 CC학원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학원의 사업을 주식회사 CC학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날에 주식회사 CC학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음

- 이후 2006. 12. 31. 학원의 폐업신고를 하고,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함

- 이와 같이 가업용 자산을 가업인 학원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 배제되어 추징되는 것인지?.

→ 상속받은 학원업 중 가업용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법인에 양도하면서 동 가업용 자산을 해당 법인에 임대한 것의 실질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가업을 학원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분할한 것으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부산지방법원2013구합20944, 2013.10.25, 국승)

6. 기타의 심판결정례 및 유권해석

-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처분 즉시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상속증여세과-518, 2019.06.12, 상속증여세과-426, 2019.05.21. 동일내용)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업 전부를 유지·승계할 것을 전제로 가업용 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가업상속공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추징하는 경우로서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을 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등 다른 사업에 전용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상속받은 학원업 중 가업용 자산(쟁점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법인에 양도하면서 동 가업용 자산(쟁점부동산)을 해당 법인에 임대한 것의 실질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가업을 학원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분할하고, 위 가업용 자산을 가업인 학원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전환한 것에 상당하므로 이는 감면세액 추징대상인 가업상속재산을 가업에 사용하지 하지 않고 처분(임대)한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고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13부1082, 2013.06.2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용 자산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을 말하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가업용 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임(상속증여-5693, 2016.11.21.)

- 가업법인이 A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B사업장을 취득하였으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고 A, B사업장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재산가액의 20%이상(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에 해당하는 A사업장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서면-2017-상속증여-1649[상속증여세과-882], 2017.08.10.).

- 공장의 이전 과정에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개시일에는 신공장으로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공장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신공장으로 이전 후 같은 종류의 가업에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구공장을 처분한 것은 추징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임(적부-국세청-2017-0146, 2018.03.07.)

(3) 지분유지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2019년 12월 31일 이전은 10년) 이상 상속받은 주식지분을 유지(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상속인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여야 함)하여야 합니다.

1) 지분이 감소된 경우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란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2019년 12월 31일 이전은 10년) 이내에 주식의 처분 등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①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②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단위 : 주)

주주	관계	가업상속 후		유상증자 (100,000주)	증자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A	상속인	50,000	50%	(*)30,000	80,000	40%
B	친족	25,000	25%	35,000	60,000	30%
C	기타	25,000	25%	35,000	60,000	30%
합계		100,000	100%	100,000	200,000	100%

(*) 원래 유상증자에 50,000주를 참여해야 하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 40%인 20,000주를 실권한 후 B, C주주에게 재배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③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가 안 되는 경우(*)

(단위 : 주)

주주	관계	가업상속 후		유상증자 (100,000주)	증자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A	상속인	40,000	40%	40,000	80,000	40%
B	친족	15,000	15%	0	15,000	7.5%
C	기타	45,000	45%	60,000	105,000	(*)52.5%
합계		100,000	100%	100,000	200,000	100%

(*) 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인 B의 실권 후 실권된 주식이 C에게 재배정된 후 최대주주가 A와 B에서 기타주주인 C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2)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정당한 사유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분이 감소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①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어야 합니다.
- ②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이어야 합니다.
- ③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④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 ⑥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 ⑦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 지분유지 요건과 관련한 유권해석사례

1.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A법인은 1982년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되었으며, 2017년말 현재 갑(이하 "피상속인")가 76%, 을(이하 "상속인" 또는 "신청인"이라 함)이 18%, 기타주주가 6% 지분을 보유함
- 2018.2.12.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동일자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신청인은 피상속인 소유 A법인의 지분 전체(76%)를 가업상속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가업상속공제를 적용(공제액 **, ****백만원)받아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함
- 상속 후 신청인은 기존 지분 18%와 가업상속받은 지분 76%를 합한 94%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
- 상속인이 가업으로 상속받은 주식이 아닌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사후 추정요건인 상속세및증여세법§18⑥(1)다목의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9.12.31. 이전 상속분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30, 2020.11.30.)

2. 기업상속공제 받은 후 합병으로 상속인의 지분 감소 시 기업상속공제액 추징 여부

- 2012.9.6. (주)순순순순(이하 "가업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이하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가업법인 주식을 상속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따른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음

(*) ♠♠♠ 당초지분 20%, 상속지분 60%, 상속 후 지분 80%

- 2018.10.25. 가업법인은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관계회사인 ♥♥♥(이하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고 합병계약을 체결함

- 합병 전·후 주주현황 및 지분율

회사명 주주명	합병 전				합병 후	
	가업법인		피합병법인		합병법인(가업법인)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	16,000	80	22,500	22.5	16,954	69.9
♥♥♥	2,000	10	54,000	54	4,290	17.7
순순순	2,000	10	23,500	23.5	2,996	12.4
합계	20,000	100	100,000	100	24,240	100

- 기업상속공제 받은 후 합병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기업상속공제액 추징 여부는?

(*) 합병 이후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함을 전제함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업상속공제를 받은 이후 가업법인의 합병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51, 2019.05.31.)

3. 기업상속공제 이후 균등 무상감자시 상속세 추징여부 등

- 질의인은 2016년 5월 15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기업상속공제 (59억원)*를 신청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됨을 전제로 질의

- 기업회사는 자본잠식 상태로 추후 균등 무상감자를 고려하고 있음

- 기업상속공제 후 회사의 자본잠식으로 균등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업상속공제를 추징하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균등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017-법령해석재산-0323, 2018.6.21.)

→ 이후, 세법 개정시 지분이 감소해도 추징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3호 바목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가 추가되어 2019년 2월 12일 이후 감자하는 분부터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4. 기업상속 후 균등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상속세 추징사유 해당 여부

- 상속인은 피상속인인 부친으로부터 비상장주식 9,500주, 평가액 1,167백만원을 상속받고, 기업상속공제 817백만원을 신청하여 상속세 납부세액 396백만원을 신고하였음

- 기업상속 받은 법인의 자본금의 주식수를 2대1로 감자하여 사업용고정자산에 비해 과대한 자본금을 줄여 상속세 납부 재원에 활용하고자 함

- 총 발행주식 수를 10,000주에서 5,000주로 줄이기 때문에 본인의 지분 95%는 그대로 유지됨

- 본인의 감소된 주식 수 4,750주에 대해 1주당 122,848원으로 평가하여 총 583백만원을 지급받아 상속세 납부에 활용하고자 함

- 상속인의 지분감소가 없는 균등 유상감자가 상증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과 상증령 제15조 제10항에 규정한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포함되어 상속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원래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받은 주식 등의 처분에는 균등 유상감자를 포함하는 것임(서면법규-959, 2013.09.05)

→ 위 사례의 경우 감사 전과 감사 후의 지분율의 변화가 없고, 감자는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현금수수액을 상속세납부에 사용하기 위해서이기는 하지만, 기업상속공제의 취지 및 실질상 주식을 처분한 대가로 현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5. 균등 유상감자를 통해 상속인의 지분율이 유지되는 경우에 지분유지요건의 충족여부

(1) 과세관청의 입장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원래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받은 주식 등의 처분에는 균등 유상감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서면법규과-959, 2013.09.05.외 다수)”라고 해석하여 사후관리 여건을 위배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조세심판원의 입장

조세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추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선 ‘지분’이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공유자 각자의 지분 비율을 의미하므로 균등유상감자와 같이 유상감자하였다도 청구인의 지분율이 유지되었다면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조심2017부5161, 2018.03.26.)”이라고 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 기업상속공제 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상속인은 부친이 사망하여 망인이 보유한 기업주식 전체를 상속받아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음
 -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주식은 상증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0항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속인은 기업주식을 상속받기 전에 본 기업이 적용되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서 기업에 종사할 예정임
 - 상속인이 기업으로 상속받은 주식이 아닌 상속인이 이전부터 소유하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상증법 제18조 제5항의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이며,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594, 2010.08.16)도 참고하시기 바람(재산-24, 2011.01.12.)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기업을 승계받기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8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재산-594, 2010.08.16.)

→ 지분감소 요건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부터 상속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입니다. 다만,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을 계속 유지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7.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기업상속공제 추정 여부(이혼으로 인한 지분 이전 사례)

- 甲은 상속인으로서 '13년 11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A법인 비상장주식을 상속받고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
 - 甲은 '16년 12월 법원의 이혼조정결정에 따라 甲이 보유중이던 A법인 비상장주식을 '17년 12월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법률상 이혼
 - 법원의 이혼조정결정에 따라 배우자에게 이전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 기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3호에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서면-2018-상속증여-1631, 2019.04.29.)

8. 기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상속인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 해당 여부(자기주식 처분 사례)

- 회사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지분은 자기주식을 포함하면 14.86%, 자기주식을 제외하면 16.08%임
- 상속 후 회사의 자기주식을 일부 처분한다면 지분율은 자기주식을 포함하면 14.86%, 자기주식을 제외하면 15.08%로 감소하게 됨
- 지분감소 여부 판정 시 발행주식총수에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따른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0항의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의 지분을 판단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법규-763, 2014.07.18.)

9. 기업상속공제 후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 2008년 父의 사망으로 00교통(주) 주식 7,000주 중 2,800주를 본인이 상속받아 기업상속공제를 받았음
- 그러나 택시업계의 경영난으로 인해 00교통(주)와 xx운수(주)를 xx운수(주)로 1:2(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라) 통합하고, 00교통(주)는 청산하고자 함
- 합병절차가 복잡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에 따라 정리하고자 함
- 위와같은 경우 기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요건 중 합병, 분할 등 조직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상속세신고시 적용한 기업상속공제가 추징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따라 기업상속에 대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따라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해당 자산의 포괄적 양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1호 라목과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가목의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것임(재산-186, 2012.05.16.)

10.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 여부

-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등을 상속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주식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령해석과-1058, 2016.3.30.)
- 하지만, 세법 개정시 지분이 감소해도 추징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3호 사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가 추가되어 2019년 2월 12일 이후 감자·출자전환하는 분부터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1. 기업상속공제 받은 후 전환사채 발행 및 전환으로 상속인의 지분 감소 시 기업상속공제액 추징 여부

- 2014.8.29.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질의법인주식을 모두 상속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따른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납부함
- 질의법인은 사업확장(공장증축 및 기계장치 구매 등 시설투자) 목적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함
- (*) 전환사채는 최대주주(상속인) 및 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배정하는 조건이며, 전환사채의 인수인이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함을 전제함
- 사업확장 등에 따라 기업법인이 상속인 및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전환사채의 인수인이 전환권을 행사함에 따라 상속인의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기업상속공제 추징 여부
-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업상속공제를 받은 이후 기업법인이 사업확장을 위하여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전환사채 인수인의 권리 행사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3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6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018-법령해석재산-2115, 2018.10.12.)

(4) 근로자 수(고용인원) 유지 요건과 총급여액 유지 요건의 선택 적용

가업승계의 조세지원은 단지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여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을 육성하며, 고용을 창출하는 등 국가경제에 이익이 되고자 하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 고용인원의 수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고용유지요건을, 임금상승이나 비경상적인 경기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독일의 경우를 benchmarking하여 고용인원에게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였고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2019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할 때 기업이 경제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의무와 관련된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 개정 전에는 정규직 근로자 인원수 유지요건만을 적용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정규직 근로자수 유지 뿐 아니라 총급여액 유지 기준을 신설하여 둘 중 가업승계기업이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이 개정규정 역시 2019년 12월 31일 법 개정 이전에 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1) 근로자 수(고용인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① 매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고용인원이 기준고용인원의 80% 이상이어야 하고(각 사업연도 근로자 수 유지 요건), ② 7년간(2019년 12월 31일 이전 상속은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의 전체 평균고용인원이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도 동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누적평균 근로자 수 유지 요건).

즉, 근로자 수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기간별 추정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 ① 각 사업연도 근로자 수 유지 요건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연도말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100%, 5년 이상 7년 미만인 경우 80% 적용
- ② 누적평균 근로자 수 유지 요건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100%, 5년 이상 7년 미만인 경우 80% 적용

또한, 종전에는 위 ②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었지만 고용유지요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80%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준고용인원도 종전에는 상속개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수에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수의 평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구분	종전 규정	개정 규정
사후관리 대상기간	• 상속개시 사업연도 말부터 7(10)년 평균	• 상속개시 사업연도 말부터 7(10)년 평균 • 2014년 이후 각 사업연도말(매년)
기준고용 인원	• 상속개시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수	• 상속개시 사업연도 직전 2개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수의 평균

여기에 2019년 2월 12일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가업상속 후 합병·분할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업법인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감소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도록 규정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를 합리화하였습니다.

- 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가업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 분할에 따라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봅니다.
- ②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가업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봅니다.

더불어 2019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할 때 “정규직 근로자”의 판단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7년간 평균 고용유지 요건을 ‘정규직 근로자수의 전체 평균고용인원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로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완화하였습니다.

※ 용어의 정리

정규직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기준고용인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평균 고용인원

$$= \frac{\text{직전 사업연도 평균인원} + \text{직전 전 사업연도 평균인원}}{2}$$

각 사업연도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고용인원

$$= \frac{\text{각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text{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적용사례 : 근로자유지 요건 중 근로자수 요건을 선택하여 적용받는 경우

〈질의사항〉

중소기업이고 2021년도에 상속(사망일 : 2021년 6월 24일)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사후적으로 정규직근로자 유지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사례별로 상속세가 얼마나 추징되니까?

〈조건〉

- 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로서 비정규직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가정
- 사후관리 요건 중 근로자유지요건 외 다른 요건 충족함
- 2019년도 평균고용인원 : 95명
- 2020년도 평균고용인원 : 105명
- 기준고용인원 : (95명+105명)/2 = 100명
- 평균고용인원은 각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

- 사례별 사후관리기간 동안의 평균고용인원

〈사례1〉

사업연도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평균고용인원(명)	101	110	105	95	95	101	95

〈사례2〉

사업연도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평균고용인원(명)	101	110	105	95	95	81	90

〈사례3〉

사업연도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평균고용인원(명)	101	100	105	82	102	106	79

〈해설〉

사례1 : 정규직근로자 유지기간이 7년 이상 충족하므로 가업상속공제받은 것에 대한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사례2 : 정규직근로자 유지기간이 5년 이상 7년 미만으로 가업상속공제받은 것에 대한 상속세가 80% 추징됩니다.

사례3 : 정규직근로자 유지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으로 가업상속공제받은 것에 대한 상속세가 100% 추징됩니다.

사후요건	사례1	사례2	사례3
① 각사업연도별 평균고용인원이 기준고용인원의 80% 이상 유지기간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해당 일까지의 기간	7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7년 미만
② 사후관리기간 경과 후 전체 평균고용인원이 100% 유지기간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7년 이상	5년 이상 6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고용유지기간 Min(①,②)	7년 이상	5년 이상 6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사례1〉

사업연도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평균고용인원(명)	101	110	105	95	95	101	95
기준고용인원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101.0%	110.0%	105.0%	95.0%	95.0%	101.0%	95.0%

구분	1년누적	2년누적	3년누적	4년누적	5년누적	6년누적	7년누적
평균고용인원합계	101	211	316	411	506	607	702
누적연수	1	2	3	4	5	6	7
누적평균고용인원	101.00	105.50	105.33	102.75	101.20	101.17	100.29
기준고용인원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101.0%	105.5%	105.3%	102.8%	101.2%	101.2%	100.3%

〈사례2〉

사업연도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평균고용인원(명)	101	110	105	95	95	81	90
기준고용인원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101.0%	110.0%	105.0%	95.0%	95.0%	81.0%	90.0%

구분	1년누적	2년누적	3년누적	4년누적	5년누적	6년누적	7년누적
평균고용인원합계	101	211	316	411	506	587	677
누적연수	1	2	3	4	5	6	7
누적평균고용인원	101.00	105.50	105.33	102.75	101.20	97.83	96.71
기준고용인원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101.0%	105.5%	105.3%	102.8%	101.2%	97.8%	96.7%

〈사례3〉

사업연도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평균고용인원(명)	101	100	105	82	102	106	79
기준고용인원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101.0%	100%	105%	82.0%	102.0%	106.0%	79.0%

구분	1년누적	2년누적	3년누적	4년누적	5년누적	6년누적	7년누적
평균고용인원합계	101	201	306	388	490	596	675
누적연수	1	2	3	4	5	6	7
누적평균고용인원	101.00	100.50	102.00	97.00	98.00	99.33	96.43
기준고용인원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101.0%	100.5%	102.0%	97.0%	98.0%	99.33%	96.4%

2) 총급여액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① 매년 말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이 기준총급여액의 80% 이상이어야 하고(각 사업연도 총급여액 유지 요건), ② 7년간(2019년 12월 31일 이전 상속은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전체평균이 기준총급여액의 100%(중견기업도 동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누적평균 총급여액 유지 요건).

즉, 총급여액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기간별 추정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① 각 사업연도 총급여액 유지 요건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매년 지급한 총급여액이 기준총급여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연도말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100%, 5년 이상 7년 미만인 경우 80%를 적용

② 누적평균 총급여액 유지 요건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 총급여액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100%, 5년 이상 7년 미만인 경우 80% 적용

이는 2019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할 때 도입된 제도로써, 위에서 설명한 정규직 근로자의 인원수 유지요건 외에 총급여액 유지 기준을 선택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된 사후관리기간의 완화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하지만, 총급여액 유지 요건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종전에 비해 선택의 폭이 넓어진 점은 사실이나, 무턱대고 총급여액 요건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선택 전 우선 과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에게 지급된 총급여액을 확인하여 '기준총급여액'을 산정한 다음, 지나간 사후관리 경과기간동안 매년 80% 이상인지 여부와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평균을 확인하기 위해 매 사업연도 총급여액을 소급하여 확인한 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의 '1) 근로자 수(고용인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서 설명한 합병·분할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업법인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감소 여부를 판단할 때의 규정은 총급여액 유지 요건에도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가업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 분할에 따라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봅니다.

- ② 기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기업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봅니다.

※ 용어의 정리

기준총급여액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에게 지급된 총급여액의 평균

$$= \frac{\text{직전 사업연도 총급여액} + \text{직전 전 사업연도 총급여액}}{2}$$

총급여액

정규직 근로자에 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최대주주 등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를 제외하지만, 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 최대주주등과 그 친족인 근로자만이 있을 경우에는 포함합니다.

(*) 임금의 합계액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급여와 상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 「국세기본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적용사례 : 근로자유지 요건 중 총급여액 요건을 선택하여 적용받는 경우

〈질의사항〉

중소기업이고 2021년도에 상속(사망일 : 2021년 6월 24일)이 개시되어 기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사후적으로 정규직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사례별로 상속세가 얼마나 추징되니까?

〈조건〉

- 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로서 비정규직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가정
- 사후관리 요건 중 근로자유지요건 외 다른 요건 충족함
- 2019년도 총급여액 : 9.5억원
- 2020년도 총급여액 : 10.5억원
- 기준 총급여액 : (9.5억원+10.5억원)/2 = 10억원
- 사례별 사후관리기간 동안의 총급여액

〈사례1〉

사업연도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급여액(억원)	10.1	11.0	10.5	9.5	9.5	10.1	9.5

〈사례2〉

사업연도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급여액(억원)	10.1	11.0	10.5	9.5	9.5	8.1	9.0

〈사례3〉

사업연도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급여액(억원)	10.1	10.0	10.5	8.2	10.2	10.6	7.9

〈해설〉

사례1 : 총급여액 유지기간이 7년 이상 충족하므로 기업상속공제받은 것에 대한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사례2 : 총급여액 유지기간이 5년 이상 7년 미만으로 기업상속공제받은 것에 대한 상속세가 80% 추징됩니다.

사례3 : 총급여액 유지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으로 기업상속공제받은 것에 대한 상속세가 100% 추징됩니다.

사후요건	사례1	사례2	사례3
① 각사업연도별 총급여액이 기준총급여액의 80% 이상 유지기간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해당 일까지의 기간	7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7년 미만
② 사후관리기간 경과 후 전체 총급여액 평균 100% 유지기간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의 100%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7년 이상	5년 이상 6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고용유지기간 Min(①,②)	7년 이상	5년 이상 6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사례1〉

사업연도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급여액(억원)	10.1	11.0	10.5	9.5	9.5	10.1	9.5
기준총급여액(억원)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101.0%	110.0%	105.0%	95.0%	95.0%	101.0%	95.0%

구분	1년누적	2년누적	3년누적	4년누적	5년누적	6년누적	7년누적
총급여액합계(억원)	10.1	21.1	31.6	41.1	50.6	60.7	70.2
누적연수	1	2	3	4	5	6	7
누적평균 총급여액(억원)	10.1	10.55	10.53	10.28	10.12	10.12	10.03
기준총급여액(억원)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101.0%	105.5%	105.3%	102.8%	101.2%	101.2%	100.3%

〈사례2〉

사업연도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급여액(억원)	10.1	11.0	10.5	9.5	9.5	8.1	9.0
기준총급여액(억원)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101.0%	110.0%	105.0%	95.0%	95.0%	81.0%	90.0%

구분	1년누적	2년누적	3년누적	4년누적	5년누적	6년누적	7년누적
총급여액합계(억원)	10.1	21.1	31.6	41.1	50.6	58.7	67.7
누적연수	1	2	3	4	5	6	7
누적평균 총급여액(억원)	10.1	10.55	10.53	10.28	10.12	9.78	9.67
기준총급여액(억원)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101.0%	105.5%	105.3%	102.8%	101.2%	97.8%	96.7%

〈사례3〉

사업연도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급여액(억원)	10.1	10.0	10.5	8.2	10.2	10.6	7.9
기준총급여액(억원)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101.0%	100%	105%	82.0%	102.0%	106.0%	79.0%

구분	1년누적	2년누적	3년누적	4년누적	5년누적	6년누적	7년누적
총급여액합계(억원)	10.1	20.1	30.6	38.8	49.0	59.6	67.5
누적연수	1	2	3	4	5	6	7
누적평균 총급여액(억원)	10.1	10.05	10.20	9.70	9.80	9.93	9.64
기준총급여액(억원)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101.0%	100.5%	102.0%	97.0%	98.0%	99.33%	96.4%

※ 총급여액 유지기준의 선택적용으로 인한 고용유지요건 정리

위 본문에서는 고용유지 요건과 총급여액유지 요건을 기준으로 설명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각 사업연도의 고용유지 요건(근로자수 요건 및 총급여액 요건)과 누적평균 고용유지요건(근로자수 요건 및 총급여액 요건)으로 각각 구분하여 이해해도 좋습니다.

(1) 각사업연도의 고용 유지 요건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7년간 각 사업연도마다 다음의 고용 유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봅니다.

구분	근로자수 요건	총급여액 요건
내용	각 사업연도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이 기준총급여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누적평균 고용 유지 요건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7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다음의 고용 유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봅니다.

구분	근로자수 요건	총급여액 요건
내용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7년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7년간 정규직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 여기서 7년을 적용할 때 2019년 12월 31일 이전 상속은 10년으로 합니다.

(유의사항) 누적 평균 고용유지 요건을 매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 누적 평균 고용유지 요건 미달여부를 판단할 때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또는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및 기준총급여액의 각각 100%에 한번이라도 미달하게 되면 상속세가 추징되는 것인지 여부
 - 2014년 2월 21일 세법개정 이전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이후 매년 말 현재 100%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기간 종료 후 각 연도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계를 사후관리기간으로 나눈 평균액을 기준으로 미달 여부를 판단하였으므로(재산-51, 2012.02.10.) 사후관리기간 후에만 요건을 충족시키면 추징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존재하여 왔으나,
 - 2014년 2월 21일 세법개정 이후부터는 누적 고용유지 요건을 위배하는 경우에 추징율을 산정할 때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또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까지를 사후관리 준수기간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상증령 제15조 제15항 제1호 다목), 누적 평균 고용유지 요건을 판단할 때에도 매년말 현재 기준고용인원 및 기준총급여액의 미달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근로자유지 요건과 관련한 유권해석사례

- 가업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가업법인의 정규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법령해석재산-2053, 2021.09.3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에서 '정규직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3항 각호에 열거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상속증여-2317, 2020.08.27.)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 개정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이상인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임(상속증여-1611, 2020.07.29.)
- 가업법인이 가업상속공제 후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가업법인의 기준고용인원은 합병으로 가업법인이 승계한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상속증여-2918, 2020.06.29.)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를 적용함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 수는 동 합병 이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법령해석재산-2133, 2020.05.21.)
-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상속증여-0200, 2020.05.26.)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라목, 마목에 따른 고용유지 요건은 위반 사유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상속증여-1345, 2020.04.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의 기준고용인원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수'의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정규직근로자 수'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3항 각호에 열거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서면-2017-상속증여-1707, 2020.02.28.)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의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정규직근로자 수'에는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하는 것입니다(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90, 2019.06.18.)
- 쟁점외국인근로자들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한시적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로 보이며, 쟁점외국인근로자들을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분하여 기준고용인원을 산정하면 청구인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므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조심2017중0872, 2017.08.10.)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①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함)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하거나 ②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에 위반 사유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상속증여-2819, 2016.02.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14.1.1.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에 따라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상속증여-4559, 2016.08.24.)
→ 위 해석은 상속개시일이 법 개정전인 2014년 1월 1일 이전인 해석으로서, 법 개정전 상속분도 매년 기준고용인원의 80%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임
-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 고용비율 계산방법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서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및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산정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임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는 가업상속공제 금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1항에 따른 기간별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상속개시일이 2014년 6월 1일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 마목 적용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은 “2014년 6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에 해당하는 것임(법령해석재산-0005, 2016.5.13.)

- 가업상속공제 후의 고용유지 요건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며 인적 분할한 경우에도 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적격여부에 관계없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근로자 수를 합하여 계산(상속증여-0307, 2018.03.26.)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①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함)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하거나 ②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 위반 사유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상속증여-2819, 2016.02.17.)

(5) 사후요건 위반과 상속세 과세 및 이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요건을 위반하면 공제받은 가업상속공제액에 대해선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한편 사후관리 기간이 7년(2019년 12월 31일 이전 상속은 10년)으로 비교적 장기간이므로 유지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상속세 전액을 추징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내에 각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5년(2019년 12월 31일 이전 상속은 7년) 이상 유지한 경우 그 유지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간별 추징율을 차등 적용하여 추징세액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상속인은 그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각 사업연도 고용유지요건, 누적평균고용유지요건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말일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납부하기 이전에 사후관리 위반으로 세무서장 등이 먼저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후요건 유지기간별 추징율

유지기간	기간별 추징율
5년 미만	100%
5년 이상 7년 미만	80%
7년 이상	사후관리 종료

■ 2019년 12월 31일 이전 사후요건 유지기간별 추징율

유지기간	기간별 추징율
7년 미만	100%
7년 이상 8년 미만	90%
8년 이상 9년 미만	80%
9년 이상 10년 미만	70%
10년 이상	사후관리 종료

■ 사후요건별 유지기간

유지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위반일까지의 기간으로 사후요건별 유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업용자산 : 상속개시일부터 해당사유발생일(가업용 자산을 20%(10%) 이상 처분한 날)까지의 기간
- 가업종사 : 상속개시일부터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날까지의 기간
- 지분유지 :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지분이 감소한 날까지의 기간
- 고용유지
 - 각사업연도별 평균고용인원(또는 총급여액)이 기준고용인원(또는 기준총급여액)의 80% 이상 유지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위반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 사후관리기간 경과 후 전체 평균고용인원(또는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100% 이상 유지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또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이 기준고용인원(또는 기준총급여액)의 100%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6) 이자상당액 가산

가업상속공제 후 7년(2019년 12월 31일 이전 10년)간 사후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합니다.

$$\text{이자상당액} = \text{①} \times \text{②} \times \text{③}$$

- ①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 결정세액
- ② 사후관리 위반일수
- ③ 이자율(2021년 3월 16일 이후 1천분의 12÷365)

※ 유권해석사례

• 가업상속공제 추정사유 발생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정사유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가업상속공제 추정사유 발생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0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정사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또는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정사유 신고·납부기한까지 해당 추정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기준-2021-법령해석기본-0015, 2021.02.22.)

(참고사항) 가업승계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주식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단,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일정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 요건은 미적용)
-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1-5. 탈세 및 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2019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시에 기업인의 준법경영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탈세 및 회계부정 등 불성실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조세법처벌법」 제3조 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른 행위(**)(상속개시일 10년 전부터 사후관리 기간까지의 행위에 한정합니다)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 탈세 : 포탈세액 및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고 합니다)이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회계부정 :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

구분	효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형이 확정된 경우(공제를 적용하기 전)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금액으로 당초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이자상당액과 함께 신고·납부

1-6. 가업상속공제재산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상속 단계에서 과도한 상속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의 제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2014년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공제율을 70%에서 100%로, 공제한도도 종전 최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의 세대 간 이전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하여 과세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종전까지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중 증가된 재산의 가치에 대해서는 상속세만 과세되고, 상속인이 그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간주취득가액(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었지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재산의 경우 상속개시 시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얻은 자본이득이 과세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을 공제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이에 상당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추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금액과의 차이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지만,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받아 양도하는 분부터는 피상속인의 취득금액과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과의 차액부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7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으로 공제받았던 상속세가 추징되는데 이 때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기업상속공제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되 그에 따른 증가된 양도소득세를 상속세 추징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1) 기업상속공제 적용 재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제도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① 피상속인의 취득가액×해당 자산가액 중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기업상속공제적용률)(주1)
- ② 상속개시일 현재 양도자산의 자산가액×(1-기업상속공제적용률)

$$(주1) \text{ 기업상속공제적용률} = \frac{\text{기업상속공제금액}}{\text{기업상속재산가액}}$$

또한 여기서 유의할 점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후관리기간 뿐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기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 양도차익 계산사례

〈사례1〉

개인사업자인 중앙산업의 대표자인 피상속인 갑은 2021년 4월 4일 4시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갑은 중앙산업을 20년 이상 영위하였으며 상속인인 을은 가업을 상속받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습니다.

을은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자마자 기업상속재산 중 일부의 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

1. 양도자산의 현황

- 피상속인의 취득일 : 2001년 1월 1일

- 취득금액 : 50억원
-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 : 100억원
- 상속인의 양도일자 및 양도가액 : 2031년 10월 31일, 양도가액 150억원

2. 기업상속공제 현황

- 기업상속공제액 및 기업상속재산가액 : 300억원으로 동일(전액 공제)

3. 기업상속공제적용률

- 기업상속공제적용률 : 300억원÷300억원=100%

4. 양도차익 계산

- 양도가액 : 150억원
- 취득가액 : ①+②=50억원
 - ① 50억원(피상속인의 취득가액)×100%(기업상속공제적용률)=50억원
 - ② 100억원(상속개시일 현재 양도자산의 자산가액)×(1-100%(기업상속공제적용률))=0원
- 양도차익 : 150억원(양도가액)-50억원(취득가액)=100억원

〈사례2〉

개인사업자인 중앙산업의 대표자인 피상속인 갑은 2021년 4월 4일 4시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갑은 중앙산업을 20년 이상 영위하였으며 상속인인 을은 가업을 상속받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습니다.

을은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자마자 기업상속재산 중 일부의 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

1. 양도자산의 현황

- 피상속인의 취득일 : 2001년 1월 1일
- 취득금액 : 50억원
-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 : 100억원
- 상속인의 양도일자 및 양도가액 : 2031년 10월 31일, 양도가액 150억원

2. 기업상속공제 현황

- 기업상속공제액 : 300억원
- 기업상속재산가액 : 500억원

3. 기업상속공제적용률

- 기업상속공제적용률 : 300억원÷500억원=60%

4. 양도차익 계산

- 양도가액 : 150억원

- 취득가액 : ①+②=70억원

① 50억원(피상속인의 취득가액)×60%(가업상속공제적용률)=30억원

② 100억원(상속개시일 현재 양도자산의 자산가액)×(1-60%(가업상속공제적용률))=40억원

- 양도차익 : 150억원(양도가액)-70억원(취득가액)=80억원

(2) 사후관리 기간 안에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가 추징되었을 때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재산을 7년(2019년 12월 31일 이전은 10년) 이내에 20%(5년 이내에 10%) 이상을 처분하거나, 7년 이내(2019년 12월 31일 이전은 10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여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세의 추징문제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즉,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면 “가업상속공제재산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가 그 의미를 잃게 되기 때문에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재산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 단서)제도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에서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해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뺀 금액에 해당 기간별 추징율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즉, 현행 세법에서는 이미 신고 된 소득세를 수정하지 않고 상속세 추징시점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봅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빼는 양도소득세 상당액 =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액 -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소득세액) × 사후관리 위반시 적용된 기간별 추징율

- ①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액이란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에서 취득가액(㉠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적용받은 가업상속공제적용율 + ㉡ 상속개시일 현재 자산가액 × (1- 가업상속공제적용율))을 빼서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말합니다.
- ②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소득세액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후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말합니다.

③ 사후관리 위반시 적용된 기간별 추징율을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

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추징율	100%	80%	사후관리 종료

㉡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

기간	7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추징율	100%	80%	90%	70%	사후관리 종료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관련한 유권해석사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차감되는 양도소득세 상당액 범위 등

(사실관계)

- '15.6월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후 상속세를 신고하였음
- 이후 '19년 말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고용유지)하였고, '20년 초 사업용 고정자산도 양도하였음

(질의내용)

-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이자상당액 계산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고 이자상당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 이자상당액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지 여부(이자상당액 계산이 신설된 17.1.1.이후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후관리를 위반한 이후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상속세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사후관리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상속증여-2259, 2020.09.01.)

※ 상속세 추가고지세액 계산사례

법인사업자인 중앙산업의 대표자인 피상속인 갑은 2021년 4월 4일 4시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갑은 주식회사 중앙을 20년 이상 영위하였으며 상속인인 을은 주식 20,000주(100%)를 상속받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습니다.

을은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28년 3월(6년 11개월만) 중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습니다.

1. 상속세 결정현황

- 총상속재산가액 : 가업주식 20억원(1주당 100,000원), 기타자산 30억원
- 상속세과세가액 : 총상속재산가액과 동일
- 상속공제 :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가업상속공제 20억원
- 과세표준 : 20억원
- 산출세액 : 6억 4천만원
- 신고세액공제 : 19.2백만원
- 차가감납부세액 : 6억 2천 8십만원

2. 가업주식 현황

- 2001년 1월 1일 설립(피상속인 100% 취득가정, 1주당 5,000원)
- 상속개시일 현재 1주당 가액 : 100,000원
- 사업무관자산 : 없음
- 가업상속공제적용율 : 100%(가업상속공제율=가업상속재산가액)
- 가업주식 양도현황 : 2028년 3월 14일 20,000주 전부를 150,000원에 양도

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세액계산

- 양도가액 : 30억원
- 취득가액 : ①+②=1억원
 - ①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20,000주×5,000원)×100%(가업상속공제율)=1억원
 - ② 상속개시일 현재가액 : (20,000주×100,000원)×(1-100%(가업상속공제율))=0
- 양도차익 : 29억원
- 산출세액 : 2억 9천만원(세율 10%)

4. 가업주식 처분으로 인한 상속세액 계산

- 과세가액 산입액 : 16억원(사후요건 유지기간별 추정율 80% 적용)
- 상속세 과세가액 : 46억원

- 상속공제액 : 가업상속공제액을 제외한 10억원
- 과세표준 : 36억원
- 산출세액 : 13억 4천만원
- 이월과세 취소로 인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빼는 양도소득세 상당액
: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액 -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소득세액) × 사후관리 위반시 적용된 기간별 추정율 = (①-②)×③=1억 5천 2백만원
 - ①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액 : 2억 9천만원
 - ②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소득세액
 - 양도가액 : 20,000주×100,000원=30억원
 - 취득가액 : 20,000주×100,000원=20억원
 - 양도차익 : 10억원
 - 산출세액 : 1억원(세율 10%)
 - ③ 기간별 추정율 : 80%(5년 이상 7년 미만에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80%만큼 추정)
- 신고세액공제 : 19.2백만원(당초 신고했을 때의 신고세액공제 그대로 적용함)
- 기납부세액 : 6억 2천 8십만원
- 차가감 고지세액 : 5억 4천 8백만원
- (*) 13억 4천만원-1억 5천 2백만원-19.2백만원-6억 2천 8십만원=5억 4천 8백만원

1-7. 가업상속공제의 신청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 가업상속재산 명세서
- 가업용 자산 명세
-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법인 기업의 경우)
- 주식평가내역과 사업무관자산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법인 기업의 경우)
- 기타 상속인이 당해 기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정 여부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 또는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지 여부 등을 매년 관리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상속세를 추정합니다.

2.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기업 등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의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여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60세 이상인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등의 주식을 자녀가 증여받아 승계하면, 증여재산가액(최대 100억원)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20%)의 낮은 세율로 하여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관리로 7년 동안 승계를 받은 가업을 경영하였는지 매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게 됩니다.

한편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증여시한에 관한 규정이 2014년 1월 1일 세법을 개정할 때 삭제되었으므로 기한에 대한 제한 없이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가업을 2인 이상 승계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1인이 승계하는 경우와 총 조세부담이 동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당초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합산되는 장점이 있지만, 증여기간에 관계없이 추후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 설명할 증여세 과세특례는 향후 기업의 성장가능성, 기업의 규모 및 경영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서 적용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약〉

구분	내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8.1.1.이후 증여(증여세 과세가액 최대 100억원 한도) 받고 가업을 승계 받은 경우 (*) 기업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증법상 최대주주 등(기업승계 당시 해당주식 등의 증여자 및 해당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 제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제외 이를 적용할 때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 ㉠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동시 증여) :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 해당 주식 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부과 받은 경우(순차 증여) :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 등의 수증자로 보아 부과되는 증여세액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여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례 적용 불가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세율 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 20%) 적용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한 주식가액 × (1 - $\frac{\text{사업무관 자산 가액}}{\text{총 자산가액}}$)

2-1. 증여세 과세특례의 내용

(1)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기업승계를 목적으로 한 법인의 주식이 적용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자산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동업자 지분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님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아 기업을 승계하는 경우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개인이 동업자 중 1인으로서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여 기업을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수원지방법원2012구합5238, 2012.07.20.)

(2)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내용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9년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기업을 2인 이상이 승계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1인이 증여받는 경우와 2인 이상이 증여받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을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이 증여받는 경우

기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기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100억원을 초과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일반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액 : 10년간 5천만원)를 적용 후 10%~50%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text{기업자산상당액} = \text{증여한 주식가액} \times \left(1 - \frac{\text{사업무관자산가액}}{\text{법인의 총자산가액}} \right)$$

종전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증여가액은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가액 중 증여받은 주식가액 전부로 계산하였지만, 증여재산 중 기업과 관련된 사업용 자산에 한정하여 지원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하여 2014년 1월 1일 이후에는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증여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기업자산상당액”으로 계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업무관자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1. 기업상속공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특례시 적용하는 과세표준 및 세율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유권해석사례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의 개정된 한도 증가액에 대한 적용 여부

- (1차 증여, 2009.11.20.) 10년 이상 기업을 영위한 대표이사(父)가 장남에게 기업 주식을 증여(800,000주, 증여재산 2,691백만원)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기타 특례요건은 모두 충족함을 전제함

- (2차 증여, 2016년 예정) 부(父)가 보유한 잔여주식 전량을 장남에게 추가 증여할 예정

(*) 기타 특례요건은 모두 충족함을 전제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세법 개정으로 100억원으로 적용한도가 증가하고 재차 증여가 발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녀 1인에게 최초로 기업의 승계가 이루어진 후에 최대주주등의 다른 자녀는 기업의 승계를 받을 수 없으나, 최초로 기업의 승계를 받은 자녀는 같은 항에 따른 과세특례 한도 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어 재차 승계를 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016-법령해석재산-2916, 2016.12.12.)

→ 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고 이미 신고·납부한 경우라도 한도액 증가와 관련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기업승계 증여세 추징 후 재차 기업승계 특례 적용여부

부로부터 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기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로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어 부로부터 기업의 주식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 한도 내에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법령해석재산-1801, 2016.12.09.)

3. 자기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에 따른 기업자산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임(법령해석재산-1711, 2015.11.13.).

※ 일반적인 경우(1인이 증여받는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방법

2021년 7월 12일 기업의 소유자인 부친 甲이 38세의 아들인 乙에게 주식을 150억원 증여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사업무관자산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1)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 30억원 : 10% 단일세율 적용(증여세액 3억원)
- 증여세 과세표준 30억 초과분인 65억원 : 20% 단일세율 적용(증여세액 13억원)
-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 초과금액(기본세율 적용) : 20억 15백만원
 - ① 증여세 과세표준 : 50억원-5천만원=49억 5천만원
 - ② 증여세액(한계세율 50%) : 49억 5천만원×50%-4억 6천만원=20억 15백만원
- 증여세 합계액 : 3억원+13억원+20억 15백만원=36억 15백만원

(2)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일반증여로 과세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표준 : 150억원-5천만원=149억 5천만원
- 증여세액 : 149억 5천만원×50%-4억 6천만원=70억 15백만원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10%가 아닌 20%세율을 적용받는 금액은 100억원에서 30억원을 뺀 70억원이 아니라 35억원을 뺀 65억원이라는 점입니다.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하여 과세가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아닌 과세표준(과세가액에서 공제액 5억원을 뺀 금액, 즉 35억원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인 30억원이 과세표준입니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2인 이상이 증여받는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①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동시 증여) :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 ② 해당 주식 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순차 증여) :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

※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방법

- 부친은 여러 독립된 법인(A, B, C, D, E)의 최대주주이자 경영자임
 - 자녀A는 A법인의 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고 기업승계 과세특례(30억원)를 적용받은 바 있음
 - A법인은 자녀A에게, B법인은 자녀B에게 각각 기업승계하고자 함
 - 2개 이상의 가업을 2인 이상의 자녀가 각각 승계한 경우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 2020.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2인 이상의 수증자가 기업별로 주식을 증여받거나 1개 기업을 공동으로 증여받은 경우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수증자의 승계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에 따라 계산함(서면-2020-상속증여-5330, 2020.04.30.)

(사례) 2인 이상이 증여받는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방법

1. 동시 증여시 과세특례 적용방법

2021년 7월 12일 가업의 소유자인 부친 甲이 38세의 장남인 乙에게 주식을 60억원, 차남인 丙에게 40억원 증여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은?(사업무관자산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1)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가정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 증여세 과세가액 : 40억원(乙이 증여받은 주식)+60억원(丙이 증여받은 주식)=100억원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 : 100억원-5억원=95억원
- 증여세 산출세액 : ①+②=16억원
 - ① 증여세 과세표준 30억원 : 10% 단일세율 적용(증여세액 3억원)
 - ② 증여세 과세표준 30억 초과분인 65억원 : 20% 단일세율 적용(증여세액 13억원)

(2) 각 거주자가 납부할 증여세액

- 乙이 납부할 증여세액 : 16억원×60억원/(60억원+40억원)=9.6억원
 - 丙이 납부할 증여세액 : 16억원×40억원/(60억원+40억원)=6.4억원
- 세액계산방법은 우선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납부할 증여세액을 계산한 후 이를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서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각 거주자가 납부할 증여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득과세형인 증여세의 계산방식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이 증여받는 경우에도 1인이 증여받는 경우와 총 세부담이 동일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2. 순차 증여시 과세특례 적용방법

2021년 7월 12일 가업의 소유자인 부친 甲이 38세의 장남인 乙에게 주식을 60억원 증여한 후 차남인 丙에게 2022년 7월 12일 40억원 증여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사업무관자산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1) 1차 증여시 乙이 납부할 증여세액

- 증여세 과세가액 : 60억원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 : 50억원-5억원=55억원
- 증여세 산출세액 : ①+②=8억원
 - ① 증여세 과세표준 30억원 : 10% 단일세율 적용(증여세액 3억원)

- ② 증여세 과세표준 30억 초과분인 25억원 : 20% 단일세율 적용(증여세액 5억원)

(2) 2차 증여시 丙이 납부할 증여세액

- 증여세 과세가액 : 60억원(1차 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40억원=100억원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 : 100억원-5억원=95억원
- 증여세 산출세액 : ①+②=16억원
 - ① 증여세 과세표준 30억원 : 10% 단일세율 적용(증여세액 3억원)
 - ② 증여세 과세표준 30억 초과분인 65억원 : 20% 단일세율 적용(증여세액 13억원)
- 기납부세액 : 8억원(1차 증여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 2차 증여시 丙이 납부할 증여세액 : 16억원-8억원=8억원

(3) 증여세 총부담세액 : (1)+(2)=16억원

→ 세액계산방법은 1차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후 2차 증여가 발생했을 때 취득과세 형인 증여세의 계산방식에도 불구하고 1인이 2회 이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의 과세특례 대상 주식가액을 합산하여 2차 증여시 납부할 증여세액을 계산한 후 1차 증여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증여세액공제로 뺀 후 丙이 납부할 증여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인이 증여받는 경우와 총 세부담이 동일함은 물론 동시 증여와 순차증여를 할 때 총 세부담 역시 동일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2-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전요건

(1) 가업규모 및 업종요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규모 및 업종요건은 앞에서 설명한 '1.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합니다.

※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이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가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아 해당 요건을 판단합니다.

-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산 5천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증여일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합니다)이어야 합니다.
-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 부모가 최대주주 등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 종전에 최대주주 등 중 1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 가업규모 및 업종요건과 관련한 유권해석사례

1. 도소매업의 사업수입금액이 축산업보다 많은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당사는 「농업·농촌기본법, (現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서
- 당사가 생산한 돼지는 제품 매출로 인식하고, 외부에서 매입하여 판매 하는 돼지는 상품매출로 인식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평균제품매출의 비중은 15%이며 상품매출은 85% 정도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품매출은 축산업(012) 중 양돈업(01220)에 해당 하며, 상품매출은 도매 및 소매업 중 산동물도매업(46205)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에는 도소매(산동물)와 축산(양돈) 등으로 되어 있음
- 농업회사법인의 도소매업의 사업수입금액이 축산업보다 많은 경우,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주된 사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법규과-1260, 2014.12.01.)

2. 도소매업의 사업수입금액이 축산업보다 많은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A법인 : 유류판매업(주유소)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자산은 100억원(대부분 부동산) 가량 됨
- 갑 : A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주주임
- 기타사항 : 갑이 소유한 A법인의 주식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
- A법인이 100억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추가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며,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은 당해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부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재산세과-769, 2010.10.19.)

3. 피상속인이 가업경영에 참여한 배우자 등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여부

- 질의법인의 주식보유비율

주주명	지분율	비고
계	100%	
**래	33.98%	대표자
**자	7.32%	**래의 배우자, 관리이사(10년이상 경영에 참여)
**미	6.97%	**래의 자녀(경영에 참여하지 않음)
**민	33.2%	**래의 자녀, 전무 → 가업상속인
**택	18.53%	**래의 자녀, 이사(10년이상 경영에 참여)

- 2015.12.31. **자, **미, **택의 보유주식을 대표자 **래가 인수한 후 상속이 개시되면 **민 전무에게 가업상속을 할 예정임

(*) 최대주주지분은 변동없이 50% 이상으로 상속시점까지 계속 유지

- 피상속인이 가업경영에 10년 이상 참여한 배우자 또는 자녀로부터 취득한 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 가업을 경영하는 자(피상속인)가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배우자 또는 자녀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령해석재산-1443, 2015.10.01).

4. 업종변경시 가업상속 판정기준

- 10년 이상의 기간 중 [갑]이라는 중소기업 업종을 6년간 경영하고 업종변경으로 인하여 [을]이라는 중소기업 업종을 5년간 경영한 경우 중소기업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을 경영한 기업으로 보는지 여부

- 8년간 중소기업 업종을 경영하다가 3년간은 중소기업 업종이 아닌 업종을 경영하였다가, 다시 중소기업 업종을 6년간 경영하는 경우에도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재산세과-1135, 2009.06.09.).

(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가업'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의 가업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업 규모 및 업종 요건'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와 관련된 유권해석 및 판례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가업경영기간 요건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가업이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 이는 증여자가 증여일까지 계속해서 사실상 경영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의 소유를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 가업경영기간 요건에 관련된 유권해석사례

-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된 사업만이 가업상속 대상이라고 해석함이 법규 상호 간에 합리적 해석에 부합함(서울행정법원 2016구합 72754, 2017.05.1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기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 설립 이후 계속하여 피상속인이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기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기업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기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제조 및 도매업을 중단하고 물류창고 운영업으로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은 해당 기업이 주된 업종을 변경한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기산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업종으로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법령해석재산-0227, 2015.10.28.).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기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재산-625, 2009.03.25.)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유상증자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령해석재산-2293, 2016.12.28.).

- 수증자가 이미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자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기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기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법령해석재산-2596, 2016.12.09.)

(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가업'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의 가업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업경영기간 요건'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와 관련된 유권해석 및 판례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최대주주지분 요건

증여자는 중소기업 등의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즉, 최대주주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50%(3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10년의 기간 중 단 한번이라도 50%(3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최대주주 등"이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

즉,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자의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경우라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와 같이 주식보유 요건은 증여일 전 증여자의 가업영위기간 중 10년 이상 계속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증여자의 10년 이상 가업영위기간의 계산은 최대주주지분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실제 기업을 운영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최대주주지분 요건에 대한 견해

- 2020년 5월 28일 대법원에서는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이라고 최종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2019-두-44095, 2020.05.28, 국패, 원료).
- 그 이유에 대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증여세나 상속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증여와 상속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상인 '가업'에 해당하려면, '증여자인 부모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일정비율, 즉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할 것'을 충족하면 되고, '증여자가 증여하는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까지 충족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과세관청의 주장처럼 증여자인 부모가 해당 주식을 보유한 기간과는 무관하게 언제든지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증여일 바로 전날 증여자인 부모가 취득한 주식의 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는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가업'의 승계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한다는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자인 부모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면서 해당 기업을 경영함으로써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상인 '가업'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승계를 위한 주식의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한다고 하여 그것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과세당국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여 증여자인 부모가 '최대주주 등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할 것'만 충족하면 충분하고 '증여자가 증여하는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이라는 현재 유권해석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법령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최대주주지분 요건에 관련된 유권해석사례

1.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 포함여부

- 질의법인 : 1975년 설립되어 앨범 등을 제조하여 판매, 수출하고 있음
- 질의법인의 설립시부터 현재 주주지분율은 다음과 같음

<1975년 설립시>

주주	지분율	실질 소유관계	실질지분율
甲(창업주)	38%	실질주주	75%
乙(기타주주)	25%	실질주주	25%
丙(차명주주)	22%	甲 소유주식의 차명주주	0%
丁(차명주주)	15%	甲 소유주식의 차명주주	0%

<2011년 말>

주주	지분율	실질 소유관계	실질지분율
甲(창업주)	53%	丁 명의 차명주식 15% 양수	75%
乙(기타주주)	25%	실질주주	25%
丙(차명주주)	22%	甲 소유주식의 차명주주	0%

<2011년 말>

주주	지분율	실질 소유관계	실질지분율
甲(창업주)	100%	乙 소유주식 25% 양수 丙 명의 차명주식 22% 실명전환	100%

- 질의법인은 설립시 @@공장에서 직접 앨범을 제작하여 판매, 수출하는 제조업체였으나, 약 20년 전부터 최근까지는 앨범부품 및 완제품 등을 국내 또는 해외에서 매입하여 수출하는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으며, 과거 제조에 활용되던 용인공장은 최근 전까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 최근 창업주였던 甲의 아들인 戊는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많이 축소된 회사의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여 주던 @@공장을 회사가 다시 직접 활용하여 포장, 완제품생산 및 물류창고 공간으로 사용을 시작하였음
- 질의법인의 창업주인 갑은 최근 건강 등의 이유로 회사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아들인 戊에게 맡기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기업승계 증여특례를 활용하여 본인의 주식을 아들에게 증여 하려함 (질의1) 기업승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50% (상장법인은 30%) 이상 판단시 차명주식을 포함하는지 여부 (질의2) 기업자산상당액 계산시 제외하는 업무무관자산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지

→ 귀 서면질의의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최대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97, 2010.12.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그리고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법령해석재산-1789, 2020.09.04.)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하여 같은 령 제15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재산세과-897, 2010.12.2.)

2. 의결권 없는 우선주의 기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 회사는 1983년에 개업한 법인으로서 종전 40,000주에서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총 발행주식수는 78,000주임(보통주 63,100주, 우선주 14,900주)
- 회사의 대표이사 ○○○과 특수관계인(자녀 : ◎◎◎, ◇◇◇, ◆◆◆)은 회사의 주식 51.29%(우선주 포함)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1년 중 ◆◆◆(3.85%)가 사망하여 ◆◆◆의 주식이 남편 ∇∇∇에게 상속되었고 2007년 ∇∇∇가 재혼함에 따라 ○○○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율이 3.85% 감소하게 되어 2007년도의 경우 우선주를 포함할 경우 피상속인등 지분율은 47.44%(우선주 제외시 50%이상)이며, 나머지 연도는 모두 50%이상임
- 2012년도에 기업승계를 목적으로 子 ◎◎◎은 父 ○○○으로부터 회사주식 20,900주(보통주 6,000주, 우선주 14,900주)를 증여받고 조특법 제30조의6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83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음(증여재산가액 : 1,332백만원)
- 2013년 父 ○○○이 사망하여 子 ◎◎◎은 ○○○이 소유하고 있던 회사주식 23,100주(보통주, 재산가액 1,889백만원)를 상속받았고, 기 증여받은 20,900주(보통주 6,000주, 우선주 14,900주)를 포함한 총 44,000주(보통주 29,100주, 우선주 14,900주)를 기업상속공제액으로 신고하였음
- 기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그의 특수관계자 포함)의 지분율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50% 이상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의 포함 여부와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우선주 가액의 상증법 제18조 및 조특법 제30조의6 적용대상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면 100분의 30)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지 여부를 판정할 때 「상법」에 따른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는 발행주식총수 및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기업상속재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임.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에 따른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식은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법규-1088, 2014.10.14.)

3. 기업승계 증여세 특례시 10년 이상 주식 보유 요건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인 甲은 개인기업을 15년간 운영하다가 '10년 1월 현물출자를 통하여 법인 설립함
- 법인설립시 주주는 甲 88.7%, 甲의 자녀(乙) 11.3% 이었으며, '13년 甲 39%, 甲의 배우자 25%, 乙 36%로 지분을 및 주주가 변경되었고, '18년1월 甲의 배우자 주식을 甲이 전부 증여받아 질의일 현재 지분율은 甲 64%, 乙 36% 임
- 甲의 보유 주식 64% 중에서 '18년 甲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25%를 제외한 39% 중 20%를 乙에게 증여시 기업승계특례 가능한지 여부
- 기업상속공제 및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기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함(서면-2018-상속증여-1694, 2019.03.11.)
- 하지만 현재 법원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련 대법원 판례 이후 “증여자가 증여 대상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이 아님”이라는 취지의 판례가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771, 2021.10.15, 국패, 진행중).

(4) 종전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기업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에서는 종전에 증여자가 10년 이상 영위하던 기업의 주식을 증여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1차 과세특례)로서 그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다른 주주가 다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2차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이란 종전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기업 즉, 최초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종전에 기업을 증여받은 자가 해당 주식을 증여하여 승계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 1995년부터 두 사람(이하 甲과 乙)이 개인사업자(동업)로 제조업을 영위하다 2005년에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중소기업의 각각 대표이사임
-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자 함
- 甲 및 甲의 아들은 乙 및 乙의 아들과 상증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규정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관계가 해당되지 않으며 단순한 주주관계임
- 법인설립시점부터 지금까지 주식의 분포는 甲 30%, 甲의아들 20%, 乙 30%, 乙의처남 20%로 甲은 아들에게 자기지분 30%를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에 의해 사전증여하였음
- 이 때 乙이 지분 30%를 乙의 아들에게 기업승계 할 경우 乙의 아들이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업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로서 갑의 자녀가 갑으로부터 해당 기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개정된 것)제30조의 6에 따라 기업을 승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갑과 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동일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의 자녀가 기업을 승계받은 후 을의 자녀가 기업을 승계받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재산-469, 2011.10.07.)
- 2010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까지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들이 각각의 자녀에게 각각 주식을 증여하면 모두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2010년 12월 30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개정과 더불어 2010년 12월 27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를 신설하여 2011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위와 같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주주의 기업승계시 1회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다만, 1차 기업승계받은 자가 증여하는 경우에는 2차 기업승계도 가능합니다.

(5) 증여자 요건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합니다)에 해당해야 하며, 그 부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하나인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로는 재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해야 하며,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증여자 요건에 관련된 유권해석사례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상속증여-2249, 2019.10.07.)
- 父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 母의 지분에 대해서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父 또는 母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상속증여세과-515, 2019.06.12.)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재산세과-471, 2011.10.11.)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자의 가업영위 기간 중 80%이상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가업을 실제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재산-779, 2009.11.19.)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재산-625, 2009.03.25.)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가 증여일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증여하기 10년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증여세과세특례 대상이 아닌 것임(재삼46014-1197, 1999.06.18.와 같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모”에는 “양부모”가 포함되는 것임(재산세과-430, 2009.10.09.)

(6) 수증자 요건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2015년 2월 3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로서 부모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업을 승계’의 의미는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 수증자의 결혼 여부는 관련이 없으며 증여당시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업상속의 경우에는 상향식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망했을 때 가업을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조부모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하향식 승계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18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는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수증자 1인이 증여받는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두 있도록 하였으며(「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1항 단서 개정), 이 경우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1인이 승계하는 경우와 총 세 부담이 동일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2항 신설).

〈공동수증 허용과 관련한 수증자 요건 개정 조문 대비표〉

종전	개정
<p>•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생략)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 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생략)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게 됩니다. 이는 곧 증여세 신고납부 시점에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닌 상속시점에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납부가 완료되어야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과세구조 때문에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및 적용 요건 등은 일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공동수증허용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였으며 가업상속공제 규정이 2016년 2월 5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공동상속을 허용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도 이에 대응되게 공동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변경한 것입니다.

※ 수증자 요건에 관련된 유권해석사례

1.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방법

2020.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2인 이상의 수증자가 기업별로 주식을 증여받거나 1개 기업을 공동으로 증여받은 경우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수증자의 승계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 2항에 따라 계산함(서면-2020-상속증여-5330, 2021.04.30.)

2. 「조세특례제한법」 가업승계 특례규정에 의해 주식의 수증자는 자녀여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가업승계 특례규정에 의하면 가업승계의 주체는 '자녀' 외에 '자녀의 배우자'도 될 수 있으나 주식의 수증자는 '자녀'여야 함이 문언상 분명하고, 원고가 국세상담센터의 착오 답변에 의해 주식의 수증자가 자녀의 배우자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이 적용된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서울행정법원-2018-구합-88159, 2019.06.21, 국승, 완료)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및 범위

- 1) 창업주의 소유주식 중 6,000주 만을 장녀 A에게 분할 증여한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 2) 남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므로, 장녀A가 대표이사 미취임하여도 장녀A의 증여분에 대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가능한지
- 부친의 소유주식을 한 자녀가 분할 증여받거나 수증자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일 경우에도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수증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 (상속증여-0063, 2018.02.13.)

4.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상속증여-1132, 2017.09.26.)

- 위 유권해석은 수증자의 대표이사 취임요건에 대해 증여일 이후 뿐 아니라 증여일 이전에 대표이사로 이미 취임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증여일 이전에 수증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증여자가 대표이사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가업을 경영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 바,
- 따라서 '수증자가 이미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자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기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법령해석과-4009, 2016.12.09.)을 유의하여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가업의 재차승계 가능 여부

수증자가 이미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자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기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녀 1인에게 최초로 가업의

승계가 이루어진 후에 최대주주등의 다른 자녀는 가업의 승계를 받을 수 없으나, 최초로 가업의 승계를 받은 자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 한도 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어 재차 승계를 받을 수 있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3, 2016.10.26.)

6. 2개의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특례적용 범위

두 개의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자녀 1인이 주식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주식 등 가액을 합하여 계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증여자가 모두 최대주주등인 법인 간의 합병으로 인해 합병후 존속법인(증여자가 최대주주등)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에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 가업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과세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재산세과-358, 2010.06.03.)

7. 합병의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두 개의 가업을 자녀 1인이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주식 등 가액을 합하여 계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두 개의 가업을 승계한 후 합병하는 경우에는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존속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재산세과-728, 2010.10.05.)

8. 법인의 인적분할 전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법인을 인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중 분할 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하는 경우 먼저 증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순서에 따라 3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을 승계받은 후 법인을 인적분할한 경우로서 그 가업을 승계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재산세과-809, 2010.11.01.).

2-3.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요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추정〉

추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재산을 취득할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은 경우 •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폐업하는 경우 •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추정대상금액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
가산하는 이자상당액	추정대상금액 ×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 1일 25/100,000

(1) 가업의 승계 및 대표이사 취임요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고 승계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재산을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을 말합니다.

※ 가업승계 및 대표이사 취임요건과 관련된 유권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과세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84, 2020.09.10.)
-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데(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0. 12. 31. 기획재정부령 제1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4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2015. 12. 1. 당시 이미 출산휴가 미 육아휴직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였던 점, 원고는 2014. 1. 1.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여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15. 12. 1.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위한 약 1년 11개월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점, 그런데 원고는 복직 후 약

2년 10개월이 지난 2016. 10. 19.에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수원지방법원2018구합72933, 2019.08.22.)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서면-2017-상속증여-3066, 2019.05.2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증여일부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규정은 “가업에 종사할 수 있는 상태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18중2854, 2018.09.04.)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가업에 종사하다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다른 직책으로 계속 가업에 종사하다 증여일부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다시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재산세과-707, 2010.09.27.)
- 거주자(子)와 父가 법인등기부등본상 공동대표이사에서 각자대표이사로 등기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재산세과-1151, 2009.06.11.)
-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가업을 승계한 후 증여자가 대표이사에서 퇴임해야 하는지 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의 요건을 갖춘 증여자의 증여일 이후 공동대표이사직 퇴임여부는 동 규정의 적용과 무관함(재산세과-251, 2010.04.26.)

(2) 가업종사 요건

수증자는 가업승계 후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상 가업에 종사(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하여야 합니다.

1)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란 수증자가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① 수증자가 주식의 증여일부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수증자가 증여자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 ②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2020년 2월 11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는(즉, 정전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적용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및 기존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는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③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가업승계 후 경영사정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도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합니다.

(참고사항) 주업종 변경에 해당되는 않는 경우 개정연혁

2014.2.21.~2016.2.4.	2016.2.5.~2020.2.10.	2020.2.11. 이후
세분류 내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	소분류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 세분류 매출액이 사업연도 말 전체 매출의 30% 이상인 경우	• 중분류 내에서 변경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후 중분류 외 변경도 가능

2)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정당한 사유

7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지만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③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지분유지요건

수증자는 기업승계 후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상 증여받은 주식 지분을 유지(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7항에서는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주식의 처분, 유상증자시 수증자의 실권,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의 실권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각 경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정당한 사유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7항에서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란 수증자가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①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②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수증자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 ③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의 예외사항 및 정당한 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7항에서의 예외사항과 및 제4항에서의 사후관리를 위반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어 추정하지 않는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수증자가 최대주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 ③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해 실권하여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그 후에도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 ④ 채무가 출자 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감소하였지만,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⑤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경우
- ⑥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기타 사후관리요건과 관련된 판례 및 유권해석사례

-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의 처분사유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상속증여-0367, 2020.04.16.)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한 합병, 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의 출자전환은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규정의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에 해당하지 않음(서울고등법원2018누54462, 2019.09.27, 국승, 완료)
- 기업승계 증여세 특례시 연도 중에는 10일 동안 지분율이 50% 이하로 줄어들었음에도 연도말 기준으로 50% 이상을 유지하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비상장법인 기업은 최대주주인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임(상속증여-0588, 2019.03.11.)
- 청구인이 승계한 기업을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7년 이내에 폐업한 것이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기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기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기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을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18-전-2864, 2018.12.10, 기각, 완료)
- 청구인이 기업승계 후 쟁점법인이 2년 2개월만에 폐업되었으므로 기업승계의 증여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법령 등에 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른 폐업을 '정당한 사유'나 '부득이한 사유'로 열거하지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조심-2018-서-2171, 2018.09.10, 기각, 완료)
-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과세특례를 적용을 받지 아니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질의인은 '04년 ◇◇◇◇(주)에 입사하여 '15년 10월 대표이사로 취임
- 질의인은 '10년 ◇◇◇◇(주)의 주식 20,000주(4.76%)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16년

아버지로부터 ◇◇◇◇(주) 주식 194,200주(지분율 46.24%)를 증여받고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음

- 질의인은 회사의 원활한 자금흐름 및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위하여 기존 보유주식 20,000주를 계열회사에 매도하고자 함
- 기업승계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주식은 보유하고 증여받기 전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수증자가 기업승계 전 보유한 주식을 승계 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하지 않음(상속증여-1646, 2019.08.08.)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해당 기업이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은 지주회사로 전환(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하고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전 기업의 주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5항 제2호에 규정된 기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받을 당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이자상당액을 가산함)를 부과하는 것임(법령해석재산-2565, 2016.09.29.)

•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이 임박한 시점에 단기간만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청구인이 같은 기간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보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15부2607, 2015.12.02.)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기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가업용 자산인 공장시설을 확장 이전하기 위해 기존 공장을 처분하고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의6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법규-150, 2014.02.18.)

→ 이는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를 할 때에는 기업상속공제와는 달리 자산유지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개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사업별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5항 제2호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재산-92, 2011.02.23.)

• 기업의 승계를 위하여 주식을 증여받은 후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를 사모형태로

발행하여 사채권자의 권리 행사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30조의6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재산-821, 2009.04.29.)

- 부모부터 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기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로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어 부모부터 기업의 주식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 한도 내에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법령해석재산-1801, 2016.12.09.)

(4) 사후요건 위반과 증여세 과세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요건을 위반하면 증여세가 추징될 뿐만 아니라 이자상당액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text{이자상당액} = \text{①} \times \text{②} \times \text{③}$$

- ① 사후관리 위반에 의하여 결정된 증여세액
- ② 증여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일까지의 기간
- ③ 1일 10만분의 25(연 9.125%)

※ 사후관리에 따른 적용례 및 경과조치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6조(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을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12853호, 2014.12.2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2조(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을 승계한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았거나 부과받아야 할 자에 대해서는 제30조의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12853호, 2014.12.23.).

→ 2014년 12월 23일 세법개정시 사후관리 기간을 종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위의 부칙(적용례 및 경과조치)을 해석해 보면 사후관리 기간이 종전 10년에서 7년으로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 뿐만이 아니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받은 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후관리를 위반해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위반한 시점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이 종전 10년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5) 사후관리를 위반했을 때 신고·납부의무

2018년 1월 1일 이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위에서 설명한 사후관리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신고하고 사후관리위반에 대한 증여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세액공제 및 동일인 합산과세 여부

- 신청인은 2015.3월 가업승계로 A법인 주식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고, 총 주식가액 570백만원 중 과세특례 대상금액 413백만원을 제외한 157백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이후, 2015.10월 부모로부터 토지 420백만원을 증여받고 토지와 주식가액(157백만원)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함
- 이후 가업승계 사후관리 위반사유가 발생하여 특례를 적용받았던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할 계획임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에 따라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산과세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하며, 같은 법 제69조 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법령해석재산-1464, 2021.10.28.)

2-4.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까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주식 등 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업법인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가업승계 법인의 증여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 그 밖에 가업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례규정 적용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상속증여-1848, 2017.07.28.)

2-5.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의 유의사항

(1)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업승계 주식 등은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정산합니다. 그러나 상속공제적용의 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3호 “상증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위한 사전증여분에 대해서는 상속공제의 한도액을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지 않고 전액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증여세액공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은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3) 신고세액공제의 배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분납과

연부연납은 가능하지만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4) 가업승계 주식가액 외의 일반 증여재산가액과의 합산과세 배제

일반증여의 경우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배제 증여재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그러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증여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공제되는 금액 및 적용되는 세율이 각각 다르고, 만일 이를 합산과세 한다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취지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적용 불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증여자가 같은 경우 수증자인 1거주자가 증여세 과세특례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같이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증여자가 장남에게는 가업승계주식을 증여하고 차남에게는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등 수증자가 다른 경우에 각각의 적용은 가능합니다.

(6)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이 상장 등 증여이익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를 한 후에 증여받은 주식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되어 추가적인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의 가액과 추가적인 증여이익을 합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 증여에 대한 과세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은 증여이익은 상속세 과세가액의 합산기간 10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7)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가업상속공제 가능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규정을 적용합니다.

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후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가 적용됩니다.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제3항에 따른 가업(최대주주 등 지분을 50%, 상장은 30% 이상)에 해당할 것. 다만,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않은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다만, 부모가 보유 중인 주식 등의 전부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통해 사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후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이미 주식 등의 전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은 특례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주식을 계속 보유해야 하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과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20년 2월 11일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 등의 전부를 증여해서 ‘최대주주 등 지분율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즉,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없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합리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 법인전환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같은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조세특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이를 적용받게 되면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의 방법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날 또는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이월된 양도소득세액을 법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전환하면 당장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과세이연되는 이자상당액만큼 절세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보유하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등을 하면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인이 보유할 때보다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물가상승을 반영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법인세 과세가 된 후의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실현하더라도 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결코 절세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문가와 깊이 있는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 (사례) '일반적 증여'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적용 증여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乙) 주식 80%를 보유한 부친이 성인자녀에게 주식 70억원을 증여
- 중소기업(甲)은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가액 비율이 0%(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100%)임

일반적 증여인 경우	구분	가업승계주식 특례적용 대상인 경우
70억원	증여세 과세가액	70억원
(0.5억원)	증여공제	(5억원)
69.5억원	증여세 과세표준	65억원
50%(누진공제 4.6억원)	세율	10%(30억원 초과분은 20%)
30억 1,500만원	산출세액	10억원
(9,045만원)	신고세액공제	-
29억 2,455만원	자진납부세액	10억원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19억 2,455만원의 증여세를 적게 부담

※ (사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적용 증여세의 연도별 부담액 비교

-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乙) 주식 50%를 보유한 부친이 성인자녀에게 주식 60억원을 증여
- 중소기업(甲)은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가액 비율이 20%(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80%)임

구분	2014년		2021년	
	특례 적용분	특례 미적용분	특례 적용분	특례 미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	30억원	48억원	12억원
증여공제	(5억원)	(0.5억원)	(5억원)	(0.5억원)
과세표준	25억원	29.5억원	43억원	11.5억원
세율	10%	40% (누진공제 1.6억원)	20% (30억원 이하 10%)	40% (누진공제 1.6억원)
산출세액	2.5억원	10.2억원	5.6억원	3억원
신고세액공제	-	(1.02억원)	-	(0.09억원)
자진납부세액	2.5억원	9.18억원	5.6억원	2.91억원
자진납부세액 계	11.68억원		8.51억원	

※ 관련 유권해석사례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적용 후 재차 증여시 가업승계 특례 적용 여부 및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 1차 증여, 2009.11.20.)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대표이사(父)가 장남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800,000주, 증여재산 2,691백만원)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 기타 특례요건은 모두 충족함을 전제함
 - (2차 증여, 2016년 예정) 부(父)가 보유한 잔여주식 전량을 장남에게 추가 증여할 예정
 - (*) 기타 특례요건은 모두 충족함을 전제함
 -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세법 개정으로 100억원으로 적용한도가 증가하고 재차 증여가 발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자(子)는 부(父)의 지분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부(父)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녀 1인에게 최초로 가업의 승계가 이루어진 후에 최대주주등의 다른 자녀는 가업의 승계를 받을 수 없으나, 최초로 가업의 승계를 받은 자녀는 같은 항에 따른 과세특례 한도 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어 재차 승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령해석재산-2916, 2016.12.12.).
- ☞ 위 유권해석의 질의 2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가 보유 중인 주식 등의 전부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통하여 사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후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중 피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요건(최대주주 등 지분을 50%(상장법인 30%) 이상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취지와 상반된 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업승계에 이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의 제도를 합리화하였으며 이는 2020년 2월 11일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0년 2월 11일 이후 상속분부터는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전부 증여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는 주식이 없는 경우에도 기업상속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사망 시 기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 김aa는 19xx년생으로 1982년 ○○공업(주)(이하 “질의법인”)을 설립하여 198x.xx.xx.~2018.1.1. 대표이사로 재직함
 - 김bb(이하 “수증자”)은 1997.1.1.부터 질의법인에서 근무해오던 자로 2015.xx.xx. 부친인 김aa으로부터 질의법인 발행주식 11,000주(이하 “쟁점 기업주식”)를 증여받고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 수증자는 2018.1.1.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8.7.4.까지 재직함
 - 2018.7.4. 수증자가 사망하자 수증자의 배우자(이하 “배우자”)는 수증자가 보유한 질의법인 발행 주식 12,000주*를 상속받아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2018.7.18. 질의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기업에 종사함
 - (*) '02.12.31. 유상취득한 1,000주 포함
 -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쟁점 기업주식을 보유한 수증자가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망하고, 수증자의 배우자가 쟁점 기업주식을 상속받아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경우 쟁점 기업주식에 대해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사전답변신청의 경우와 같이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을 보유한 수증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수증자의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상속받아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식에 대해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업상속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48[법령해석과-3057](2019.11.22.)).
-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기업상속공제 적용
 - A(1930년생)는 1970년 갑법인(건설업-전기소방공사)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최대주주(50%이상 주식 보유)로서 경영하고 있음
 - 갑법인에 대한 기업상속공제 적용여부를 검토한 바, 재직기간 외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하나,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업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못한 것으로 검토됨
 -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를 검토한 바, 재직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특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A의 갑법인에 대한 주식지분의 가치는 50억원으로 그 전부를 증여할 경우,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30억원이 한도액이므로 30억까지는 10%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20억원은 일반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기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면 그 대상은 30억원인지, 아니면 한도초과분 20억원도 해당되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 등(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함)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각호의 요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함)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업상속으로 보아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때 기업상속공제 대상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하는 것임(재산-311, 2012.08.31.)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비교〉

구분	가업상속공제 요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사 전 요 건	개인·법인	• 개인사업자의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및 법인의 주식이 적용대상	• 법인의 주식만 적용대상
	가업규모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좌동
	가업업종	• 제조업, 건설업 등 영위 개인·법인	• 제조업, 건설업 등 영위 법인
	가업경영기간	• 10년 이상 계속 개인·법인 가업 경영	• 10년 이상 계속 법인 가업 경영
	납부능력요건	• 중견기업의 경우 납부능력요건 있음(19년 1월 1일 이후 적용)	• 해당사항 없음
	최대주주지분	• 10년 이상 계속하여 지분율 50%이상 보유(상장 30%)	• 10년 이상 계속하여 지분율 50%이상 보유(상장 30%)
	피상속인/증여자	• 피상속인 : 거주자, 최대주주 중 1인 • 피상속인 나이 제한 없음 •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 • 가업기간 중 50%이상, 또는 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 등 재직, 가업기간 중 10년 이상 대표이사 등 재직 후 상속인이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	• 증여자 : 거주자, 최대주주 중 1인 • 증여자 나이 60세 이상 부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상속인/수증자	• 상속인 : 18세 이상 •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종사	• 수증자 : 18세 이상 거주자 • 해당사항 없음	
	• 상속인의 배우자가 18세 이상이고, 2년 이상 가업종사해도 가능	• 수증자의 배우자 가능(신고기한 내 가업종사, 증여 후 5년 내 취임요건 충족 시)	
사 후 요 건	가업승계·취임	• 공동상속 허용 •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 신고기한부터 2년 내 대표이사 등 취임	• 2인 이상 가업승계를 할 때에도 허용 • 신고기한 내 가업종사 • 증여 후 5년 내 대표이사 취임
	가업종사	• 상속인 7년간 대표이사 등 유지 • 7년간 주된 업종 유지(중분류 내 업종 변경 가능) • 1년 이상 가업 휴업·폐업 등 無 ※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제외	• 수증자 7년까지 대표이사 유지 • 7년간 주된 업종 유지(중분류 내 업종 변경 가능) • 1년 이상 가업 휴업·폐업 등 無 ※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제외
	가업용 자산유지	• 가업용자산 7년간 80%(5년간 90%) 유지 ※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제외	• 해당사항 없음
	지분유지	• 상속받은 지분 7년간 유지 ※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제외	• 증여받은 지분 7년간 유지 ※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제외
	근로자유지	• 각 사업연도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 또는 지급한 총급여액의 기준대비 매년 80% 이상 유지 및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의 전체평균이 기준대비 7년간 100% 유지	• 해당사항 없음
	요건 위반과 추정	•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가산세)추징 • 위반기간에 따라 추정세액 경감	•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가산세)추징 • 위반기간에 따른 추정세액의 경감 없음

3.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 뿐 아니라 모든 세목은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과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상속 및 증여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종류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부동산 등 즉시 현금화하기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액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까지 징수의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는 경우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납부기한 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자체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의무자의 생활기초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세금의 일시납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납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수입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거액의 세금을 일정기간 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시 기한유예의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연부연납제도라고 합니다.

또한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는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보다 더 장기적으로 거치기간 포함 최장 20년으로 운영하여 가업승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연부연납제도의 일반적인 내용과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연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부연납의 요건

연부연납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금액요건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2) 신청요건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할 때 또는 결정통지에 의한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연부연납 신청기한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상속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증여세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하는 때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는 때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에 의해 신청한 경우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 상의 납부기한	
연부연납신청시 특정 납세담보물을 함께 제공한 경우	연부연납신청일	

※ **연부연납의 신청인**

연부연납은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2월 23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공동상속인의 연부연납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담보제공 요건

연부연납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부연납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의 납세담보(「국세징수법」제18조 제1호부터 제4호)를 제공하면서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 ① 금전
- ②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유가증권
- ③ 납세보증보험증권
- ④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및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4) 가업상속 및 중소기업 등을 상속받은 경우에 대한 연부연납 특례 요건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연부연납 특례 활용을 통한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재산 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납세자의 선택 또는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비록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는 않았지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대상금액 및 연부연납의 기간을 일반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와 다르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9조 제3항에 따른 중견기업 (매출액 평균금액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합니다)을 상속받은 경우
- ② 피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 위 ①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5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 ㉡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할 것

- a. 100분의 30 이상의 기간
- b. 5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함)
- c.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 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a.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b.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2) 연부연납의 허가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구분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통지 기한	
신고기한 내 신청한 경우	상속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월 이내
	증여세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이내
수정신고 시 신청한 경우	상속세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신청한 경우	상속세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에 따라 납부기한 내 신청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4일 이내
연부연납신청시 특정 납세담보물을 함께 제공한 경우		연부연납신청일에 허가된 것으로 간주(자동허가)
통지기한까지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한 것으로 봄

(3) 연부연납의 기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부연납의 기간은 일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경우 거치기간 없이 5년, 가업상속재산 등의 경우 최장 10년 분할납부(또는 3년 거치 7년 분할납부 가능) 또는 20년 분할납부(또는 5년 거치 15년 분할납부 가능)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 여기서

‘가업상속재산 등’이란 위에서 설명한 ‘4) 가업상속 및 중소기업 등을 상속받은 경우에 대한 연부연납 특례 요건’을 갖춘 상속재산을 말합니다.

1) 일반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

가업상속 등의 재산이 아닌 재산(일반재산)만 있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2)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산 등이 있는 경우 연부연납 기간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을 제외합니다) 중 가업상속재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또는 3년 거치 7년 분할납부 가능)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하며,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을 제외합니다) 중 가업상속재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연부연납 허가 후 20년(또는 5년 거치 15년 분할납부 가능)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2017년 12월 19일 세법개정으로 인해 종전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최대 15년의 기간동안 연부연납을 적용했지만, 2018년 1월 1일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는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는 물론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그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연부연납 특례의 활용을 통한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요건도 완화하여 ‘가업상속’ 뿐 아니라 가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역시 연부연납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목		연부연납기간	
증여세		허가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상속세	일반상속재산		허가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가업상속재산 등의 비율	50%미만	허가받은 날부터 10년(3년 거치 가능)
		50%이상	허가받은 날부터 20년(5년 거치 가능)

여기서 ‘가업상속재산 등의 비율’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을 뺀 금액(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을 제외합니다) 중 기업상속재산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을 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text{가업상속재산 등의 비율} = \frac{\text{기업상속재산가액} - \text{기업상속공제액}}{\text{총상속재산가액} - \text{기업상속공제액}}$$

위 산식에서 구체적으로 ‘기업상속재산가액’이란 아래의 구분에 따라 상속인(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상속받은 다음의 재산을 말합니다.

- ①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 상속재산 중 기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2021년 1월 1일 이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은 제외함]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 ②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 상속재산 중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유류분 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업상속재산 등의 비율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총상속재산가액’이란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본래의 상속재산’에서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을 제외하고,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의 간주상속재산’은 포함하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과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가 1년 내 2억원 또는 2년 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상속추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가업상속재산 등의 비율 산정시 총상속재산가액=㉠-㉡+㉢).

(개정사항)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 대상자산 합리화

〈개정내용〉 연부연납 특례 적용대상 중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하도록 대상을 합리화하였습니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1년 2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 가업상속재산 연부연납기간의 개정연혁

구분	2004년 1월 1일 이후	2008년 1월 1일 이후	2018년 1월 1일 이후
가업상속재산 등(*)의 비율 50% 미만	5년 분할납부	2년 거치	10년 또는
		5년 분할납부	3년 거치 7년 이내
가업상속재산 등(*)의 비율 50% 이상	15년 분할납부	3년 거치	20년 또는
		12년 분할납부	5년 거치 15년 이내

(*) 가업상속재산 등 : 구체적으로 연부연납 특례대상으로 ‘①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속재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에는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상속재산(교지(校地), 실습지(實習地), 교사(校舍) 등의 상속재산을 말합니다)를 포함합니다.

(4) 연부연납에 의해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할 세액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다음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1) 증여재산 및 일반상속재산만 있는 경우의 납부기한과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과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연부연납기간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허가 후 5년 이내로 하며, 연부연납기간을 5년으로 허가받은 경우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총액의 1/6은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에 납부해야 합니다.

$$\text{납부기한 및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 = \text{연부연납 대상금액} \times \frac{1}{(\text{연부연납기간} + 1)}$$

2) 기업상속재산 등이 포함된 경우

①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납부할 세액의 계산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거나 일정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상속세는 일반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액과 기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으로 구분해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또는 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과 매년 분할하여 연부연납기간에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일반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계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납부기한,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에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이 경우 연부연납기간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허가 후 5년 이내로 하며, 연부연납기간을 5년으로 허가받은 경우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총액의 1/6은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에 납부해야 합니다.

$$\text{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납부할 세액} = \left\{ \begin{array}{l} \text{상속세} \\ \text{세액} \end{array} - \left(\begin{array}{l} \text{상속세} \\ \text{세액} \end{array} \times \frac{\text{기업상속재산가액} - \text{기업상속공제액}}{\text{총상속재산가액} - \text{기업상속공제액}} \right) \right\} \times \frac{1}{(\text{연부연납기간} + 1)}$$

- 기업상속재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계산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 또는 20년의 기간을 선택하여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 기업상속재산 등에 해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1/11 또는 1/21에 해당하는 세액을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상속허가 후 3년 거치 또는 5년 거치 후 분할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3년 또는 5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기간(7년 또는 15년)에 매년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세액의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에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② 연부연납기간 중 연부연납할 세액의 계산

일반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세액의 계산 : 일반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거치기간 없이 5년간 분할납부하며 연부연납기간 중에 매년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따라서 5년의 기간을 허가받은 경우라면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1/6을 매년 납부하게 됩니다.

$$\text{연부연납기간 중 매년 납부할 세액} = \left\{ \begin{array}{l} \text{상속세} \\ \text{세액} \end{array} - \left(\begin{array}{l} \text{상속세} \\ \text{세액} \end{array} \times \frac{\text{기업상속재산가액} - \text{기업상속공제액}}{\text{총상속재산가액} - \text{기업상속공제액}} \right) \right\} \times \frac{1}{(\text{연부연납기간} + 1)}$$

- 기업상속재산 등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납부할 세액의 계산 :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간(또는 3년 거치 7년 분할납부) 분할납부하는 연부연납기간 중에 매년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연부연납기간 중 매년 납부할 세액} = \left(\begin{array}{l} \text{상속세} \\ \text{세액} \end{array} \times \frac{\text{기업상속재산가액} - \text{기업상속공제액}}{\text{총상속재산가액} - \text{기업상속공제액}} \right) \times \frac{1}{(\text{연부연납기간} + 1)}$$

- 기업상속재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납부할 세액의 계산 : 연부연납 허가 후 20년간(또는 5년 거치 15년 분할납부) 분할납부하는 연부연납기간 중에 매년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연부연납기간 중 매년 납부할 세액} = \left(\begin{array}{l} \text{상속세} \\ \text{세액} \end{array} \times \frac{\text{기업상속재산가액} - \text{기업상속공제액}}{\text{총상속재산가액} - \text{기업상속공제액}} \right) \times \frac{1}{(\text{연부연납기간} + 1)}$$

(참고사항) 연부연납세액의 물납가능여부

과거에는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이 가능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의 개정으로 인해 2013년 2월 15일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첫 회분 분납세액(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 연부연납 가산금은 제외한 세액)에 한정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납세액에 대한 물납신청은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5) 연부연납의 취소와 변경

1) 연부연납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사유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

- ①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②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③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납부기한 전 징수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④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거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기업상속 공제 사후관리와 동일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용 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각 목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않거나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2호 각 목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3호 다목 및 라목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⑤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
 - 사립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
 - 상속받은 사립유치원 재산을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연부연납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방법

연부연납 허가 후 위에서 설명한 '1) 연부연납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사유'에 해당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당초 허가된 연부연납을 취소하거나 변경합니다.

- ①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거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위 '1) 연부연납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사유' 중 '④'(이하 '기업상속 취소사유'라고 함)에 해당하는 경우 : 허가일부 5년 이내에 기업상속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상속재산 등에 대한 연부연납 특례를 취소하고 일반재산의 경우처럼 허가일부 5년에 미달하는 잔여기간에 한해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합니다. 이 경우 그 연부연납 금액은 일반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금액[연부연납대상금액÷(연부연납기간+1)]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곧, '기업상속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추징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 특례는 취소하게 되지만, 일반적인 5년의 연부연납은 허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예를 들어, 허가일부 2년이 되기 전에 기업상속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5년에 미달하는 잔여기간인 3년 동안의 연부연납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 ② 기업상속재산 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전액 일시에 징수합니다.

(6) 연부연납 가산금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 분납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이자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앞에서 설명한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합니다.

① 첫 회분 분할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금

$$\text{첫 회분 분할납부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가산금} = \left(\text{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 \times \left(\frac{\text{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첫 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text{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첫 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 \right) \right) \times \frac{3.288}{100,000}$$

② 그 이후(2회분부터)의 분할납부세액에 대한 가산금

$$\text{그 이후의 분할납부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가산금} = \left(\text{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 - \text{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의 합계액} \right) \times \left(\frac{\text{직전회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text{직전회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 \right) \times \frac{3.288}{100,000}$$

여기서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개정 전에는 아래의 이자율이 변경되더라도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었으나, 2020년 2월 11일 시행령 개정 후에는 시중금리변동을 반영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각 분할납부세액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이 적용됨으로써 연부연납 허가 후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2020년 2월 10일 이전 연부연납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납부일 현재 이자율이 적용 가능합니다.

'16.3.7~ '17.3.14	'17.3.15~ '18.3.18	'18.3.19~ '19.3.19	'19.3.20~ '20.3.12	'20.3.13~ '21.3.15	'21.3.16 이후
4.931/ 100,000 (연 1.8%)	4.383/ 100,000 (연 1.6%)	4.931/ 100,000 (연 1.8%)	5.753/ 100,000 (연 2.1%)	4.931/ 100,000 (연 1.8%)	3.288/ 100,000 (연 1.2%)

(참고사항) 개정규정의 부칙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의 구체적인 적용

적용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2월 11일 시행령 개정 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분할납부하고 있는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하려고 하는 납세의무자는 분할납부세액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전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2020년 4월 30일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해야 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한 이후의 연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정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해야 함을 통지해야 합니다.

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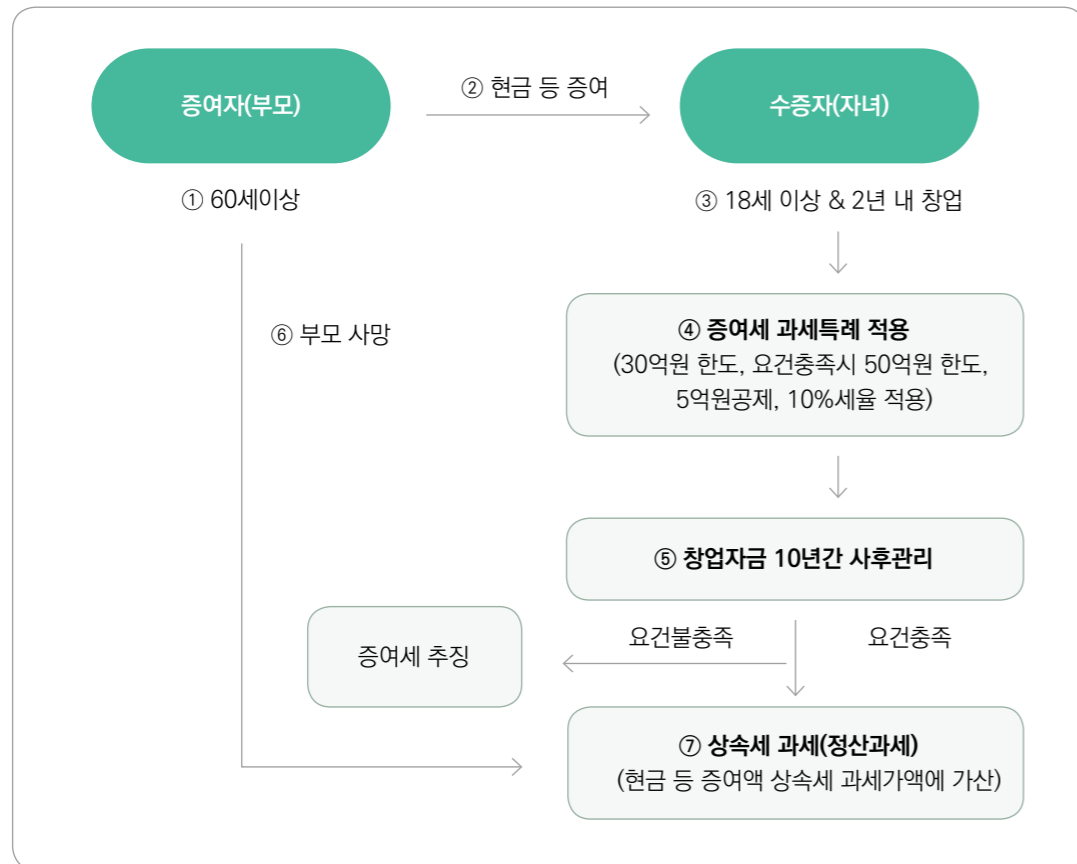
기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제5장 기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현금 등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 즉 이 제도를 활용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최대 30억원, 2016년 1월 1후 증여분부터는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후 부모가 사망하면 증여당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로 정산하게 됩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는 앞에서 설명한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비해 그 중요도가 떨어지므로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약

구분	내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업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부 또는 모의 부모도 포함)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을 2006.1.1.이후 증여받은 경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 한도,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한 경우 50억원 한도)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 불가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세율 10% 적용

1-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창업자금 과세특례”라고 합니다)는 적용 대상인 증여자와 수증자 요건, 창업자금 해당 자산의 요건, 창업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증여자와 수증자

1) 증여자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2) 수증자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수증자란 창업하고자 하는 18세 이상의 거주자를 말합니다.

(2) 창업자금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창업자금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 ①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 등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 ②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합니다) 및 임차료 지급액

여기서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제외한 이유는 부동산 등의 경우 증여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창업자금으로 토지 그 자체를 증여할 경우 시가 30억원의 토지를 현금화하여 증여할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의 부담분만큼 조세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父소유 시가 30억원의 토지를 자에게 증여한 경우(양도시 양도소득세는 10억원으로 가정함)

- 현금화하여 증여시 양도소득세 10억원을 납부한 나머지 금액만 증여가 가능
=> 증여가능금액 18억 5천만원(30억원-양도소득세 10억원-특례적용 증여세 1억 5천만원)
- 부동산으로 증여시 30억원 전액 증여가 가능
=> 증여가능금액 27억 5천만원(30억원-양도소득세 0억원-특례적용 증여세 2억 5천만원)

(참고) 창업자금의 개정연혁

2016년 2월 4일 이전	2016년 2월 5일 이후
소득령 §94①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 증여재산(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령 §94①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 증여재산 중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및 임차보증금(전세금)·임차료 지급액

※ 창업자금에서 제외되는 재산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 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촉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촉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촉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 제1항 제13호 및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

(3) 창업의 범위 및 창업자금의 사용기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대상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합니다.

1) 창업의 범위

창업이란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2016년 2월 5일 증여분부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봅니다.

또한 ‘창업대상 중소기업’이란 201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나. 뉴스제공업
 -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가. 변호사업
 - 나. 변리사업
 - 다. 법무사업
 - 라. 공인회계사업
 - 마. 세무사업
 - 바. 수의업
 -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가. 자영예술가

- 나. 오락장 운영업
-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참고) 창업자금 중소기업 범위 개정연혁

'06.01.01~'07.12.31.	'08.01.01~'13.12.31.	'14.01.01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업종 다음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소비성 서비스업 - 부동산 임대 및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영위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자금 중소기업 - 조특법상 중소기업 (*)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사업은 제외 (**) 음식점업은 포함 (과세유흥장소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과 일치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 ③) 해당 업종

(참고) 창업 개정연혁

2016년 2월 4일 이전	2016년 2월 5일 이후
사업자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 • 사업확장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
- ③ 폐업 후 다시 개시한 사업이 폐업 전과 동일한 종류일 경우
- ④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하던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의 운용자금 및 대체설비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은 기업 사업의 일부분을 매각한 자금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한 후 창업자금으로 기존사업을 축소 전 상태로 환원해 놓는 등 개인의 부동산 투기자금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30억원을 한도로 2회 이상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위 ③, ④, ⑤를 적용하지 않고 창업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3) 창업의 기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합니다

4) 창업자금의 사용기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2019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은 3년)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4) 특례신청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신청서(「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창업과 관련된 유권해석 사례

- 심리상담센터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상속증여-2112, 2019.02.11.)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에 해당하는 커피전문점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상속증여-0204, 2017.02.14.)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임대건물에서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본인이 직접 음식점 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음식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상속증여-0050, 2017.01.24.)
- 차체제작, 판금 및 도장 등의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보는 것으로서,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아래의 통계청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법인-0470, 2015.07.13.)

통계청 통계기준팀-384, 2008.11.26.

- 교통사고, 폐차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을 재생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차체제작, 판금 및 도장 등의 재생활동이나 자동차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수행되는 구조변경(탱크로리차, 사다리차, 청소차 등의 특장차)의 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3012 자동차 제조업”
- 자동차의 형상적 기능유지를 위한 고장 수리활동이나 부품, 오일, 타이어 등의 교체, 내장품 수리 등의 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9521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 프랜차이즈(맥도날드 사업)의 기존 가맹점 매장을 임차하여 가맹점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상속증여세과-273, 2013.06.26.)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로부터 창업자금(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재산세과-345, 2011.07.19.)

-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모두 합하여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까지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창업 후 대출금 상환목적으로 증여받은 자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상속증여-3674, 2020.03.30.)
-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상속증여세과-125, 2013.05.20.)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2항에 따라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며, “창업”이라 함은 「소득세법」제168조 제1항, 「법인세법」제111조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상속증여세과-012220-2015.11.23.)
- 중소기업을 창업(개인사업자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하는 것을 말함)한 후에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그 자금을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치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재산세과-446, 2012.12.10.)
-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서면 4팀-1393, 2007.04.30.)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법인을 설립하고 증여자인 부모와 함께 해당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해당 창업자금에 대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재산세과-291, 2012.08.21.)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로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 같은 조 제2항 각호의1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또한,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재산세과-198, 2011.04.19.)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항에 따라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은 창업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산세과-716, 2010.09.30.)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의 규정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냉동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일반창고업에 사용되던 자산 중 토지만을 매입한 후 냉동창고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산세과-3468, 2008.10.24.)
-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그 자금으로 증자를 하여 당초 창업자금중소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재산세과-247, 2012.07.04.)
- 부모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한 창업자금”과 창업자금외 “현금”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창업자금외 현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상속증여세과-372, 2014.09.25.)

1-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창업하지 않은 경우 또는 창업목적 외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해당 금액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합니다. 이 경우 1일 10만분의 25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1) 창업자금 사용명세 제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등이 포함된 창업자금 사용명세(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합니다)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text{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text{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금액} \times \frac{3}{1,000}$$

(*)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 제1항 제5호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산세는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참고사항) 창업자금 사용명세 제출내용

여기서 제출하는 창업자금 사용명세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①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 ②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③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2) 창업 및 창업자금 사용 등에 대한 사후관리

1)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인한 증여세 추징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①부터 ⑦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재계산한 후 부과하며,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합니다.

- ①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않거나, 창업으로 보지 않은 경우 : 창업자금 전체
- ② 창업자금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 ③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창업자금
-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창업자금
- ⑤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 등(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 등
- ⑥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 포함)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
- ⑦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 3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 여기서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하며, 근로자의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모두 더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text{창업한 날의 근로자 수} - (\text{창업을 통해 신규 고용한 인원수} - 10\text{명})$$

2)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사후관리 사유 ⑥의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 ㉡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합니다)
- ② 다음의 경우는 위 사후관리 사유 ⑥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한 후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3) 증여세를 부과할 때 가산하는 이자상당액

위와 같이 창업자금 사용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반하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아래와 같이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합니다.

$$\text{이자상당액} = \text{결정한 증여세액} \times \frac{\text{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100,000} \times \frac{25}{100,000}$$

여기서 결정한 증여세액이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과세특례에 따른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추징〉

추징사유	추징대상금액	가산하는 이자상당액
2년 내 창업하지 않은 경우	창업자금	추징대상금액에 대한 결정 증여세액 ×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 1일 25/100,000
창업자금으로 타업종을 영위	타업종 창업자금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당초 창업사업과 무관하게 사용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 (가치증가분 포함)을 타용도로 사용	다른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	
창업후 10년 이내에 수증자의 사망 또는 당해 사업을 폐업·휴업	창업자금과 이로 인한 가치증가분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5년 이내 근로자수가 줄어든 경우 (* 창업한 날의 근로자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 고용한 인원수-10명))	3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비교〉

구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과세구조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개시 시점에 정산과세	
수증자	1인에 한하지 않음	1인에 한하지 않음
대상재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이외의 모든 재산	주식(출자지분)
대상중소기업	법인, 개인	법인
한도	30억원(또는 50억원)	100억원
법인기업의 최대주주요건	해당 없음	해당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와 관련된 유권해석 사례

- 일반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개시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로 보고 있으나,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이와 달리 ‘창업’을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같이 사업자등록이후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2016.1.1.에 법률개정이 이루어졌고 법률개정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자금을 증여받아 증여일 이전 사업자등록한 쟁점사업장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창업자금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2019중0358, 2019.06.17.)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에 따라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개인사업을 창업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창업 후 10년 이내에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의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상속증여세과-0009, 2015.02.26.)
→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한 경우 일반적이 폐업과는 달리 기업의 형태만 변경되어 그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상 필요에 의한 폐업’으로 보아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임
-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중소기업이 당해 창업자금으로 국외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재산세과-317, 2011.07.04.)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해당 창업자금과 대출금 등의 자금을 합하여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고 해당 사업용 자산 중 일부를 해당 사업목적외의 사업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사업목적외 사업용도로 사용한 창업자금 부분은 같은 조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증여세 및 그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임. 이 경우 창업자금의 해당 사업목적 사용부분에 대한 실지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실지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업목적외 사업용도로 사용한 창업자금 부분의 계산은 사업용 자산 중 사업목적외 사업용도로 사용한 부분의 취득금액을 증여받은 창업자금과 대출금 등의 자금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1, 2011.06.16.)
→ 이를 구체적인 숫자로 풀어보면 창업자금 10억원, 대출금 5억원으로 사업용자산인 토지, 건물을 취득하고 그 중 1/2를 사업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① 사업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부분(1/2)에 대한 취득가액 : 7.5억원(15억원×1/2) ② 창업자금과 대출금 비율로 안분계산 : 7.5억원×10억원/15억원)=5억원
- 형제인 A와 B가 아버지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서로 다른 장소에 [가]와 [나]의 공동사업을 창업하고 그 공동사업 계약을 해지하여 각자의 1인 단독 사업장으로 한 후 A가 그의 단독사업인 [가]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8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부과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법규과-528, 2013.05.09.)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에 따라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법인과 개인사업을 각각 창업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창업 후 10년 이내에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에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5 제8항 제2호 나목에 규정한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재산세과-167, 2009.09.09.)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8항 제2호 단서규정에 따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또는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폐업 후 다시 개업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한 손실금액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보지는 않는 것임(재산세과-098, 2012.03.09.)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어 그 창업자금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4항, 제6항(사후관리)을 적용하는 것임(재산세제과-678, 2011.08.22.)
-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재산세과-346, 2010.05.28.)
→ 본 사례는 의사인 증여자가 아버지로부터 창업자금으로 현금을 증여받아 의원을 개원할 때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증여받은 현금으로 매입한 토지 및 신축한 건물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였으며 배우자에게 증여한 창업자금은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본 사례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는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및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이 포함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95, 2007.10.09.)

1-3.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의 유의사항

거주자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30억원(2016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1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50억원)을 한도로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 1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창업자금의 증여한도

창업자금은 2회 이상 증여받거나 父 또는 母로부터 각각 증여받을 수 있으며 그 증여액은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또는 5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2) 과세표준 및 세율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여 계산하며, 세율은 10%로 합니다. 따라서 과세가액 30억원(일정요건 충족시 50억원)을 한도로 적용하며,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3) 증여자가 사망할 때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창업자금에 대한 상속세 정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창업자금은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정산합니다. 그러나 상속공제적용의 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3호 “상증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속공제의 한도액을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지 않고 전액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증여세액공제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을 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5) 신고세액공제의 배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분납과 연부연납은 가능하지만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창업자금 외의 일반 증여재산가액과의 합산과세 배제

일반증여의 경우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배제 증여재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그러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창업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동일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재산만 합산합니다). 즉, 창업자금은 창업자금대로 합산하며, 10년 이내의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대로 합산합니다. 이는 일반증여와 창업자금 과세특례 적용 시 공제되는 금액 및 적용되는 세율이 각각 다르고, 만일 이를 합산과세 한다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취지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7)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적용 불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증여자가 동일한 경우 수증자인 1거주자가 증여세 과세특례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같이 적용받지 못합니다.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과 관련된 유권해석 사례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사후관리 적용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하여 창업자금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창업자금 사후관리 적용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78, 2011.08.22.)
- 부모로부터 2인이 증여받은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 수증자별로 각각 창업자금 증여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수증자별로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재산세과-4457, 2008.12.30.)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수정신고할 경우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적용받은 거주자는 같은 법 제30조의6에 따른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상속증여세과-395, 2013.07.22.)

<일반적인 증여와 창업자금 및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비교>

구분	일반적인 증여	창업자금 과세특례	기업승계 과세특례
증여세 과세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천만원	10년간 5억원
	증여세율	10%~50%의 초과누진세율	10% 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은 20%)
	합산과세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에 10년간 합산하여 과세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및 기업승계 주식 등 외의 다른 증여재산가액에 합산과세하지 않음
	신고세액공제	○	×
상속세 과세	합산과세	10년간 합산	합산기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합산
	상속공제한도	증여재산공제 등을 초과하는 가액은 적용 ○	적용 ×
	증여세액공제	공제한도 안에서 세액공제	공제한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증여세액을 세액공제

(참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구분	증여세 10% 과세특례 적용 요건	
적용대상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제외한 재산 중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및 임차보증금(전세금)·임차료 지급액	
증여한도	• 수증자별로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일정요건 충족시 50억원)	
사전요건	업종	• 창업자금으로 조특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업종을 영위해야 함
	규모	• 창업자금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이어야 함
	증여시기	• 제한없음
	증여자	•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 시 조부모포함)이어야 함
	수증자	•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이어야 함
사후요건	창업요건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함
	창업자금 사용요건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기타창업자금 추징요건	창업하지 않은 다음의 경우 •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거나, 창업으로 보지 않은 경우 • 창업자금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구분		증여세 10% 과세특례 적용 요건
사후요건	기타창업자금 추징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창업 후 10년 이내에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 창업 후 5년간 고용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사후요건 위반과 증여세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사후요건을 위반하면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가산세) 추징함

2.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 확인제도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1996년 9월 30일 이전은 7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되어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 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국세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사정에 대해 건의한 결과,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의 개정을 통해 2014년 6월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기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1997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했던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실명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실제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미리 인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실명확인에 대한 입증문제로 인해 기업상속공제나 증여세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던 납세의무자에게는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제도임에 틀림없으나, 이와는 다른 목적으로 조세회피 등을 하기 위해 실명전환하는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과세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1)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절차

주주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전상담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전에 가까운 세무서(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신청대상자 요건 해당여부, 확인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제출할 서류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2)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신청인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와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소유자 환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 신청인(실제소유자) 및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 확인서 또는 진술서(신분증사본 첨부)
- 임의 제출서류(제출하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주식대금납입·배당금 수령 계좌 등 금융자료
 - 신탁약정서, 설립당시 정관·실제주주명부, 확정판결문 등

3) 실제소유자의 확인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통일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간편하게 실제소유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 ① 신청서 내용과 제출증빙 등을 근거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며, 실명전환주식 가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합니다.
- ② 자문위원회 심의결과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우편질문, 현장확인 등 추가 확인절차를 거쳐 실제소유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실제소유자 여부 판정결과 통지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여부를 판정하여 처리한 후 신청인에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2)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실질주주인 실제소유자 명의로 실명전환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확인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 요건

실명전환하고자 하는 주식발행 법인이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의 요건

중소기업이란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① 업종기준 : 제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중소기업기본법」이 모든 업종을 적용하는 것과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② 규모기준 : 종업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기준 이내일 것
- ③ 독립성기준 :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 ④ 졸업기준 : 위 ①~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설립일 및 명의신탁 요건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발행한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강제적으로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이 발생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한 명의신탁의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는 요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에는 「상법」 제418조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주주배정방식으로 균등배정되거나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원인으로 명의수탁자가 새롭게 취득한 주식을 포함합니다.

3) 신청인 및 명의수탁자 요건

실명전환 대상 주식 발행법인의 설립 당시에 실제소유자(신청인) 및 명의수탁자가 모두 해당 법인의 발기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4) 확인신청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실제소유자(신청인)는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합니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제 담당과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을 말합니다. 이하에서 “신청서”라 합니다)
- ②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을 말합니다)
- ③ 주식발행법인이 당초 명의자와 실제소유자 인적사항, 실명전환(명의개서)일, 실명전환주식수 등을

확인하여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이 경우 주식발행법인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한 명의개서대행회사(이하 “명의개서대행기관”이라 합니다)에 주식을 예탁한 경우에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포함합니다.

- ④ 주식 등을 명의신탁한 사유·경위 등에 관한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의 확인서 또는 진술서 및 명의수탁자의 신분증 사본

※ 실명전환하는 주식의 평가방법

실명전환하는 명의신탁주식의 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1주당가액에 실명전환주식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①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즉,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합니다.

② 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

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은, 실명전환일 이전 이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불문합니다)의 평균액에 의합니다. 다만, 실명전환일부터 신청접수일까지의 기간이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명전환일 이전 2개월부터 신청접수일까지 기간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3)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1) 일반확인절차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확인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제출된 서류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판정한 후 통보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실제소유자 인정여부를 처리합니다.

- ① 실명전환주식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 ② 신청서 및 제출 서류만으로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일반확인인 서류검토만으로 “실제소유자 인정”, “실제소유자 불인정”하거나,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제소유자 인정”, “실제소유자 불인정”, “추가 확인처리”의 3가지 유형으로 결정하여 처리합니다.

2) 추가 확인절차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처리과정이거나 실제소유자 여부를 판정한 이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처리에 준하는 정밀검증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추가 확인절차는 실제소유자 여부를 결정하여 “실제소유자 인정”, “실제소유자 불인정”의 2가지 유형으로 처리합니다.

- ① 일반 확인신청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② 같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일인이 새로운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신청을 하는 등 2회 이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③ 주주명부 등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재된 주식 중에서 일부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고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 ④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그 신청을 취하하거나 반력을 요청하는 경우로 과세여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⑥ 처리 결과통지를 한 후, 소송 등을 원인으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에 의해 새로운 명의신탁자가 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4) 실제소유자 여부 처리 결과의 통지

1) 실제소유자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 결과 실제소유자가 실명전환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NTIS(엔티스)의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실제소유자에 대한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에 대해 검토하게 됩니다. 즉, 해당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실제소유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 결과 실제소유자가 실명전환하는 것이 아닌 것(실제소유자 불인정)으로 결정되어 통지되는 경우에는 거래실질에 따라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의 과세여부에 대해, 무상거래인 경우에는 증여세 등의 과세여부에 대해 검토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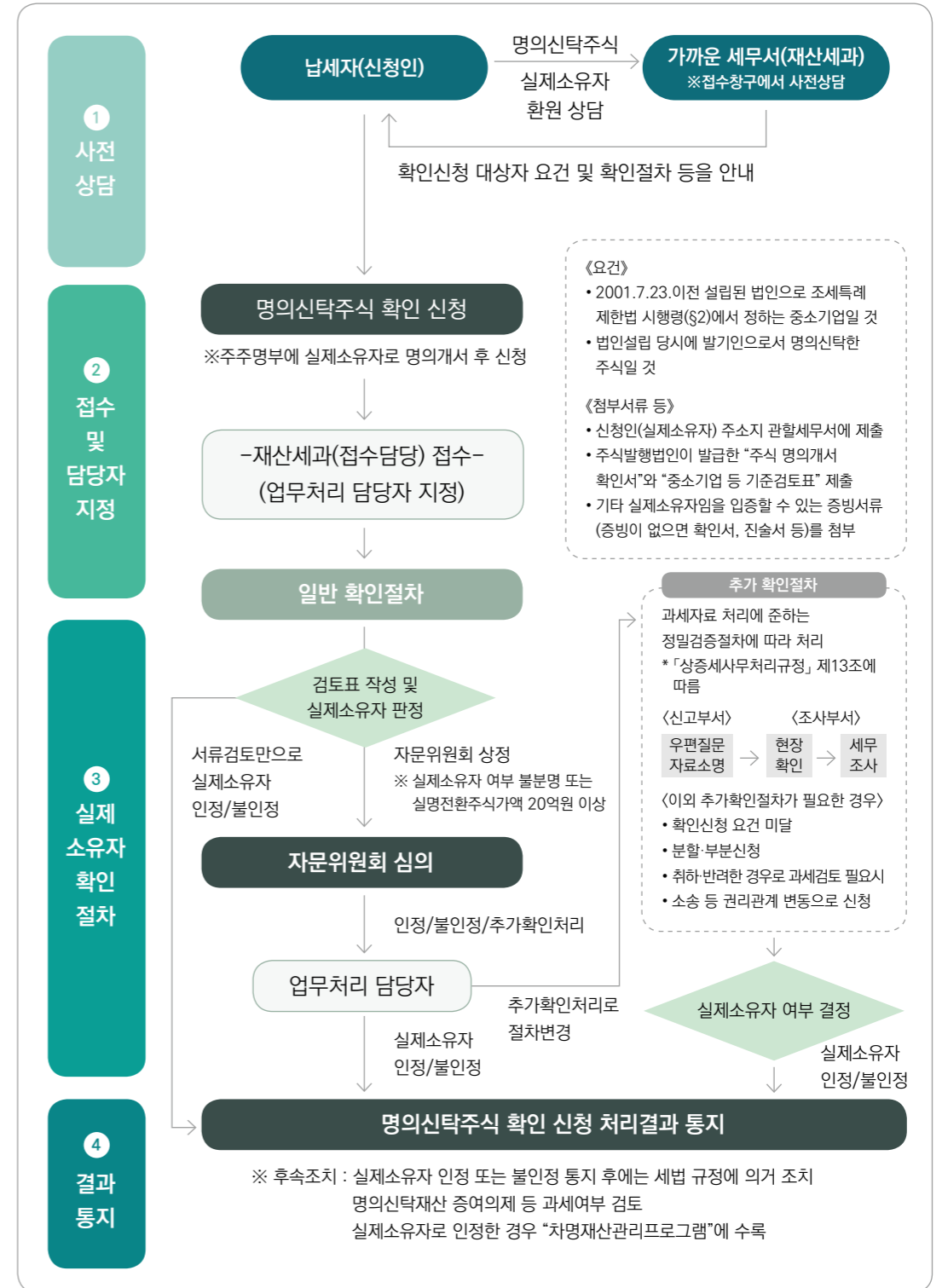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

- ①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실제로 소유하는 자(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실제소유자”라 한다)가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 등”이라 한다)에 등재하였거나 명의개서한 주식(이하 이 조에서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이하 이 조에서 “실명전환”이라 한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는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가 제출되기 전이라도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에 따른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이하 이 조에서 “확인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실명전환 전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3. 제2호의 설립 당시 명의신탁주식에는 법인설립 이후에 「상법」 제418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주주배정방식으로 배정된 신주를 기존주주가 실권 없이 인수하는 증자(이하 이 조에서 “균등증자”라고 하며,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원인으로 증자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가 새로이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신청을 하는 실제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세 담당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
 2.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을 말한다)
 3. 주식발행법인이 당초 명의자와 실제소유자 인적사항, 실명전환(명의개서)일, 실명전환주식수 등을 확인하여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이 경우 주식발행법인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한 명의개서대행회사(이하 “명의개서대행기관”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주식을 예탁한 경우에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포함한다.
 4. 주식등을 명의신탁한 사유·경위 등에 관한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의 확인서 또는 진술서 및 명의수탁자의 신분증 사본

- ③ 세무서장(재산세세 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제출된 서류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제소유자 여부를 판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④ 세무서장(재산세세 담당과장)은 실제소유자(신청인)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실제소유자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실명전환주식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2. 신청서 및 제출 서류만으로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⑤ 제4항 제1호의 실명전환주식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1주당가액에 실명전환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법인이 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명전환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실명전환일부터 신청접수일까지의 기간이 2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명전환일 이전 2개월부터 신청접수일까지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2. 제1호 이외의 법인은 시행령 제54조의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⑥ 세무서장(재산세세 담당과장)은 제4항에 따른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두며,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⑦ 세무서장(재산세세 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에 대해서 실제소유자 여부를 판정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자(대리인을 제외한다)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등에 대한 통지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⑧ 세무서장(재산세세 담당과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명의신탁일부부터 실명전환일까지 기간에 대한 조세탈루 여부를 검토하고,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여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수탁자(또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세세 담당과장)에게 그 사실을 해당 신청서 및 관련서류의 사본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 ⑨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처리과정이거나 실제소유자 여부를 판정한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같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일인이 새로운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신청을 하는 등 2회 이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3. 주주명부 등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재된 주식 중에서 일부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고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4. 제4항에 따라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5.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그 신청을 취하하거나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로 과세여부 검토가 필요한 경우
 6. 제7항에 의한 결과통지를 한 후, 소송 등을 원인으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에 의해 새로운 명의신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 ⑩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실제소유자를 확인한 결과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 흐름도〉



※ 명의신탁증여의제의 내용과 명의신탁한 주식의 처리

1. 개요

명의신탁이란 대내적 관계에서 실질소유자인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대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실질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납세자가 입증하면 증여의제로 보지 않게 됩니다.

명의신탁 해지약정을 통해 본인명의로 주식을 되찾아 온 경우, 명의신탁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수탁자가 명의신탁을 받아놓고 이를 부인하며 자신의 주식이라고 명의이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명의신탁 해지소송을 통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입증자료의 부족으로 패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주식명의신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명의신탁 증여시점의 세법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시점의 해당 세법 규정 중 국세부와 제척기간, 주식 명의신탁의 범위, 주식의 할증평가 또는 할증평가 배제 규정, 증여재산공제 규정, 증여세 과세표준 규정, 증여세율 규정, 가산세 규정, 비상장주식평가방법 등을 적용해야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2. 명의신탁의 입증 방법

명의신탁 당시 신탁자가 전부 주금을 납입했음을 입증하거나,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송금하고, 수탁자가 이를 받아서 주금을 납입하였음을 입증하게 됩니다. 명의신탁 약정서로도 입증이 가능하지만 이는 공증을 받았을 때 이야기이고 공증을 받지 않았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명의신탁 이후엔, 신탁자가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입금하는 등 회사의 실질 소유자는 신탁자임을 입증하거나, 수탁자가 배당금을 받았으나 신탁자에게 송금(Money-back)했고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수탁자가 아닌 신탁자가 납부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또한, 추가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신탁자가 수탁자분까지 전부 납입했거나 수탁자에게 송금해 납입했음을 입증해도 됩니다.

3. 증여의제 시기 및 증여세 과세

다음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실질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실명제의 시행으로 별도의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유상증자주식도 증여재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자일의 평가가액에 의하게 됩니다.

- ① 명의신탁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② 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어야 합니다.
- ③ 소유권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합니다.
- ④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명의신탁과 관련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명의신탁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회피, 실제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회피 등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예시 -

-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한 경우(「상법」 제208조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 수를 1996년 9월 30일까지는 7인 이상, 1996년 10월 1일부터 2001년 7월 23일까지는 3인 이상, 2001년 7월 24일부터는 1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 입사시켜 중용하기 위한 경우
- 토목공사업의 면허기준을 맞추기 위해 증자를 실시하면서 종전 소유주식 수에 따라 신주인수권이 부여됨에 따라 기존 명의자가 신주를 인수하게 된 경우
- 회사 설립 후 30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세를 체납하거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나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없는 경우
- 명의신탁 이후 10년 이상 주식의 실질소유자의 연간 소득액이 「소득세법」상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설립 회사가 배당을 실시하였다고 하여도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배당과 관련해 과세관청이 납부받게 되는 소득세액은 명의신탁 전과 후가 별다른 차이가 없어 사실상 회피되는 종합소득세액이 거의 없는 경우

- 신방수외, 최고집사장의 가업승계 분투기, 매일경제신문사, 2014년, P264 수정

3.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최대주주 소유주식이 일반주주 소유주식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포함되어 있는 경영권(지배권) 프리미엄을 정당하게 계산해 그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과거 세법 개정 전 할증평가대상은 주식 발행회사의 상장 여부를 불문하고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은 지분별로 할증평가되었으나,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기업승계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지분을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에 의해 할증평가 하지 않았습니다.

개정 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에 따른 할증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할증비율	
	일반법인	중소기업
50%이하	20%	10%
50%초과	30%	15%

그러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는 위의 표와 같이 지분율 및 기업규모에 따라 할증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던 것을 기업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적용하고 지분율에 따른 차등은 미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던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규정을 삭제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기업승계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지분 등 일정한 주식지분에 대해서는 이를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할증평가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할증비율	20%	0%

또한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이외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 등에 대해서도 할증평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할증평가의 전제인 경영권프리미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적정한 시가의 산정이라는 평가의 목적에 따라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경우

② 평가기준일 전후 상속재산은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이 경우 그 거래가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합니다. 그 이유는 그 매매사례가격이 시가로서 인정되기에 적합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할증평가가 필요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③ 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이는 주식자체 증여가 아닌 변칙적 거래로 인한 간접이익의 증여이기 때문에 할증평가 규정을 배제합니다.

④ 순환출자주식. 즉,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할증평가에서 제외합니다(이전에는 1차 출자분에 한해 할증평가를 하였으나, 과도한 중복 할증 방지를 위해 2021년 2월 17일 상속세 등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는 1차 출자분에 대해서도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⑤ 사업개시 3년 미만의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이는 사업초기에 결손이 발생하는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형성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⑥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⑦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 이내의 기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이는 최대주주 이외의 자의 입장에서는 경영권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입니다.

⑧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2016년 1월 1일 이후 평가분부터 적용함)

(개정사항)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개선

〈개정내용〉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위에서 설명한 할증평가 배제사유 중 '④'를 말합니다)에는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1년 2월 27일 이후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보론 : 특수관계인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 후단에서는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쌍방특수관계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본인 및 본인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합니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고 합니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2. 사용자(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합니다)이나 사용자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① 사용자 :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

(*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직임원에 대해서는 ‘퇴직 후 3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별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② 2014년 2월 2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사외이사’였던 자가 퇴임한 경우 임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이 규정은 2014년 2월 21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2019년 2월 1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퇴직임원’을 ‘퇴직 후 3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퇴직임원의 범위를 조정하였고, 이 규정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④ 위에서 설명한 개정사항을 종합할 때 2019년 2월 12일 시행령 개정 전에는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으로 퇴직임원을 정의할 수 있었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퇴직한 임원은 사용인의 범위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②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 다음 ‘6’에 해당하는 법인
- ㉡ 다음 ‘7’에 해당하는 법인
- ㉢ ‘1’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위 ①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합니다.)

②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합니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위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정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7조의5, 제17조의8 및 제18조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회사

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대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명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 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4. 본인, 위 '1'부터 '3'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1'부터 '3'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위 '3'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위 '1'부터 '5'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1'부터 '5'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합니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위 '1'부터 '6'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1'부터 '6'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위 '1'부터 '7'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1'부터 '7'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6장 재산의 평가



제6장 재산의 평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정확하게 신고·납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우선이 될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의 상속 또는 증여재산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각 재산별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제외한 각 재산의 평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평가기준일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실종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이고,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무신고나 과소신고로 추정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당시의 가액으로 소급하여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구분	평가기준일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재산 처분일
사전증여재산	각 증여일

2. 평가의 원칙

(1) 평가의 방법

1) 원칙 : 시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예외 :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해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규정된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고 합니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을 우선 적용하고,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적용하며, 이 경우에도 그 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는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에 상속세·증여세 신고일까지의 가액만 시가로 인정하게 됩니다.

3) 평가의 특례 : 저당권 등이 설정된 가액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해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2) 시가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판례에서는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며, 거래에 의해 형성된 것이어야 하고, 그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이어야 하며, 그 기준시점의 재산의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할 것이고, 평가기준일과 해당 재산의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3개월까지로 하며 이하에서는 이를 ‘평가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및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 ①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 거래가액(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
- ② 해당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합니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감정가액의 평균액(다만, 상속세·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감정가액은 제외합니다). 여기서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야 합니다.
- ③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제외합니다.
 - ㉠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 ㉢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개시된 후 수익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 ㉣ 최대주주 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 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다만, ①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②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등에 해당하는 날까지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합니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세부사항) 시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 매매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 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실질거래내용과 관계없이 거래당사자간에 정한 토지거래계약 신고금액
- ③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다만,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감정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 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해당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무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②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

(3) 수용·공매·경매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 ①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②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 1회 공매 후 1년안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않은 때
 -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않으면 그 재산가액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때
- ③ 계약 불이행 등으로 공매가 무효가 된 경우
- ④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 발행주식 액면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경매·공매가격에서 제외

- ⑤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 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3. 보충적 평가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요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은 다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하에서는 주요자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부동산은 오늘날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인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동산가치의 성격상 시가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의견의 일치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의 종류별 재산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로 정의됩니다.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외의 토지(이하 “일반지역”이라고 합니다)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토지(이하 “지정지역”이라고 합니다)로 구분하고, 다시 일반지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시지가가 있는 경우와 개별공시시지가가 없는 경우로 구분되며 평가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평가방법
일반지역토지	개별공시시지가 있는 토지	개별공시시지가
	개별공시시지가 없는 토지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해 과세관청이 평가한 가액
지정지역토지	개별공시시지가 있는 토지	개별공시시지가×배율
	개별공시시지가 없는 토지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해 과세관청이 평가한 가액×배율

2) 건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평가하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그 외의 일반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용도지수, 위치지수, 신축연도에 따른 감가율, 개별건물의 특성 등을 감안해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에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의 고시는 개별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로 봅니다.

3) 주택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고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이외의 주택을 단독주택이라고 합니다.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교통부장관의 표준주택가격 시·군·구청장의 개별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 고시가격

4)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부수토지 포함)을 말하며, “상업용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과 영업시설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부수토지 포함)을 말합니다.

지정지역 내	지정지역 외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 : 개별공시지가 건물 : 일반건물 평가액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 해당 부동산의 완성시기가 도래하는 때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아파트 당첨권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해당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평가합니다(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생산자물가지수환산가액에 따릅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 조합원 권리가액 =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가격 ×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수입 - 총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3) 특정시설물 이용권

“특정시설물 이용권”이란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회원권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해당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을 말하며,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헬스클럽회원권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골프회원권의 평가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고, 명의개서가 불가능한 골프회원권은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반환받을 수 있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4) 지상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며 전세권과 지역권은 토지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지상권과 동일하나 타 물건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지상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한 해당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한 현재가치 상당액입니다.

$$\text{지상권 보충적 평가액} = \sum_{n=1}^n \frac{\text{각 연도의 수입금액}}{(1+10\%)^n}$$

n : 평가기준일로부터의 경과연수(잔존연수) 각 연도의 수입금액 = 토지가액 × 2%

(5) 그 밖의 시설물 및 구축물

“그 밖의 시설물 및 구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므로 「건축법」 등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면 그 밖의 시설물 및 구축물이란 건물과 분리가 용이하거나 일시적으로 토지에 정착해 있는 것 등으로 건물과 독립해 기능하고 독립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시설물 및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에서 경과기간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말하므로 장부상 미계상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도 취득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시설물 및 구축물의 재건축 또는 재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고 시가표준액도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임대차”란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임대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① 평가기준일 현재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 ② 임대료환산가액 :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서 정하는 율인 100분의 12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를 산식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text{평가가액} = \text{임대보증금} + \frac{\text{1년간 임대료}}{0.12}$$

※ 계산사례

“행복한 중기씨”는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중앙상가를 상속받았습니다. 이 경우 중앙상가에 대한 아래의 임대조건을 토대로 계산한 상속재산 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중앙상가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중앙상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상업용 건물이 아니라고 가정합니다.

보증금	1년간 임대료	토지 공시지가	건물 기준시가
1.2억원	48백만원	3억원	2억원

중앙상가의 평가는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 : 300,000,000원 + 200,000,000원 = 500,000,000원
- ② 임대료 환산가액 : 48,000,000원 ÷ 12% + 120,000,000원 = 520,000,000원
∴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은 5.2억원입니다.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구분에 따른 임대재산의 평가방법

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토지와 건물 전체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따라 평가한 후 토지·건물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기준시가)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합니다.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제삼자와의 임대차계약 당사자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에게 구분되어 귀속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합니다.
 - ②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중 어느 한 사람만이 제삼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에 상관없이 제삼자가 지급하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제삼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합니다.

(7)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단,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① 장부가액 :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재무상태표 상의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해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말합니다.
- 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8) 상품·제품·서화·골동품, 소유권대상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에 의합니다. 다만, 그 가액이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합니다.

- ㉗ 서화·전적
- ㉘ 도자기·토지·철물
- ㉙ 목공예·민속장신구
- ㉚ 선사유물
- ㉛ 석공예
- ㉜ 그 밖의 골동품
- ㉝ ㉗~㉜까지에 해당하지 않은 미술품

그리고 판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서화·골동품은 재고자산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상품 등의 평가방법과 같이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인 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더불어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과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역시 상품 등의 평가방법과 같습니다.

(9) 주식 및 출자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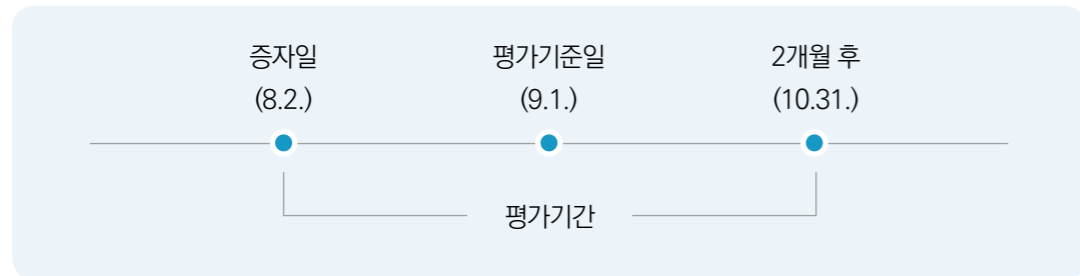
주식 및 출자지분은 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과 비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7장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사례”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이하에서는 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일반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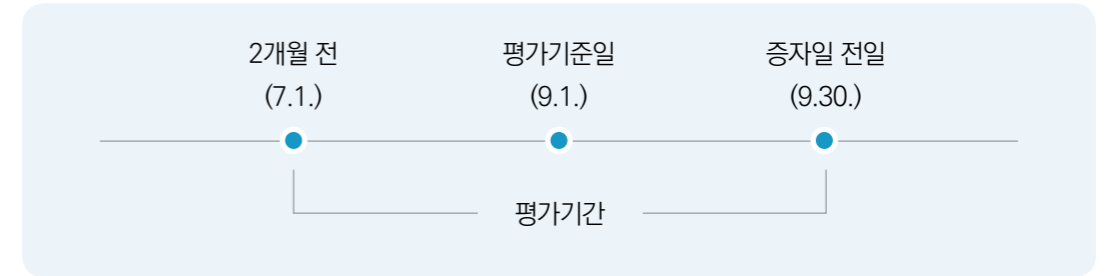
예를 들어 평가기준일이 2022년 1월 2일(영업일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라면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3월 4일까지 4개월간의 기간이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 정지일, 납회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며, 이 때 증자·합병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일·합병일의 다음 날 또는 증자일 또는 합병일의 전일을 기준으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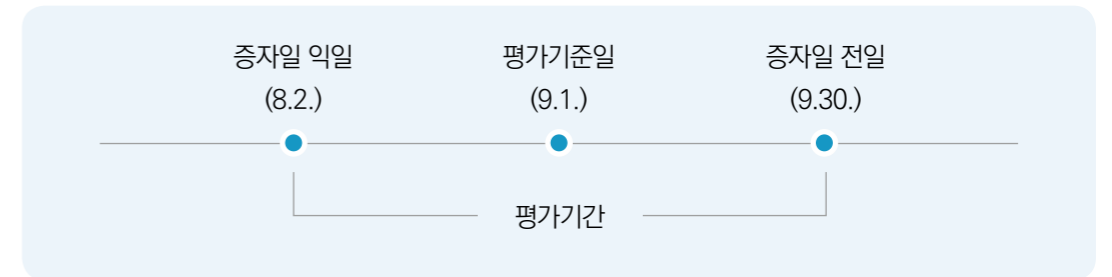
①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평가기준일 전·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국공채 및 사채

“국채”란 국가의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국가의 신용으로 설정하는 금전상의 채무 또는 그것을 표시하는 채권으로 지방채와 함께 공채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채”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등 정부관계기관이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는 채무로서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나 지방채로 나뉘게 됩니다.

또한 회사의 장기자금조달의 원천으로는 자기자본인 주식과 타인자본인 사채가 있습니다. 이 중 사채란 주식회사가 일반공중으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집단적·대량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여 부담하는 채무입니다.

1) 상장된 국채 등의 평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중 국채·공채·사채(전환사채 등은 제외합니다)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text{평가액} = \text{Max}[\text{①}, \text{②}]$$

- ①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 ②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2) 상장되지 않은 국채 등의 평가

상장되어 있지 않거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는 매입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로 직접 매입한 것은 제외합니다.
- ② 그 이외의 국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그것을 처분할 때 받을 수 있을 있다고 예상되는 처분예상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국채 등의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 방법 등을 참작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2 이상의 투자매매업자 등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매매업자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말합니다.

(11) 예금, 저금, 적금 등의 평가

예금, 저금(저축), 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뺀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text{평가액} = \text{예입액} + \text{미수이자상당액} - \text{원천징수세액 상당액}$$

※ 계산사례

〈자료〉

- 예금기간 : 2020.7.1.~2022.6.30.
- 원천징수세율 : 14%
- 평가기준일 : 2021.5.1.
- 정기에금액 : 10억원(연이자율 5%, 복리, 이자 만기시 일시지불)

〈계산내역〉

- 정기에금평가액(㉠+㉡-㉢) : 1,035,346,575원
 - ㉠ 예입금액 : 1,000,000,000원
 - ㉡ 미수이자 : 1,000,000,000원×5%×305일/365일 = 41,780,822원
 - ㉢ 원천징수세액 : 6,434,247원
 - 이자소득에대한 원천징수세액 : 41,780,822×14%=5,849,315원
 - 지방소득세 : 5,849,315×10%=584,932원

(12)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고,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합니다)이 표시된 증권을 말하며, 이러한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거래소의 기준가격이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집합투자증권 평가액

- 원칙 :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기준가격 or 집합투자업자 등이 공고한 가격
- 예외 :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 환매가격 or 평가기준일 전 최근 기준가격

(13)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무체재산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등을 말합니다.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평가액} = \text{Max}[\text{①}, \text{②}]$$

- ① 취득가액 -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②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14) 대출금 등 채권가액의 평가

대출금·외상매출금·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회수기간 미정 : 5년으로 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등으로 채권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 외의 채권(회수기간 5년 이내)
각 연도별 회수금액에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금액 $\text{현재가치} = \sum_{n=1}^n \frac{\text{회수금액(원본+이자상당액)}}{(1+r)^n}$ r = 8%(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	원본가액 + 평가기준일까지 미수이자 상당액

(15) 영업권의 평가

영업권의 평가는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를 감안한 환산가액에 따릅니다.

$$\text{영업권} = \sum_{n=1}^n \frac{\text{초과이익금액}}{(1+r)^n} = \text{초과이익금액} \times \text{연금현재가계수}(n, r)(*)$$

(* n : 영업권 지속연수, r : 초과이익환원율(10%)

여기서 초과이익금액은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5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에 일정율(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방법과 동일하며, 개인기업의 영업권을 계산할 경우 순손익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대신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자기자본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산출된 순자산가액을 말하고 자산가액에 이 영업권의 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자기자본이익률)과 (수입금액/자기자본회전율) 중 큰 금액을 자본금액으로 합니다.

(참고사항 : 매입한 무체재산권과 영업권 평가의 관계)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영업권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무체재산권 평가액을 영업권 평가액으로 합니다.

※ 계산사례

다음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영업권 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1. 평가기준일 : 2021. 7. 1
2. 각사업연도별 순손익액
2018사업연도 : 450,000,000원
2019사업연도 : 377,250,000원
2020사업연도 : 458,500,000원

3.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 1,825,000,000원
4.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 10%
5. 이자율 10%, 기간 5년의 정상연금 1원의 현재가치계수 : 3.7908

<계산내역>

- ① 평가기준일 전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458,500,000×3 + 377,250,000×2 + 450,000,000×1)÷6=430,000,000원
- ②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50%
①×50%=215,000,000원
- ③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1,825,000,000×10%=182,500,000원
- ④ 영업권 계산액
(215,000,000-182,500,000)×3.7908=123,201,000원

(16)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잔액으로 담보권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 제외)이 설정된 재산	해당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단,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함
질권 및 양도담보 재산	해당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자산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 임대보증금)
「자동차저당법」 등에 의한 자동차 등 단기소모성 재산	해당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② 외화 채권액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 ③ 당해 채권액에 재산의 물적담보 외 신용보증기관 등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채권액에서 보증액을 차감하여 평가합니다.
- ④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 및 임차보증금 채권 포함)을 담보하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참고사항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액)

공동저당권이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합니다. 이 경우 평가할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공동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양도 담보된 경우에는 평가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전체 채권액을 평가할 재산가액과 그 외의 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17)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으로 합니다.

① 원본과 수익을 받을 권리의 수익자가 같은 경우

$$\text{평가액} = \text{Max}[\text{①}, \text{②}]$$

- ① 신탁재산 가액
- ② 신탁계약의 철회·해지·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

② 원본과 수익을 받을 권리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 다음 ㉠, ㉡에 따른 가액

㉠ 원본을 받을 권리를 수익하는 경우 :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서 아래의 '㉡'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text{평가액} = \text{Max}[\text{①}, \text{②}]$$

- ① 신탁재산 가액 - 신탁의 수익 평가액
- ② 신탁계약의 철회·해지·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

㉡ 수익을 받을 권리를 수익하는 경우 : 평가기준일 현재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등을 고려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

$$\text{평가액} = \text{Max}[\text{①}, \text{②}]$$

$$\text{①} \sum_{n=1}^n \frac{(\text{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 - \text{원천징수세액 상당액})}{(1 - \text{신탁재산의 평균수익률을 감안하여 정한 이자율})^n}$$

(*) n :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 ② 신탁계약의 철회·해지·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

(18) 가상자산의 평가

가상자산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합니다)'를 말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제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② 그 밖의 가상자산 : 위 ①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회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중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격

(개정사항)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개선

<개정내용> 신탁이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평가할 때 '① 원본을 받을 권리와 수익을 받을 권리의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의 그 신탁재산의 가액'으로 하고, '② 원본을 받을 권리만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의 그 신탁재산의 가액에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1년 2월 17일 이후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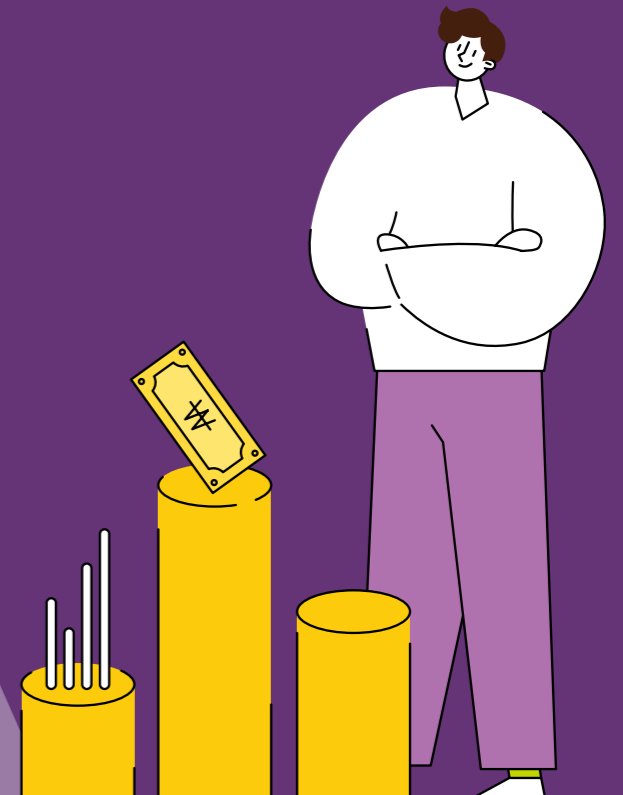
(개정사항) 가상자산 평가 근거 신설

<개정내용>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방식을 고려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그 평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7장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사례



제7장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사례

1.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1-1. 평가의 개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받은 경우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수용, 경매, 공매가 있을 경우 해당 가액을 시가로 하며, 해당 가액이 없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은 대부분 상시 거래가 가능한 유통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상장주식과 같이 경쟁적인 매매거래가 아닌 거래당사자간의 직접 거래로서 주식가액에 개인의 주관이 개입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객관적인 교환가치로서의 시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과세목적상 일정한 평가방법을 정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장법인 주식 등은 이하에서 설명할 보충적 평가방법 이외의 평가방법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주식 등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평가방법으로 인해 비상장주식 평가의 구체적 타당성과 적합성에 대한 비판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시가를 인정하지 않는 유권해석 및 판례

- 상속세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식양도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2.5. 아래와 같이 거래처 내지는 청구외법인의 직원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인바, 이를 불특정다수인간 자유로이 이루어진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조심2007서4145, 2008.7.1.).
 - 이는 다른 법인의 직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은 불특정다수인간 자유로이 이루어진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 원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식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러한 주식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 # 콘크리트의 특수관계인들 사이의 1회적인 거래로서 그 거래가격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은 없다(대법원2005두11913, 2007.12.31.).

- 이는 특수관계인들 사이의 1회적인 주식거래는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주식이 거래(1주당 50,000원, 총 발행주식 수 100,000주 중 2,000주)된 같은 날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에 쟁점 법인의 주식 500주가 1주당 50,000원으로 거래되었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이 있고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1주당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인 1,731,587원의 3.7%에 불과한 지나치게 저렴한 가액이고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단 1회 거래일 뿐 그 외의 거래가 없으며 1주당 순자산가치 793,587원에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거래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청구 외 ○○○이 2005. 12. 8. 청구 외 법인에 양도한 가액(1주당 240,000원)도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이 또한 시가로 볼 수 없다(감심2009-111, 2009.5.19.).

- 1주당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액이고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단 1회 거래뿐이므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1-2. 평가의 방법

1-2-1.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1) 원칙

이론적으로 기업의 가치는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결정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가치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상호보완적 영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하는데 법인의 수익성과 자산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려는 의도를 보인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가중평균액과 순자산가치의 80%를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1\text{주당 주식평가액} = \text{Max} \left(\frac{1\text{주당 순손익가치} \times 3 + 1\text{주당 순자산가치} \times 2}{5}, \text{순자산가치} \times 80\% \right)$$

(2)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평가방법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구성의 성격상 기업의 가치가 순자산가치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므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text{주당 주식평가액} = \text{Max} \left(\frac{1\text{주당 순손익가치} \times 2 + 1\text{주당 순자산가치} \times 3}{5}, \text{순자산가치} \times 80\% \right)$$

여기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라 함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을 말하며, 이 때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지 여부는 장부가액(토지·건물의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 판단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상속증여-557, 2013.9.23.)

(3)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래 불확실성에 따라 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는 것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오직 순자산가치에 의해서만 평가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순자산가치평가와는 달리 이 경우 순손익가치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순손익가치를 기초로 계산되는 영업권 평가액은 가산하지 않게 됩니다.

-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이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사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평가기준일 현재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경우. 단,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 ③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80% 이상인 법인으로서 이는 2018년 2월 13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함)
- ④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 ⑤ 법인의 설립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인 경우

1-2-2.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때에는 미래의 추정이익에 의해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1) 과거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수익가치는 기본적으로 계속기업의 가정하에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수익추세가 장래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제합니다. 이에 따라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10%이며 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고 합니다)로 나누어 1주당 수익가치를 계산합니다.

$$1\text{주당 순손익가액} = 1\text{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div \text{순손익가치환원율}(10\%)$$

$$1\text{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text{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times 3) + (\text{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times 2) + (\text{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times 1)\} \times 1/6$$

이 때 1주당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로 보고 계산하지만,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위 산식에서 평가기준일 “이전”이라 한 것은 평가기준일이 사업연도 종료일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평가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평가기준일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니라면,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야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예상손익을 반영해서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1)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한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하고,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아래의 사항들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합니다.

2) 가산할 금액

- ①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이자 :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이자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 ②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금액 :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과 같은 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일 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금액을 말합니다.
- ③ 기부금 이월금액 중 해당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금액 : 기부금 한도초과액으로서 한도초과된 기부금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차감을 방지하기 위해 이월해 손금산입된 한도초과금액은 가산합니다.
- ④ 법인세 계산시 반영하지 않은 외화환산이익 :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외화자산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합니다.
- 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이월 손금산입액
- ⑥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이월 손금산입액
- ⑦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환급액 : 「법인세법」 제18조 3호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환급액으로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가산하지 않은 금액을 가산합니다.
- ⑧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산입된 총당금 및 준비금이 일시 환입될 경우 그 금액이 환입될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만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준비금의 경우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하는 준비금을 평가대상법인이 3억원을 설정해 손금산입하고, 4차연도에 해당 법인이 준비금을 세법에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일시에 익금산입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순손익액의 계산은 4차, 5차, 6차연도에 각각 1억원씩 익금산입한 것으로 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3) 차감할 금액

- ① 법인세 총결정세액 :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을 말합니다.
- ②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벌금 등은 실제로 발생해 부과된 것을 말합니다.

- ③ 손금으로 용인되지 않는 공과금 :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 ④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 「법인세법」 제27의 규정에 의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 ⑤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 납부세액 :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해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합니다)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 ⑥ 기부금 한도초과액과 비지정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비지정기부금을 말합니다.
- ⑦ 접대비한도초과액 등 손금불산입액 :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의 접대비한도초과액과 접대비 관련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 ⑧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및 교육훈련비 등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 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등,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말합니다)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 ⑩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⑪ 법인세 계산시 반영하지 않은 외화환산손실 :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외화자산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뺍니다.
- ⑫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액
- ⑬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액. 여기에는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과 처분손실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액을 포함합니다.
- ⑭ 감가상각비를 결산시 반영하지 않은 경우 : 순손익액의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빼는 금액은 기업회계상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 중 「법인세법」상으로 손금불산입되는 항목들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때 이 항목들을 빼는 이유는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의 손익과는 다르더라도 그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한도금액 및 고정자산 등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시 미계상되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대상이라 하더라도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순손익액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빼는 것이 정당합니다.

⑫ 퇴직급여 : 해당 사업연도 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4)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법인세 경정으로 위 순손익액 계산요소가 변동되어 주식평가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변경된 주식평가액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순손익액에 영향을 미치는 심판청구 등 조세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심판청구 등의 결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결정으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주식평가액을 다시 평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5)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위 '2) 가산할 금액'과 '3) 차감할 금액'을 더하거나 뺀 후 아래의 ①의 금액을 더하고 ②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 ① 유상증자한 주식 등 1주당 납입금액×유상증자에 의해 증가한 주식 등 수×순손익가치 환원율 (10%)
- ② 유상감자시 지급한 1주당 금액×유상감자에 의해 감소된 주식 등 수×순손익가치 환원율 (10%)

6) 1주당 순손익액 계산을 위한 각 사업연도 주식수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이 경우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합니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주당가액의 희석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① 증자의 경우(무상증자 포함)

$$\text{환산주식수} = \text{증자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times \frac{(\text{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text{증자주식수})}{\text{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② 감자의 경우(무상감자 포함)

$$\text{환산주식수} = \text{감자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times \frac{(\text{감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text{감자주식수})}{\text{감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또한 증자 이외에도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주식배당이 있었던 경우에는 주식배당이 있기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위 “① 증자의 경우”와 같이 환산주식수에 의해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으로 해당 비상장법인의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보유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게 평가합니다.

- ①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유하는 자기주식이라면 자본에서 빼는 것이므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차감해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가합니다.
- ② 그 밖의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기주식이라면 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시키고, 자기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합니다.

※ 계산사례

1. 유·무상증자시 환산주식수의 계산

비상장법인인 센터(주)는 2020년과 2021년에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를 실시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연도	기초 주식수	유상증자	무상증자	기말 주식수
2019년	50,000	-	-	50,000
2020년	50,000	-	10,000	60,000
2021년	60,000	10,000	-	70,000

각 연도의 환산주식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연도	계산근거	환산주식수
2019년	50,000×(50,000+10,000+20,000)/50,000	70,000
2020년	60,000×(60,000+10,000)/60,000	70,000
2021년	-	70,000

2. 무상감자시 환산주식수의 계산

비상장법인인 센터(주)는 2019년 및 2021년 11월 10일 유상감자를 실시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연도	기초 주식수	유상증자	무상증자	기말 주식수
2018년	70,000	-	-	70,000
2019년	70,000	-	10,000	60,000
2020년	60,000	-	-	60,000
2021년	60,000	10,000	-	50,000

각 연도의 환산주식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연도	계산근거	환산주식수
2018년	$70,000 \times (70,000 - 10,000 - 10,000) / 70,000$	50,000
2019년	$60,000 \times (60,000 - 10,000) / 60,000$	50,000
2020년	$60,000 \times (60,000 - 10,000) / 60,000$	50,000

(2)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계산하는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으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해 할인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이 일시적·우발적인 사건에 의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아래의 사유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① 추정이익 적용대상

-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자산수증이익 등”이라 합니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 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을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증여세에 한합니다)
-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주요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합니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추정이익 정용요건

-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고할 것
-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상속세·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 1주당 추적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③ 산정기준

추정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합니다.

1-2-3. 순자산가치 평가방법

순자산가치는 본질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기업의 청산가치를 전제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하게 되며, 순자산가액이란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말합니다.

$$1\text{주당 순자산가치} = \text{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 \div \text{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순자산가액이 '0'이하의 음수이면 '0'으로 합니다.

- 순자산가액 = 영업권 포함 전 순자산가액 +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영업권
- 영업권 포함 전 순자산가액 = 자산가액 - 부채가액
- 자산가액 =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 평가차액 + 자산에 추가하는 가액
- 자산에서 제외되는 가액
- 부채가액 = 재무상태표상 부채가액 + 평가차액 + 부채에 추가하는 가액
- 부채에서 제외되는 가액

(1) 자산총액의 계산

1)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을 적용합니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무상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사업연도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가결산방식에 의해 재무제표를 확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은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2) 평가차액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종류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재무상태표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자산가액에서 가산합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자산의 보충적 평가에 대해서는 “제6장. 재산의 평가” 중 “3. 보충적 평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자산에 가산하는 금액

①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중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상 순자산의 증가, 감소를 나타내므로 기업가치에 근접하려는 목적하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유보금액은 제외합니다. 그 이유는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 또는 부채에서 가산 또는 제외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에 의해 평가하여 그 결과가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 제외대상 유보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에 의해 평가한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
- 무형고정자산(개발비) 관련 유보금액
- 제충당금 관련 유보금액
- 제준비금 관련 유보금액
- 당기에 익금불산입 유보처분된 이자(미수이자 등)
- 이연자산 및 환율조정(대) 관련 유보

② 유상증자 등

자산가액에 추가되는 유상증자금액 등이란 직전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직전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유상증자액(유상감자한 금액은 △로 차감합니다)을 말합니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현재 가결산하는 경우 무의미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자기주식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대상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평가액을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일시보유목적 등인 경우에는 자기주식 평가액을 자산에 포함하여 순자산을 계산합니다.

④ 장부에 계상된 매입한 영업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영업권은 장부에 계상된 매입한 영업권을 말하고, 다음에 설명하는 (3)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 영업권과 구별해야 합니다.

⑤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

손해배상채권 등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해서 계산하며, 이 것은 평가대상법인의 재무상태표상 계상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4) 자산에 차감하는 금액

① 선급비용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은 자산에서 차감합니다.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된 모든 선급비용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해 자산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② 무형고정자산(개발비)

개발비의 가액은 자산가액에서 제외되므로 이외의 무형고정자산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최근 조세심판원은 「법인세법」상 개발비의 정의는 '제품 상용화 전 발생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병·분할 및 사업양수도 등으로 승계받은 개발비는 최초 지출법인으로부터 사실상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차감 대상 개발비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자산가액에 포함해야 하는 것(조심2019서3341, 2020.11.06.)"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③ 증자일 전 잉여금 유보액

증자일 전 잉여금의 유보금액을 신입주주 또는 신입사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증자한 경우 신입주주 등의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에는 신입주주 등에게 분배하지 않기로 한 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이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시적 차이로 인해 세무상 납부해야할 법인세 등이 회계상의 법인세비용에 비해 큰 경우 이를 자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산이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라고 할 때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효익을 누릴 권리도 확정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은 순자산가액 평가시 자산에서 제외합니다.

(2) 부채총액의 계산

1) 재무상태표상 부채가액

자산가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부채총액을 적용합니다.

2) 평가차액

재무상태표상 부채종류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재무상태표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부채가액에 포함시키며, 미계상된 부채를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부채는 자산과 같이 평가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 적용사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부채에 가산하는 금액

① 부채로 미계상된 법인세

평가기준일에 가결산하는 경우 부채로 계상되지 않은 평가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는 부채에 가산합니다. 또한 법인이 결산을 하면서 미지급법인세를 계상하지 않아 장부상에 표기를 하지 않거나 경정으로 인해 추가고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부채에 가산해야 합니다.

② 이익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과 상여금 등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금 등은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지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청산가치를 전제로 한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에는 부채에 가산해야 합니다. 다만,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 개시 후에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배당금과 상여금은 해당 비상장주식 평가시에 부채에서 제외하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해당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잉여금 처분결의일 적용대상	상속개시일 이전	상속개시일 이후
비상장주식 평가	부채에 가산 (평가대상법인 : 미지급금)	해당사항 없음
배당금·상여금의 귀속	피상속인의 배당금·상여금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상속인의 배당금 등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③ 퇴직급여추계액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전부를 부채에 가산합니다. 이를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퇴직급여충당부채와 관련해 살펴보면 부채도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퇴직급여추계액을 부채로 가산하는 대신에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부채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④ 확정된 비용

종업원의 사망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퇴직수당, 공로금 기타 이에 준하는 금액 및 충당부채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부채에 가산합니다.

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 및 제58조 제1항·제3항에 규정된 범위 내의 것은 부채로 인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제준비금은 부채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강제된 것이므로 부채에 가산합니다.

⑥ 기타 가산하는 채무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가수금이 법인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사실상의 부채에 해당하는 경우 부채에 포함됩니다.

4) 부채에서 제외되는 금액

① 제충당금 및 제준비금

평가기준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부채, 대손충당금, 단체퇴직보험충당금 등의 제충당금은 부채에서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재무상태표상 제준비금의 합계액은 부채에서 제외됩니다. 제준비금은 조세정책상 일정기간 과세를 유예하는 제도에 불과해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한대로 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 내의 것은 부채로 인정합니다.

② 이연법인세부채

이연법인세부채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시적 차이로 인해 세무상 납부해야 할 법인세 등이 회계상의 법인세비용에 비해 작은 경우 이를 부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연법인세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부채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연법인세자산을 자산에서 제외한 것과 같이 부채에서 제외합니다.

③ 보증채무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에는 보증채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채무는 부채에 포함합니다.

(3)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 영업권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영업권 평가액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된 영업권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합니다. 이 때 부수(-)로 평가되는 것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해서 제외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영업권 평가액을 예외적으로 가산하지 않습니다.

- 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 ②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 ③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이 경우

「법인세법」 상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영업권 등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및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④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영업권의 구체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제6장 재산의 평가' 중 '3. 보충적 평가'의 '(15) 영업권의 평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을 위한 발행주식총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산정을 위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합니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되지 않은 신주는 포함되지 않지만, 발행되었다면 보통주는 물론 배당우선주 및 상환우선주도 포함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을 위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와는 달리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증자, 감자 등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를 재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목적에 따라 구분해서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①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유하는 자기주식이라면 자본에서 빼는 것이므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차감하고, 취득가액 상당액도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가합니다.
- ② 그 밖의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기주식이라면 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시키고,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합니다.

따라서 '②'의 경우 1주당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text{주당 순자산가액(A)} = \frac{[\text{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 + (\text{자기주식수} \times 1\text{주당 순자산가액(A)})]}{\text{총 발행주식수}}$$

1-2-4.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할증평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최대주주 소유주식이 일반주주 소유주식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포함되어 있는 경영권(지배권) 프리미엄을 정당하게 계산해 그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할증평가대상은 주식 발행회사의 상장 여부를 불문하고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은 지분별로 할증평가됩니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에 따른 할증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분비율	가산할 금액	
	2019.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	20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
50% 이하	일반적인 평가액×20%(일반기업에 한함)	일반적인 평가액×20%(일반기업에 한함)
50% 초과	일반적인 평가액×30%(일반기업에 한함)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기업승계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지분 등 일정한 주식지분에 대해서는 이를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할증평가 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배제규정

2019.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	20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대해서는 10%·15%를 가산하지 않고 일반적인 평가액에 따라 평가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 등에 대해서는 할증평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할증평가의 전제인 경영권프리미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적정한 시가의 산정이라는 평가의 목적에 따라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직전 3개 사업연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의 계속해서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 평가기준일 전후 상속재산이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 이 경우 그 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에 적합한 경우에 한합니다. 그 이유는 그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서 인정되기에 적합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할증평가가 필요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이는 주식자체 증여가 아닌 변칙적 거래로 인한 간접이익의 증여이기 때문에 할증평가 규정을 배제합니다.
- 순환출자주식. 즉,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할증평가에서 제외합니다(이전에는 1차 출자분에 한해 할증평가를 하였으나, 과도한 중복 할증 방지를 위해 2021년 2월 17일 상속세 등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는 1차 출자분에 대해서도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 사업개시 3년 미만의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 이내의 기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따라 해당 주식 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개정사항)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개선

〈개정내용〉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위에서 설명한 할증평가 배제사유 중 '④'를 말합니다)에는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1년 2월 27일 이후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2. 비상장주식의 평가사례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시 필수적으로 선결되어야 하는 요소로서 회사의 가치를 파악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겠지만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이해하는 더 중요한 목적은 가능한 한 평가방법을 낮추는 절세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간단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사례를 통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2-1. 주식 1주당평가액

(1) 평가대상회사의 일반현황

구분	평가대상회사
법인명	주식회사 중앙
대표이사	김 중 앙
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설립년월일	1985년 5월 5일
1주당액면가액	500원
발행주식총수	600,000주
자본금	300,000,000원
평가기준일	2021년 12월 31일

(2) 최근 3년간의 세무조정 자료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자료는 순손익가치 산정을 위한 3개년치의 세무조정계산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개별평가자산이 있는 경우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및 개별평가대상자산의 내역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세무조정과 관련된 자료와 요약재무상태표 이외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및 개별평가자산에 대한 내용은 생략합니다.

1) 3년치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단위 : 원)

구분	2021 사업연도	2020 사업연도	2019 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000,000,000	1,500,000,000	1,200,000,000

2) 3년치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세무조정 사항)-순손익액과 관련된 사항

순손익가치 산정을 위한 평가기준일 이전 3년, 2년,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상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익금산입및손금불산입			손금산입및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미수수익	200,000,000	유보	미수수익	105,000,000	유보
접대비	267,000,000	기타사외유출	미지급비용	40,000,000	유보
접대비	21,000,000	기타사외유출	퇴직급여충당부채	190,000,000	유보
범칙금	6,700,000	기타사외유출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330,000,000	유보
기부금	2,000,000	기타사외유출	감가상각누계액 (업무용승용차A)	12,000,000	유보
미지급비용	70,000,000	유보			
대손충당금	30,000,000	유보			
판매장려금	400,000,000	유보			
잡손실(손해배상금)	100,000,000	기타사외유출			
법인세비용	273,000,000	기타사외유출			
합계	1,369,700,000		합계	677,000,000	

2020년					
익금산입및손금불산입			손금산입및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미수수익	114,000,000	유보	미수수익	200,000,000	유보
접대비	344,000,000	기타사외유출	연구및인력개발 준비금	366,000,000	유보
접대비	35,000,000	기타사외유출			
범칙금	1,700,000	기타사외유출	미지급비용	86,000,000	기타
기부금	2,000,000	기타사외유출	미지급비용	86,000,000	유보
미지급비용	86,000,000	유보			
미지급비용	85,000,000	유보			
업무무관사용금액 (업무용승용차A)	4,500,000	상여			
감가상각누계액 (업무용승용차A)	6,000,000	유보			
법인세비용	249,000,000	기타사외유출			
합계	927,200,000		합계	738,000,000	

2020년					
익금산입및손금불산입			손금산입및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미수수익	215,000,000	유보	미수수익	114,000,000	유보
퇴직급여충당부채	190,000,000	유보	외화환산손실	3,000,000	유보
매도가능증권	7,000,000	기타	매도가능증권	7,000,000	유보
접대비	300,000,000	기타사외유출	대손충당금	90,000,000	유보
접대비	42,000,000	기타사외유출	퇴직급여충당부채	125,000,000	유보
범칙금	4,500,000	기타사외유출			
업무무관사용금액 (업무용승용차A)	4,000,000	상여			
감가상각누계액 (업무용승용차A)	6,000,000	유보			
기부금	11,000,000	기타사외유출			
법인세비용	145,000,000	기타사외유출			
합계	924,500,000		합계	339,000,000	

※ (참고사항)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의미와 관련된 판례

- 주식양도가 2003 사업연도의 말일인 2004년 3월 31일을 불과 하루 남겨둔 2004년 3월 30일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내용과 달리 위 주식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2003 사업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1주당 주가가액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임(대법원2010두12378, 2012.05.24.)
 - 이는 평가기준일 이전 1년(2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적용할 때 평가기준일이 사업연도 말일의 하루 전일이라면, 과거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미입니다.
- 평가기준일이 사업연도 종료일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임(조심2014전3531, 2015.02.27.)
 - 본 조세심판례는 평가기준일과 사업연도 종료일이 같은 경우, 즉 예를 들어 본사례와 같이 평가기준일과 사업연도 종료일이 2021년 12월 31일로 같은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2021년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는 2021 사업연도의 결산이 가능하므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은 최근 사업연도가 반영되어야 합리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도 순손익가치 산정을 위한 사업연도를 적용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포함하여 2021년, 2020년, 2019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였습니다.

3)평가기준일인 2021년 12월 31일 현재 세무상 유보잔액-순자산가액과 관련된 사항
순자산가액 계산을 위해 필요한 2021사업연도 말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세무상
유보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항목	유보잔액
미수수익	△105,000,000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696,000,000
감가상각비	9,1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4,150,000,000
미지급연차수당	161,000,000
미지급비용	△166,000,000
대손충당금	30,000,000
판매장려금	400,000,000
계	3,783,100,000

(3) 평가기준일 현재의 요약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과목	금액
유동자산	11,105
비유동자산	17,410
자산총계	28,515
유동부채	4,450
비유동부채	6,760
부채총계	11,210
자본금	300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17,005
자본총계	17,305
부채와 자본총계	28,515

2-2. 평가내용

(1) 평가결과의 요약

구분	금액	비고
①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평가액	17,860	2-3. 순손익가치
② 순자산가치에 의한 1주당 평가액		2-4. 순자산가치
③ 순자산가액	20,775,000,000	
④ 총발행주식수	600,000주	
⑤ 1주당 순자산가액 (③/④)	34,625	
③ 가중평균 1주당 평가액	24,566	
④ 1주당 순자산가액×80%	27,700	
⑤ 1주당 평가액=Max【③, ④】	27,700	

(*) 본 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평가방법 요약

평가대상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를 준용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 80%를 곱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text{① 1주당가액} = \text{Max}[\text{③}, \text{④}]$$

$$\text{③ 가중평균 1주당 가액} = \{(\text{주당 손익가치} \times 3) + (\text{주당순자산가치} \times 2)\} \div 5$$

$$\text{④ 주당 순자산가치} \times 80\%$$

$$\text{② 주당 순손익가치} = \frac{\text{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text{금융회사 등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 유통 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율(10\%)}}$$

$$\text{③ 주당 순자산가치} = \frac{\text{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text{발행주식총수}}$$

2-3. 순손익가치의 계산

가. 주당순손익가치

(단위 : 원, 주)

구분	사업연도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 연도의 순손익액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 연도의 순손익액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 연도의 순손익액
① 각사업연도소득		2,000,000,000	1,500,000,000	1,200,000,000
② 각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할 금액		12,000,000	-	-
③ 각사업연도소득에 차감할 금액		669,700,000	642,200,000	512,500,000
④ 순손익액(①+②-③)		1,342,300,000	857,800,000	687,500,000
⑤ 사업연도말주식수		600,000	600,000	600,000
⑥ 주당순손익액(④÷⑤)		2,237	1,430	1,146
⑦ 주당 가중평균순손익액 [{(①×3)+(②×2)+③} /6]			1,786	
⑧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			10%	
⑨ 순손익가치 (⑦÷⑧)			17,860	

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손익가치의 계산과 관련 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항목	관련조항
순손익가치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 등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순손익가치환원율”)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주당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 및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을 각각 3, 2, 1로 하여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함)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순손익액	① 연도별 주당순손익액 계산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할 항목과 차감할 항목을 가감하여 계산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 평가기준일 직전 3년인 2021. 12. 31과 2020. 12. 31 및 2019. 12. 31로 종료하는 각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구분	항목	관련조항
순손익액	② 이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총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하도록 합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각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할 금액	① 국세 및 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이자 ② 일반법인, 지주회사 등의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액 ③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의 손금산입액 ④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이월 손금산입액 ⑤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이월 손금산입액 ⑥ 외화환산이익(법인세 계산시 해당 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⑦ 기타 기획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은 없음)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금액	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 ②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에 의한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로서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③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에 의한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한 것이 아닌 공과금으로서 각사업연도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④ 「법인세법」 제27조에 의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용 ⑤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할 세액으로서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⑥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에 의한 기부금·접대비·과다경비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⑦ 「법인세법」 제28조에 의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에 의해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⑧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제136조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의해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⑨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⑩ 외화환산손실(법인세 계산시 해당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⑪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액 ⑫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액(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과 처분손실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액 포함) ⑬ 기타 기획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은 없음)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구분	항목	관련조항
사업연도말 주식수	① 각 사업연도의 주식 수는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합니다. ②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순손익가치 환원율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적용할 이자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인 10%”를 적용하였습니다.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

다. 순손익가치 평가내역

(1) 각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할 금액

평가대상회사의 경우 각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구분	2021사업연도	2020사업연도	2019사업연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	-
기부금 이월손금산입	-	-	-
이월 손금산입(업무용승용차)	12,000,000	-	-
합계	12,000,000	-	-

(2)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금액

평가대상회사의 경우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구분	2021사업연도	2020사업연도	2019사업연도
벌금·과태료 등	6,700,000	1,700,000	4,500,000
기부금	2,000,000	2,000,000	11,000,000
접대비	288,000,000	379,000,000	342,000,000
과다경비 등	-	-	-
지급이자	-	-	-
업무용승용차 손금부인(*)	-	10,500,000	10,000,000
징벌적 손해배상금	100,000,000	-	-
법인세비용	273,000,000	249,000,000	145,000,000
합계	669,700,000	642,200,000	512,500,000

(*)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손금부인액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미사용금액과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중 세법상 한
도인 8백만원 초과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사업연도말 주식수

평가대상회사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3년, 2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에는 자본금의 변동
(유무상증자 또는 유무상감자 포함)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각각 600,000주입니다.

(4) 주당 순손익가치

순손익가치는 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인 10%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2-4. 순자산가치의 계산

가. 주당순자산가치

(단위 : 원, 주)

구분	금액
①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	28,515,000,000
② 평가차액	2,950,000,000
③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395,000,000
④ (선급비용, 개발비, 이연법인세자산)	(75,000,000)
가. 자산총계 (①+②+③-④)	31,785,000,000
⑤ 재무상태표상 부채금액	11,210,000,000
⑥ 부채로 미계상된 법인세 등	-
⑦ 이익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 등	-
⑧ 퇴직급여추계액	4,150,000,000
⑨ (제준비금·제충당금)	(4,200,000,000)
⑩ (이연법인세 부채)	(150,000,000)
나. 부채총계 (⑤+⑥+⑦+⑧-⑨-⑩)	11,010,000,000
다. 영업권 포함전 순자산가액 (가-나)	20,775,000,000
라. 영업권	0
마. 순자산가액 (다+라)	20,775,000,000
바. 발행주식총수	600,000
사. 주당순자산가치	34,625

나.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액의 계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평가대상회사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과 부채가액에서 상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가산항목과 차감항목을 가감한 후의 가액에 영업권 평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부채에 가감할 항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항목	관련조항
자산에 가산할 항목	① 평가차액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재무상태표상 금액과의 차액 (다만, 평가액<장부가액이면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②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을)상의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가감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유보금액은 제외합니다. 가. 상증법 제 60조~66조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관련 유보금액 나. 무형고정자산(개발비) 관련 유보금액 다. 제충당금 및 준비금 관련 유보금액 라. 당기에 익금불산입 유보처분된 이자(△미수이자 등) 마. 「보험업법」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부인유보액	
	③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으로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것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1호
자산에서 차감할 항목	① 선급비용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합니다.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2004년부터는 개발비로 한정)	
	③ 이연법인세자산	재산상속 46014-587, 2000. 5. 15
부채에 가산할 항목	①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②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구분	항목	관련조항
부채에 가산할 항목	③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4호
	④ 총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⑤ 「법인세법」상 범위내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부채에서 차감할 항목	①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 총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 57조 제1항·제2항 및 제58조 제1항·제3항에 규정된 범위 안의 것)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4호
	② 이연법인세부채	재산상속 46014-587, 2000. 5. 15

다. 주요 자산·부채 항목별 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부채 항목별 평가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사항

구분	평가방법	관련조항
순자산가액계산 일반원칙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부터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합니다(다만,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담보채권액 등)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1. 저당권,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 4. 위탁장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즉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재산)	상증법 제66조

(2) 토지 및 건물의 평가

구분	평가방법	관련조항
토지의 평가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상증법 제61조 제1항
건물의 평가	①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 ② 대통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	상증법 제61조 제1항
임대료환가액에 의한 평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대료환산가액)과 상증법 제61조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증법 제61조 제5항

(3) 유가증권의 평가

구분	평가방법	관련조항
상장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합니다.	상증법 제63조 제1항
비상장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①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에 의합니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합니다) ②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비상장법인인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의 특례	비상장법인인 다른 비상장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비상장주식평가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습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분율에 상관없이 그 가액의 20%를 가산하되, 아래의 경우에는 동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상증법 제63조 제3항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①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등은 상장주식평가규정을 준용 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 등은 아래의 규정에 의합니다.) ②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국채 등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함)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나. 가목 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처분예상금액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 등의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4) 대출채권 등의 평가

구분	평가방법	관련조항
평가원칙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합니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5) 특정시설물이용권의 평가

구분	평가방법	관련조항
상증법상 평가방법	①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합니다. ②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에 의합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소득세법 평가규	「지방세법」에 따라 고시한 시가표준액. 다만,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

(6) 기타의 자산 및 부채

상기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실무상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회사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라. 자산·부채 항목별 평가내역

(1) 평가차액 내역

주요 항목별 상증법상의 평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상증법상 평가액 (A)	장부가액 (B)	평가차액 (A - B)
유가증권	62,000,000	62,000,000	0
매출채권	1,700,000,000	1,700,000,000	0
재고자산	3,412,000,000	3,412,000,000	0
주임종단기채권	10,000,000	10,000,000	0
토지	17,000,000,000	14,450,000,000	2,550,000,000
건물	1,500,000,000	1,100,000,000	400,000,000
회원권(투자자산)	640,000,000	640,000,000	0
비업무용자산	N/A	N/A	N/A
합계	24,324,000,000	21,374,000,000	2,950,000,000

(2) 유가증권

가. 단기매매증권

평가대상회사는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단기매매증권가액이 '0'이므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나. 매도가능증권

평가대상회사는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상 매도가능증권가액이 62,000,000원 계상되어 있고 모두 비상장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증법상 평가액과 장부가액(미수이자 포함)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3) 원화대부금

원화대여금은 상증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회사의 대출금은 전액 주임종단기채권입니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현재 주임종단기채권의 장부가액에 평가기준일 현재 동 채권에 대한 미수수의 '0'원을 가산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단위 : 원)

구분	상증법상 평가액 (A)	장부가액 (B)	평가차액 (A - B)
주임종단기채권	10,000,000	10,000,000	-
합계	10,000,000	10,000,000	-

(4) 콘도회원권 등(투자자산)

상증법 제6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상증법상 평가액 (A)	장부가액 (B)	평가차액 (A - B)
XX리조트	500,000,000	500,000,000	-
XX호텔앤리조트	120,000,000	120,000,000	-
XX콘도	20,000,000	20,000,000	-
합계	640,000,000	640,000,000	-

(주) 종전에는 기준시가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여, 국세청 기준시가(골프회원권에 한함-2009.2.1.까지만 고시)에 의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시 동일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해 국세청장과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기준시가 등을 고시할 실익이 없음을 고려해 2009.2.4. 이후 양도·상속·증여한 경우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5) 토지 및 건물

평가대상회사는 평가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에 위치한 회사사옥을 사무실 및 공장으로 자가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번지의 토지 및 건물의 평가는 상증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1년간의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준시가와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산정하고, 다시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 금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증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위에서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가대상 부동산중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은 없습니다.

상증법 제61조 등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평가내역

토지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기준시가,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평가하였습니다.

토지의 임대료환산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총임대료환산가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각각 안분한 금액으로 합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에 공하고 있는 토지는 없으므로 임대료환산가액은 없습니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2021년 1월 1일 기준공시)로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1항에 의하면 2004년 1월 1일 이후 상속 또는 증여분부터는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한 금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로 평가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장부가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단위 : 원)

구분	개별공시지가	채권담보액	장부가액	평가액
본사사옥부지	17,000,000,000	-	14,450,000,000	17,000,000,000
합계	17,000,000,000	-	14,450,000,000	17,000,000,000

2) 건물 평가내역

건물은 임대중인 부분의 임대료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건물의 임대료환산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총임대료환산가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각각 안분한 금액으로 합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에 공하고 있는 건물이 없으므로 임대료환산가액은 없습니다)

건물의 기준시가는 본사사옥 및 공장은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자로 국세청장이 고시(국세청 고시 제 2020-4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1항에 의하면 2004년 1월 1일 이후 상속 또는 증여분 부터는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한 금액이 장부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로 평가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장부가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단위 : 원)

구분	기준시가	채권담보액	세무상장부가액	평가액
본사사옥 및 공장	1,500,000,000	-	1,100,000,000	1,500,000,000
비업무용건물	-	-	-	-

(주) 세무상장부가액은 재무상태표상 건물가액에 건물에 대한 세무상유보금액(감가상각비부인 누계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임대료환산가액의 산정 및 배분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료에 공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은 없으므로 임대료환산가액은 없습니다(임대료 환산가액의 계산은 “제6장 재산의 평가에서 3. 보충적 평가,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결산 재무제표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상의 유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결산에 의한 세무조정이 수행된 이후의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세무조정계산서상 유보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세무조정계산서상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 중 상증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법인의 장부가액과 별도로 평가(개별평가)된 자산, 부채계정과 관련된 유보 금액은 총자산가액에서 가감되지 아니하며,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계정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총자산가액에서 가감하였습니다.

(단위 : 원)

과목 또는 사항	유보금액	제외	순자산에 가산	비고
미수수익	△105,000,000	△105,000,000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696,000,000	△696,000,000	-	(주1)
감가상각비	9,100,000	9,100,000	-	(주2)
퇴직급여충당부채	4,150,000,000	4,150,000,000	-	(주3)
미지급연차수당	161,000,000	-	161,000,000	
미지급비용	△166,000,000	-	△166,000,000	
대손충당금	30,000,000	30,000,000	-	(주4)
판매장려금	400,000,000	-	400,000,000	
계	3,783,100,000	3,388,100,000	395,000,000	

(주1)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제외대상입니다. 따라서 신고조정에 의하여 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에도 제외합니다.

(주2) 개별평가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부인누계액은 제외하고,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동산과 기타유형자산에 대한 유보금액은 순자산에 가산합니다.

(주3)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은 회사의 퇴직급여추계액과 일치하며, 순자산가액 계산을 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은 부채에서 전액 차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유보금액은 제외합니다.

(주4) 대손충당금은 부채에서 전액 부인되므로 관련 유보금액은 제외합니다.

마. 영업권 평가내역

상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서는 영업권의 평가는 초과이익개념을 적용하되 영업권 지속연수는 원칙적으로 5년으로 보아 5년간의 초과이익을 자본환원율(10%)로 환원하여 영업권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begin{aligned} \text{영업권} &= [(\text{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times 50\%) \\ &\quad - (\text{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times \text{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 &\quad \times 3.79079(\text{기간 5년, 이자율 10\%의 정상연금 현재계수}) \end{aligned}$$

평가대상회사의 평가기준일 현재 영업권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금액
①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 순손익액	1,342,300,000
②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 순손익액	857,800,000
③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 순손익액	687,500,000
④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①×3+②×2+③)/6}	1,071,666,666
⑤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50% (④×50/100)	535,833,333
⑥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20,775,000,000
⑦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10%
⑧ ⑥×⑦	2,077,500,000
⑨ 영업권 지속연수	5년
⑩ 영업권계산액 {(⑤-⑧)×3.79079}	△5,844,134,584
⑪ 영업권상당액에 포함된 매입한 무체재산권가액중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	0
⑫ 영업권평가액 (⑩-⑪)	0(△5,844,134,584)

(주) 영업권평가액이 '0'이하이므로 '0'으로 평가합니다.

3.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유의사항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균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낮추어 주식평가액을 낮게 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주식평가(정교하게 주식평가를 하는 것은 매우 전문적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주식평가산식에 따라 재무제표상 숫자를 넣어 약식으로라도 지속적으로 평가하기를 권고합니다)를 해서 증여시점 등을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를 고려할 때 비상장주식가액이 저평가될 수 있도록 주가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순손익가치의 하락 등은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역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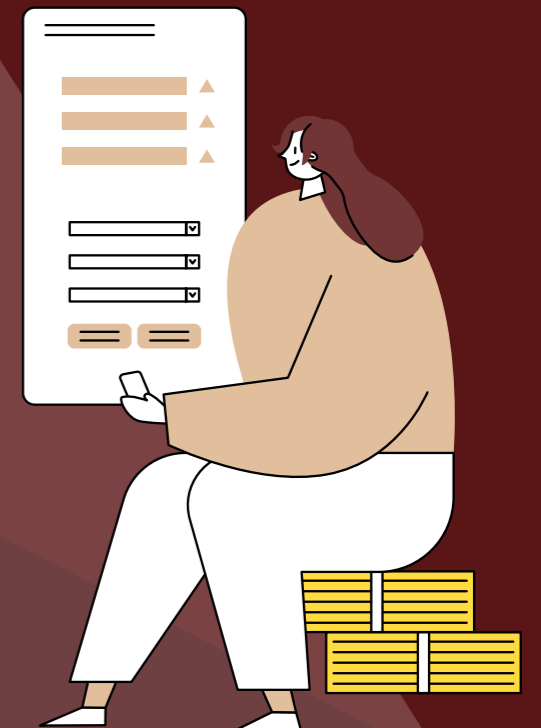
※ 순자산가치를 낮추는 방법

- 적절한 시기에 주주에게 배당을 하라.
- 부실채권은 대손상각과 관련한 증빙을 갖추거나 싼 가격에 정리하라.
- 쓸모없는 재고는 관련 증빙을 갖추어 싼 가격에 정리하라.
- 부동산이 시세보다 과대평가되었다면 시세를 반영하도록 감정평가를 받아라.
- 건물 등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활용하라.

※ 순손익가치를 낮추는 방법

- 이익(손실)이 많은 사업부문을 합병(분할)하는 것을 검토하라.
- 매출의 귀속시기를 연기하라.
- 건물 등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활용하라.
- 퇴직연금에 가입하라.
- 특별상여금 등은 빨리 확정지어서 지급하라.
- 미래의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라.

Appendix



Appendix : 기업승계와 관련된 세법 및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기업상속"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기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200억원
 -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500억원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 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 ③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기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기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기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기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기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업상속재산 및 기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기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 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기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 제1호의 기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가. 해당 기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나. 해당 상속인이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 ⑦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용 자산, 기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업용 자산의 범위, 기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과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법 처벌법」 제3조 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 같은 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금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⑩ 제6항 또는 제9항 제2호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9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제6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말일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 또는 제9항 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제6항 또는 제9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 나.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2016. 2. 5.>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의 해당 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제순서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⑥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⑥ 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은 가업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가업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로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증명되는 채무의 금액

2. 해당 가업상속인이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 재산가액

⑦ 법 제18조 제3항에서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란 가업상속인이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가업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⑧ 법 제18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 제6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9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교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라.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바. 제11항 제2호에 따른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변경된 업종을 가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 가업용 자산의 처분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나.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⑨ 법 제18조 제6항 제1호 가목에서 “기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한다)

⑩ 기업용자산의 처분비율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처분비율”이라 한다)로 계산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기업용자산의 가액
2. 기업용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⑪ 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제3항 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기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3. 해당 기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⑫ 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다목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3.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⑬ 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라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⑭ 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라목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란 제13항에 따른 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되, 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 같은 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을 경우에는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⑮ 법 제18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제2호의 기간별추징율 표에 따라 정한 율(이하 이 조에서 “기간별추징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18조제6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처분비율(같은 목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후 재차 같은 목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 처분한 자산의 가액은 제외하고 산정한다)에 기간별추징율을 곱한 율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법 제18조 제6항 제1호 가목·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나. 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다. 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또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라목에 따른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2. 기간별추징율 표

기간	추징율
5년 미만	100분의 100
5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80

- ⑩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경우에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9항 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18조 제6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9항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18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또는 같은 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 ⑪ 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 ⑫ 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을 적용할 때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분할에 따라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의 일부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본다.
 2.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본다.
- ⑬ 법 제18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조세포탈의 경우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받은 벌금형
- 나. 회계부정의 경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받은 벌금형(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⑭ 법 제18조 제1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이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양도하는 가업상속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에서 같은 법 제97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뺀 금액에 해당 기간별추징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⑮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정 여부와 법 제18조 제6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9항의 해당 여부를 매년 관리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원래 공제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⑯ 법 제18조 제10항에 따라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조(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의 공제한도를 적용할 때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중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계속 경영기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 제8항 제2호 다목 및 영 제16조 제6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

영 제15조 제2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 기타 상속인이 당해 기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한다)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창업자금을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7.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 3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

$$\text{창업한 날의 근로자 수} - (\text{창업을 통해 신규 고용한 인원수} - 10\text{명})$$

- ⑦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 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 ⑩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 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⑪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⑫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다.
- ⑬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⑭ 제1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신규 고용의 기준,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① 법 제30조의5 제1항 전단에서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 ② 법 제30조의5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이란 법 제30조의5 제2항에 따른 창업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 1. 제5조 제19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 2.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임차료 지급액
- ③ 법 제30조의5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서 “창업”이란 각각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30조의5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④ 법 제30조의5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 1.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2.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 ⑤ 법 제30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⑥ 법 제30조의5 제5항 전단에 따른 창업자금 사용명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 2.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3.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⑦ 법 제30조의5 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1. 법 제30조의5 제6항 각 호 외의 전단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 2.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 3. 1일 10만분의 25
 - ⑧ 법 제30조의5 제6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수증자의 사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 나.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후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 다.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 2.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 나.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
 - ⑨ 법 제30조의5 제6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⑩ 법 제30조의5 제6항 제7호를 적용할 때 근로자는 제27조의3 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⑪ 법 제30조의5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기업의 승계 후 기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기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기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기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 1.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기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 ⑤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기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⑦ 제3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① 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법 제30조의6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1.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
- ③ 법 제30조의6 제3항에서 기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기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④ 법 제30조의6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경우
 -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⑤ 법 제30조의6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6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0만분의 25
- ⑥ 법 제30조의6 제3항 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3.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⑦ 법 제30조의6 제3항 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 나.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 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⑧ 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또는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이익(이하 이 항에서 “증여이익”이라 한다)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에 불구하고 법 제30조의5 제7항 및 제8항, 법 제30조의6 제4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 ⑨ 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제 <2011. 6. 3.>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 ⑩ 법 제30조의6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 ⑪ 법 제30조의6 제7항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2021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 해설집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처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세종시 가림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기획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
Tel) 02-2124-3146~7

집필 진영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유효중, 고영무

디자인 메이커뮤니케이션
Tel) 02-761-8340 www.maycom5.com

이 책자는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법령 개정 등으로 내용이 책자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 예규 등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